2024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5. 7.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최종보고서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5. 7.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 〈 연 구 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주관기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서울행정학회

연 구 책 임 자: 유승원 교수(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 여 연 구 자: 김수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하영 교수(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 조 연 구 원: 김민석 박사과정(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CONTENTS


Ⅰ. 서론 ····· 1

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와 평가 필요성 ····· 4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 4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배경과 의의 ····· 4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 및 배분 방식 ····· 5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체계 및 운용 절차 ····· 7

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예산 현황 ····· 9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필요성 ····· 12

가. 내·외부 지적 사항 ····· 12

나. 종합: 평가 필요성 ····· 16

Ⅲ.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평가 개요 ····· 19

1.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 19

2. 평가유형 및 평가질문 ····· 20

3.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 23

가. 평가모형 ····· 23

나. 평가방법 ····· 24

4. 데이터 구축 현황 ····· 35

5. 기초통계량 ····· 37

가. 지역의 인구·이동·소유권 통계 관련 ····· 37

나. 지역의 분야별 상대적 개발지수 통계 관련 ····· 42

다. 예산 집행·실집행 통계 관련 ····· 44

Ⅳ.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 46

1. 순영향평가 ····· 46

가. 외부요인 등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의 달성 여부 ····· 46

2. 결과평가 ····· 47
가. (외부요인 등의 통제 없는) 인구, 실업자, 전입자 등에 미치는 효과 ····· 47
나. 기금 사업의 정책 효과, 비의도 효과, 여타 사업 대비 정책 효과 등 ····· 49
3. 과정평가 ····· 49
가. 가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적절성 ····· 49
나.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효과성 ····· 51
4. 계획평가 ····· 52
가. 주무기관의 기금투자계획 평가의 적절성 ····· 52
나. 기금 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55
다. 기금투자계획상 추진 방식과 수혜대상의 적절성 ····· 57
라. 기금 사업 분석 ····· 62

Ⅴ. 방법론별 상세 분석 내용 ····· 72
1. 설문조사 분석 내용 ····· 72
가. 계획평가 결과 ····· 73
나. 과정평가 결과(설문문항 2-1부터 2-4까지) ····· 87
다. 결과평가 결과(설문문항 3-1부터 3-4까지) ····· 94
라. 설문조사 결과와 여타 통계와의 결합 평가 ····· 98
마. 설문조사 평가 요약 ····· 127
2.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내용 ····· 130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130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진 방식의 적절성 ····· 138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수혜 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성 ····· 144
라.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요약 ····· 151
3. 실증분석 분석 내용 ····· 154
가. 결과평가 및 순영향평가 ····· 154
나. 과정평가 ····· 176
다. 계획평가 ····· 179

라. 실증분석 결과 요약 ····· 181

Ⅵ. 정책제언 ····· 184

1.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제언 ····· 184
2. 광역자치단체 관련 정책제언 ····· 192
3. 기초자치단체 관련 정책제언 ····· 193

별첨 ····· 197

참고문헌 ····· 213

# 표 목차

〈표 Ⅱ-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지방기금법」 제22조 ····· 5
〈표 Ⅱ-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 5
〈표 Ⅱ-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 6
〈표 Ⅱ-4〉 광역지원계정 배분 방식 ····· 6
〈표 Ⅱ-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현황 ····· 9
〈표 Ⅱ-6〉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별 사업 현황 ····· 10
〈표 Ⅱ-7〉 기초지원계정 등급별 예산 배분 현황(2024년) ····· 10
〈표 Ⅱ-8〉 기초지원계정 등급별 예산 배분 계획(2025년) ····· 11
〈표 Ⅱ-9〉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배분 기준 ····· 11
〈표 Ⅱ-10〉 2024년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선정 현황 ····· 11

〈표 Ⅲ-1〉 지방소멸대응기금 논리모형 ····· 19
〈표 Ⅲ-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과정·영향평가 수행 여부 ····· 20
〈표 Ⅲ-3〉 평가유형별 평가질문과 평가방법론 ····· 22
〈표 Ⅲ-4〉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층평가 평가모형 ····· 23
〈표 Ⅲ-5〉 설문조사 개요 ····· 24
〈표 Ⅲ-6〉 초점집단면접 개요 ····· 26
〈표 Ⅲ-7〉 초점집단면접 대상 ····· 26
〈표 Ⅲ-8〉 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 ····· 27
〈표 Ⅲ-9〉 이질성분석을 위한 세부변수 ····· 28
〈표 Ⅲ-10〉 실증분석을 통한 과정평가 항목 ····· 32
〈표 Ⅲ-11〉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출분야별 대표적인 통계 ····· 33
〈표 Ⅲ-12〉 데이터 구축 현황 ····· 36
〈표 Ⅲ-13〉 지역의 인구동향 기초통계계량 ····· 38
〈표 Ⅲ-14〉 지역의 인구·이동 기초통계량 ····· 40
〈표 Ⅲ-15〉 지역의 소유권 기초통계량 ····· 41

〈표 Ⅲ-16〉 지역의 분야별 상대적 개발지수 ····· 43
〈표 Ⅲ-17〉 예산 집행률 기초통계량 ····· 44

〈표 Ⅳ-1〉 세부사업단위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주요 결과 요약 ····· 48
〈표 Ⅳ-2〉 기금 사업의 분야별 비중·기금액·집행률 ····· 65
〈표 Ⅳ-3〉 기금사업 분야별 예시 ····· 68

〈표 Ⅴ-1〉 설문조사 결과-투자계획 평가(투자계획 평가 미흡 자치단체에의 기금 배분) ····· 73
〈표 Ⅴ-2〉 설문조사 결과-투자계획 평가(자치단체 간 투자계획 평가 차이와 배분액 격차) ····· 75
〈표 Ⅴ-3〉 설문조사 결과-투자계획 평가(자치단체별 특징 고려하지 않은 기금 배분) ····· 76
〈표 Ⅴ-4〉 설문조사 결과-주무기관 운영(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 ····· 77
〈표 Ⅴ-5〉 설문조사 결과-주무기관 운영(공제회의 자치단체에의 유용한 정보·서비스 지원 여부) ··· 78
〈표 Ⅴ-6〉 설문조사 결과-계획의 충실성(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의 적절성) ····· 80
〈표 Ⅴ-7〉 설문조사 결과-계획의 충실성(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가 부적절한 경우 그 원인) ····· 81
〈표 Ⅴ-8〉 설문조사 결과-수요 예측(실시 여부, 실시 주체, 실시 정도) ····· 82
〈표 Ⅴ-9〉 설문조사 결과-우선순위 선정기준 ····· 84
〈표 Ⅴ-10〉 설문조사 결과-배분적 효율성 ····· 85
〈표 Ⅴ-11〉 설문조사 결과-유사중복성 ····· 86
〈표 Ⅴ-12〉 설문조사 결과-자원 집행의 충분성 ····· 87
〈표 Ⅴ-13〉 설문조사 결과-자원 집행의 충분성(불충분한 경우 그 원인) ····· 89
〈표 Ⅴ-14〉 설문조사 결과-전달체계 경로의 의견 환류 ····· 90
〈표 Ⅴ-15〉 설문조사 결과-정책목표(효과) 경로 분석 ····· 92
〈표 Ⅴ-16〉 설문조사 결과-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슈 원천 ····· 93
〈표 Ⅴ-17〉 설문조사 결과-지방소멸대응 정책목표의 효과 ····· 95
〈표 Ⅴ-18〉 설문조사 결과-의도하지 않은 효과 ····· 96
〈표 Ⅴ-19〉 설문조사 결과-기술적 효율성 ····· 97
〈표 Ⅴ-20〉 여타 통계 개요-사업 분야 ····· 98

〈표 Ⅴ-21〉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추진체계 ····· 99
〈표 Ⅴ-22〉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외부네트워크체계 ····· 100
〈표 Ⅴ-23〉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주민참여체계 ····· 100
〈표 Ⅴ-24〉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실적 ····· 101
〈표 Ⅴ-25〉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우선순위 ····· 102
〈표 Ⅴ-26〉 여타 통계 개요-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움의 정도 ····· 102
〈표 Ⅴ-27〉 여타 통계 개요-주요 수혜대상 주민 연령별 구분 ····· 103
〈표 Ⅴ-28〉 여타 통계 개요-주요 수혜대상 주민 등록·비등록 구분 ····· 104
〈표 Ⅴ-29〉 여타 통계 개요-사업이력 ····· 104
〈표 Ⅴ-30〉 여타 통계 개요-기금 이외의 여타 재원 ····· 105
〈표 Ⅴ-31〉 여타 통계 개요-연계 사업 ····· 106
〈표 Ⅴ-32〉 설문조사 결과(설문 1-1. 투자계획 평가 미흡 자치단체에의 기금 배분)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07
〈표 Ⅴ-33〉 설문조사 결과(설문 1-2. 자치단체 간 투자계획 평가 차이와 배분액 격차)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08
〈표 Ⅴ-34〉 설문조사 결과(설문 1-3. 자치단체별 특징 고려하지 않은 기금 배분)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0
〈표 Ⅴ-35〉 설문조사 결과(설문 1-4. 주무기관 운영: 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1
〈표 Ⅴ-36〉 설문조사 결과(설문 1-5. 주무기관 운영: 공제회의 자치단체에의 유용한 정보·서비스 지원)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2
〈표 Ⅴ-37〉 설문조사 결과(설문 1-6. 계획의 충실성-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의 적절성)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3

〈표 Ⅴ-38〉 설문조사 결과(설문 1-7. 수요예측 실시 여부/주체/정도)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5
〈표 Ⅴ-39〉 설문조사 결과(설문 1-8. 우선순위 선정기준)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6
〈표 Ⅴ-40〉 설문조사 결과(설문 3-3. 배분적 효율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7
〈표 Ⅴ-41〉 설문조사 결과(설문 1-9. 유사중복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8
〈표 Ⅴ-42〉 설문조사 결과(설문 2-1. 집행 자원의 충분성)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19
〈표 Ⅴ-43〉 설문조사 결과(설문 2-2.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환류)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21
〈표 Ⅴ-44〉 설문조사 결과(설문 2-3. 정책목표 경로분석)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22
〈표 Ⅴ-45〉 설문조사 결과(설문 2-4. 집행과정 문제 이슈 원천)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23
〈표 Ⅴ-46〉 설문조사 결과(설문 3-1. 지방소멸대응 정책목표의 효과)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25
〈표 Ⅴ-47〉 설문조사 결과(설문 3-4. 기술적 효율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127
〈표 Ⅴ-48〉 FGI 결과: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131
〈표 Ⅴ-49〉 FGI 결과: 광역계정의 예산의 활용(추가 의견) ····· 132
〈표 Ⅴ-50〉 FGI 결과: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134
〈표 Ⅴ-51〉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편 방향의 적절성 ····· 136
〈표 Ⅴ-52〉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개편 방향 ····· 137
〈표 Ⅴ-53〉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의 타당성 ····· 139
〈표 Ⅴ-54〉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의 적절성 ····· 140

〈표 Ⅴ-55〉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타 재원 연계 방식의 적절성 ····· 142
〈표 Ⅴ-56〉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방식의 적절성 ····· 143
〈표 Ⅴ-57〉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의 적절성 ····· 146
〈표 Ⅴ-58〉 FGI 결과: 평가 투입요소의 적절한 제공 ····· 148
〈표 Ⅴ-59〉 FGI 결과: 평가단 평가 이후 절차의 적절성 ····· 149
〈표 Ⅴ-60〉 FGI 결과: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적절성 ····· 150
〈표 Ⅴ-61〉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 ····· 154
〈표 Ⅴ-62〉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2 ····· 155
〈표 Ⅴ-63〉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3 ····· 155
〈표 Ⅴ-64〉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4: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1 ····· 156
〈표 Ⅴ-65〉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5: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2 ····· 157
〈표 Ⅴ-66〉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5: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3 ····· 158
〈표 Ⅴ-67〉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7: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4 ····· 159
〈표 Ⅴ-68〉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8: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5 ····· 160
〈표 Ⅴ-69〉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9: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6 ····· 161
〈표 Ⅴ-70〉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0: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7 ····· 162
〈표 Ⅴ-71〉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1: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8 ····· 163
〈표 Ⅴ-72〉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2: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9 ····· 164
〈표 Ⅴ-73〉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3: 집행률에 따른 효과 ····· 165
〈표 Ⅴ-74〉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4: 집행률에 따른 효과의 이질성분석 ····· 166
〈표 Ⅴ-75〉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1 ····· 167
〈표 Ⅴ-76〉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2 ····· 168
〈표 Ⅴ-77〉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3 ····· 168
〈표 Ⅴ-78〉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4 ····· 169
〈표 Ⅴ-79〉 기초지자체 단위 순영향평가 1 ····· 170
〈표 Ⅴ-80〉 기초지자체 단위 순영향평가 2 ····· 171
〈표 Ⅴ-81〉 기초지자체 단위 순영향평가 3 ····· 172
〈표 Ⅴ-82〉 과정평가: 사업 특성에 따른 예산집행 수준 ····· 177

〈표 Ⅴ-83〉 계획평가: 지자체 취약분야와 기금사업 분야의 정합성에 따른 예산 배분(복합분야 포함 시) ····· 180
〈표 Ⅴ-84〉 계획평가: 지자체 취약분야와 기금사업 분야의 정합성에 따른 예산 배분(복합분야 제외 시) ····· 180
〈표 Ⅴ-85〉 세부사업단위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주요 결과 요약 ····· 182

〈표 Ⅵ-1〉 2등급 체계에서 3등급 체계로의 개편(안) 예시 ····· 185
〈표 Ⅵ-2〉 평가항목 개편(안) 예시 ····· 188
〈표 Ⅵ-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군의 평가 내용 및 정책제언 ····· 195

# 그림 목차

[그림 Ⅱ-1]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의 구성 및 역할 ····· 7
[그림 Ⅱ-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절차 ····· 8

[그림 Ⅲ-1] 지역의 인구동향 시각화 ····· 38
[그림 Ⅲ-2]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 현황 시각화 ····· 42
[그림 Ⅲ-3] 시군구 단위 평균 집행률 시각화 ····· 45

[그림 Ⅳ-1] 분야별 사업의 비중 시각화 ····· 62
[그림 Ⅳ-2] 분야별 배분금액 비중 시각화 ····· 63
[그림 Ⅳ-3] 분야별 사업의 집행률 시각화 ····· 64
[그림 Ⅳ-4] 연도별 사업의 비중 시각화 ····· 66
[그림 Ⅳ-5] 시도별 기금사업 분야 비중 시각화 ····· 67
[그림 Ⅳ-6] 기금 사업의 키워드 분석 시각화 ····· 69

[그림 Ⅴ-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 135
[그림 Ⅴ-2] 기초지자체단위 순영향평가 4: 주민등록인구수에 미치는 영향 ····· 172
[그림 Ⅴ-3] 기초지자체단위 순영향평가 5: 총전출자수에 미치는 영향 ····· 174
[그림 Ⅴ-4] 기초지자체단위 순영향평가 6: 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 ····· 175

# Ⅰ. 서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연간 1조원을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탁)가 10년간(2022~2031년)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연 1조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최근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다(행정안전부, 2024b). 기금의 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며,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24b).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별 예산 배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위탁)의 투자계획 평가 결과(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른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실시된 평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서 S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은 144억원을 배분받은 반면, 관심지역으로서 C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은 16억원을 배분받았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며, 등급별 배분금액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차이만 존재할 뿐 지자체의 크기, 인구, 특성 등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렇게 기초지자체가 배분받은 예산의 집행률은 저조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는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99개의 개별 사업을 운용하였다(인구감소지역 358개, 관심지역 41개).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집행률은 약 37.6%로 매우 낮다(2022년 9월 배정예산에 대한 2023년 말 집행실적 기준).

이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원의 배분 관련 문제점이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에 기금을 배분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 간 연계를 지원하기보다는 단순한 균등 분배의 형식으로 기금을 배분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단기적 사업에 집중하여 기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배분이 부족하다. 둘째, 기금 집행 관련 문제점이다. 전반적으로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데, 이것은 지역 현장에서 기금 사업의 수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평가 등 재정관리 관련 문제점이다. 기금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계획, 평가 기준과 배분 기준 등의 정보공개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정도로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다.[1]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현장에서는 재정관리 관련 혼선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크게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관한 연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설계상·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적절성·효과성·효율성 등의 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향후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특회계·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기존 사업들과의 유사성이 존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2] 또한 성과에 의한 환류보다는'나눠먹기식'의 단순한 재원배분으로 효과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철저한 효과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

심층 평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은 계획·투입 → 과정·활동 → 결과 → 순영향의 단계별 논리모형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 평가도 동일한 논리모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평가는 계획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순영향평가를 모두 수행한다. 계획(투입)평가, 과정(활동)평가, 결과평가, 순영향평가 각 단계에서 평가할 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4:20~22)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따랐다. 평가 범위를 살펴보면, 계획·투입평가는 적절성 평가, 효율성 평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한다. 과정·활동평가는 적절성 평가,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다. 결과평가는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를 수행한다. 순영향평가는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다. 각 단계별 평가모형을 통해 평가방법, 평가단위, 평가도구, 평가내용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실증분석 평가방법은 행안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일부 필요 사업에 대해 계획평가 일부, 과

1) 정보 제공의 목적은 본 기금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해당 정보가 이해관계자의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일 정도로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예: 평가계획에서 연계를 제안하고 있으나, 해당 연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단순 매칭 사업도 연계사업이 될 여지가 존재함).

2)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은 후술하는 전문가 FGI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정평가 일부, 결과평가 대부분, 순영향평가 전체를 수행한다.

이후 적절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이상에서 설명한 평가결과가 도출되면 다음의 정책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탁)의 재정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서 평가방식의 개선 등을 제언할 수 있다. 둘째, 광역지자체 관점에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내 기초지자체 각각에의 단순한 균등 분배를 넘어 관내 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을 제언할 수 있다. 셋째, 기초지자체 관점에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 재원으로 설정한 뒤, 타 국고보조사업 및 민간 재원을 보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운용 방안을 제언할 수 있다.

# 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와 평가 필요성

##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배경과 의의

이 보고서의 평가 대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설치되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과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박상수 외, 2023).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수단이 필요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박상수 외, 2023). 2017년에서 2019년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읍·면·동의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 마을을 집중 지원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박상수 외(2023)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였으며,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됨에 따라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해 이양사업의 재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재정지원 수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며, 동법 제22조에서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재원을 집중 지

원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자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한다(행정안전부, 2024b).

〈표 Ⅱ-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지방기금법」 제22조

| 법조항 | 내용 |
|---|---|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
| |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 및 배분 방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수행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매년 1조원의 정부출연금을 10년('22~'31년)간 지원한다(「지방기금법」 제22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22개 기초자치단체이다.

〈표 Ⅱ-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 부처 | 규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행안부<br>(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탁) | 연 1조원<br>(광역 25%, 기초 75%)<br>10년('22~'31년) | 총 122개 지자체<br>(광역 15개, 기초 107개)<br>- 인구감소지역(89개)<br>- 관심지역(18개) | (문화·관광) 산책로·캠핑장, 예술·공연<br>(산업) 클러스터 조성, 창업취업 지원<br>(주거) 노후주택 및 빈집 리모델링<br>(교육) 교육 시설 건립, 정착 교육<br>(보육) 육아나눔터, 놀이터 카페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이 각각 광역지원계정에 25%(2,500억원), 기초지원계정에 75%(7,500억원) 비율로 배분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25조).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중 1,500억원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되며, 1,0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출자금으로 활용된다.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중 95% (7,125억원)은 인구감소지역 89개에, 5%(375억원)는 관심지역 18개에 차등 배분된다.

〈표 II-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 | | | |
|---|---|---|---|
|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 **기초계정** (75%, 7,500억) |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br>⇨ **성과 지향적 운용** |
| | | 관심지역 18개 (5%, 375억) | |
| | **광역계정** (25%, 2,500억) |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1,500억)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br>⇨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
|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 | ▸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2024a.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금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배분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배분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그 외 광역자치단체에 재정과 인구 여건을 고려해 만든 시·도별 배분계수를 적용해 배분한다.

〈표 II-4〉 광역지원계정 배분 방식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배분금액 =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x 0.9 x** $\frac{Ai \times a1i \times a2i}{\sum(Ai \times a1i \times a2i)}$

$A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a2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그 외 시·도 배분금액 =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x 0.1 x 해당 시·도 배분계수***
*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

기초지원계정은 배분 총액의 95%를 인구감소지역에, 5%를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의 배분금액은 시·군·구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성과분석 결과,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 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기초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이때 산술평균금액은 총 배분금액(95%/5%)을 시·군·구 수(인구감소지역 수/관심지역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체계 및 운용 절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에서 관리·운영한다. 동 조합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다(행정안전부, 2024b). 조합은 조합규약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주요 사업계획 수립·변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행정안전부, 2024b). 조합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지방기금법」 제2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에 각각 설치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된다(「지방기금법」 제26조).

[그림 Ⅱ-1]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의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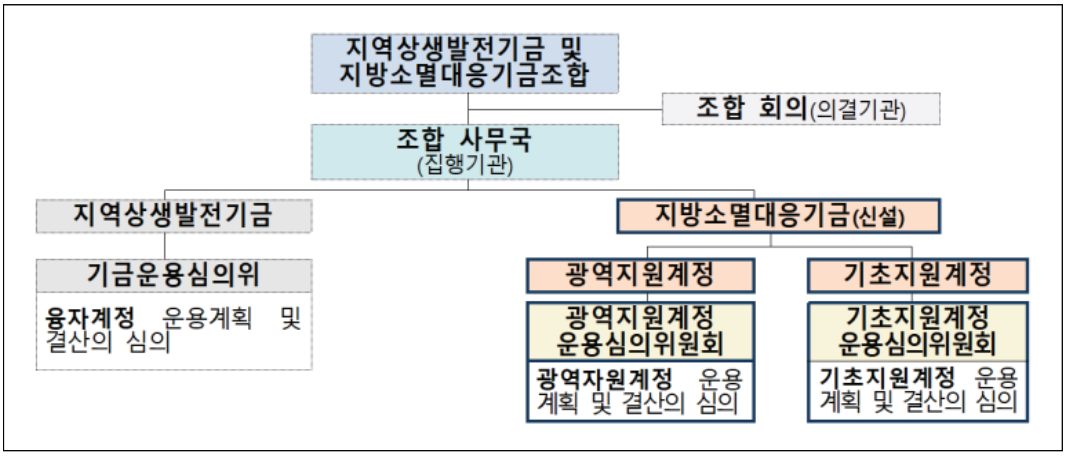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4b.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운용 절차는 매년 6~7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을 작성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별 투자계획(안)은 6월 말까지, 광역자치단체별 투자계획(안)은 7월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광역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는 ①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 분석 및 전망 ②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 방향 및 전략 ③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④ 사업별 규모 및 재원 배분 계획 ⑤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⑥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은 7~10월 서면·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안)을 평가한다. 기금 평가단은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 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정책과의 연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평가단은 10월 중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평가단의 의견을 토대로 10~11월 투자계획의 기금 용도와의 적합성, 사업의 연계성, 성과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제시 및 개선 권고 등 협의·자문을 할 수 있다(「지방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단의 평가 의견과 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투자계획(안)을 수정·제출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은 12월 중 조합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배분액을 확정한다. 12월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정된 배분액이 안내되며, 기금 예산은 익년도 2월에 배분된다.

[그림 II-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2024b.

### 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예산 현황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22개(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연평균(2022~2024년) 8,80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연평균 110개 사업에 1,953억원을 배분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378개 사업에 6,512억원을, 관심지역은 연평균 41개 사업에 337억원을 배분받았다.

〈표 II-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현황

| 구분 | | 총합 (122개) | 기초 | | | 광역 (15개) |
|---|---|---|---|---|---|---|
| | | | 소계 (107개) | 인구감소지역 (89개) | 관심지역 (18개) | |
| 2022 | 사업 수(개) | 508 | 399 | 358 | 41 | 109 |
| | 금액 | 7,477억원 | 5,606억원 | 5,328억원 | 278억원 | 1,871억원 |
| 2023 | 사업 수(개) | 557 | 434 | 393 | 41 | 123 |
| | 금액 | 9,967억원 | 7,472억원 | 7,104억원 | 368억원 | 2,495억원 |
| 2024 | 사업 수(개) | 512 | 413 | 372 | 41 | 99 |
| | 금액 | 8,962억원 | 7,468억원 | 7,104억원 | 364억원 | 1,494억원 |
| 평균 | 사업 수(개) | 526 | 415 | 378 | 41 | 110 |
| | 금액 | 8,802억원 | 6,849억원 | 6,512억원 | 337억원 | 1,953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분야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분야의 연평균 사업 수는 128개로 가장 많고, 산업일자리 분야 125개, 주거 분야 101개로 전체 사업의 67%를 차지한다. 예산 규모 또한 문화관광 분야, 주거, 산업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연평균 2,073억원, 주거 분야에는 2,049억원, 산업일자리 분야에는 1,901억원이 지원돼 총 예산의 68%가 배분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개별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되었다면, 2024년부터 복합 분야의 사업과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표 II-6〉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별 사업 현황

| 구분 | | 계 | 문화 관광 | 산업 일자리 | 주거 | 교육 | 노인 의료 | 보육 | 교통 | 복합 | 기타 |
|---|---|---|---|---|---|---|---|---|---|---|---|
| 사업 수 (개) | ’22 | 508 | 130 | 121 | 110 | 53 | 36 | 26 | 9 | - | 23 |
| | ’23 | 557 | 139 | 141 | 121 | 53 | 37 | 25 | 13 | - | 28 |
| | ’24 | 512 | 114 | 112 | 71 | 34 | 11 | 23 | 7 | 104 | 36 |
| | 평균 | 526 | 128 | 125 | 101 | 47 | 28 | 25 | 9 | 35 | 29 |
| 금액 (억원) | ’22 | 7,477 | 1,869 | 1,524 | 1,938 | 716 | 552 | 423 | 134 | - | 317 |
| | ’23 | 9,967 | 2,652 | 2,184 | 2,564 | 932 | 617 | 455 | 268 | - | 289 |
| | ’24 | 8,962 | 1,697 | 1,997 | 1,645 | 495 | 122 | 338 | 132 | 2,179 | 357 |
| | 평균 | 8,802 | 2,073 | 1,901 | 2,049 | 714 | 430 | 405 | 178 | 726 | 324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정액의 예산이 배분된다. 등급별 자치단체 비율은 S등급(5%)-A등급(15%)-B등급(30%)-C등급(50%)으로 구분되며, 인구감소지역은 등급에 따라 최대 144억원, 최소 64억원, 관심지역은 최대 36억원, 최소 16억원의 예산이 배분된다.

〈표 II-7〉 기초지원계정 등급별 예산 배분 현황(2024년)

| 등급 | 인구감소지역(89개) | | 관심지역(18개) | |
|---|---|---|---|---|
| | 자치단체 수(비율) | 배분금액(억원) | 자치단체 수(비율) | 배분금액(억원) |
| S | 4(5%) | 144 | 1(5%) | 36 |
| A | 14(15%) | 112 | 3(15%) | 28 |
| B | 26(30%) | 80 | 5(30%) | 20 |
| C | 45(50%) | 64 | 9(50%) | 16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4등급 배분체계를 2단계 배분체계로 구분하고, 최고 등급의 배분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24a).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160억원, 최소 72억원, 관심지역에는 최대 40억원, 최소 18억원의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표 Ⅱ-8〉 기초지원계정 등급별 예산 배분 계획(2025년)

| 등급 | 인구감소지역(89개) | | 관심지역(18개) | |
|---|---|---|---|---|
| | 자치단체 수(비율) | 배분금액(억원) | 자치단체 수(비율) | 배분금액(억원) |
| 우수 | 8(10%) | 160 | 2(10%) | 40 |
| 양호 | 81(90%) | 72 | 16(90%) | 18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2025년 광역지원계정의 예산은 서울,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에 배분될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인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표 Ⅱ-9〉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배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전남 | 경북 | 강원 | 전북 | 경남 | 충남 | 충북 | 부산 | 대구 | 광주 | 제주 | 인천 | 대전 | 울산 | 경기 |
|---|---|---|---|---|---|---|---|---|---|---|---|---|---|---|---|
| 배분 금액 | 306 | 270 | 209 | 193 | 180 | 145 | 96 | 21 | 32 | 11 | 11 | 9 | 7 | 7 | 3 |
| 출자액 | 202 | 179 | 137 | 129 | 119 | 96 | 64 | 13 | 21 | 7 | 7 | 6 | 5 | 5 | 1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부터 광역지원계정의 일부(1,000억원)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하고 5개 프로젝트(충북 단양 등)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동일한 금액만큼 출자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Ⅱ-10〉 2024년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1] 프로젝트 선정 현황

| 순번 | 기초자치단체 | 프로젝트 명 | 총사업비 |
|---|---|---|---|
| 1 | 충청북도 단양시 |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 680억원 |
| 2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 876억원 |
| 3 | 전라남도 여수시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1조 4,362억원 |
| 4 | 경상북도 경주시 |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 7,716억원 |
| 5 | 충청남도 서산시 | 충남 서산 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 1,300억원 |

주: 1)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시·도 기금에서 1,000억원 펀드 출자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필요성

### 가. 내·외부 지적 사항

이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외부 기관, 학술연구 등의 지적 사항을 검토하였다. 매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광역과 기초 간 심각한 예산집행률의 차이, 단기적·단발적 사업 추진 등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2022년 예산의 광역지원계정 집행률은 87.1%이지만, 기초지원계정 집행률은 5.7%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 시행돼 예산의 배분이 9월에 진행됐음을 가정하더라도 광역지원계정 대비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단기적·단발적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거시적인 국정 어젠다임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중장기적 사업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의 유인이 강하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에 효과가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보다는 1년 단위의 단기적·단발적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기금 사업의 획일성, 국고보조사업과의 유사성, 광역지원계정의 목적성 상실 등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기금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2022년과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개 분야 중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분야가 전체의 71.6%를 차지한다. 수도권에 비해 투자 수준이 낮고 인구유출을 야기하는 요소는 교통, 교육, 의료, 보육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주거 분야에 사업이 편중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차별성이 낮은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지

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의 상향식 사업을 추구하고, 기존 분산적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러나 실제 진행된 사업들은 기존 정부의 국고보조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이 다수 추진돼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광역지원계정의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광역지원계정 배분액 중 95% 이상은 관할 시·군·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광역지원계정은 관할 인구감소지역 집중투자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초지원계정 재원이 각 시·군·구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간과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사업이나 대규모의 권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된 광역지원계정의 기금사업을 살펴보면, 관할 시·군·구에 균등 배분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거나 실외 놀이시설, 축제 전시관 신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단순 시설공사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외부 기관: 나라살림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민간 재정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2023)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의 투명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평가단'에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투자계획, 평가결과, 배분액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는 공개된 바가 없으며, '투자계획평가단' 구성원의 전문 분야나 명단 등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예방효과가 있었는지 재정 투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성과평가 기준은 실질적 사업성과가 낮더라도 외형상 예산 집행이 높은 경우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충북 보은군, 경북 상주시의 사례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사업 수행기관에 이전하여 실제 사업의 집행 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경우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24년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출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은 회

계 구분이 별도로 되지 않고 있으며,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키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결산서상 이월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재원이 자주재원인지 보조재원인지 불분명해 재원의 성격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3. 7. 28., 훈령 제298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은 '300 지방교부세 등'의 장을 이루는 2개 관 가운데 하나로, '310 지방교부세' 관과 '320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분리되어 편성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은 교부세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배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조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현장의 혼선이 빚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 3) 기타 학술연구 보고서

학술연구 등에서 지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은 제도 설계 측면, 제도 운용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제도 설계상 문제점으로는 기금 운용의 한시성, 단기 성과분석에의 치중, 지방자치단체의 유인 부족, 유사 재원과의 중복성 등이 지적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상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서 작성 등의 역량 부족, 기금투자계획의 수립 및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기간의 한시성에 대한 지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 운용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기금이 없어질 경우 지방소멸대응의 지속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이재호, 2023). 둘째, 단기적인 성과분석에 치중하여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으로는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하다(류영아, 2022). 이로 인해 우수 사례로 선정된 투자 계획서의 대부분이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또는 문화·관광 사업에 집중돼 지방소멸의 대응책으로는 효과가 낮다(마상열, 2022). 또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배분금액의 차등을 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류영아, 2022).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으로 인해 지방의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광역지원계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선택은 기초자치단체

의 인구감소를 촉진해 더 많은 지원액을 배분받는 것이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유인이 부족하다(박관규·주윤창, 2022).

한편 기초자치단체도 인구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관심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배분액이 감소하므로 인구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적극 행정을 펼칠 유인이 없다(박관규·주윤창,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로 인구증가 또는 산업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류영아, 2022). 따라서 광역지원계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비율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재호, 2023).

넷째,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유사 재원과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회계 등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회계 간 중복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재호, 2023). 회계의 중복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기금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다(이재호, 2023). 학술연구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균형발전의 유사한 목적을 갖는 재원 투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 간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흡수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지원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균형발전 성격의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및 부동산교부세 재원까지 포괄하는 (가칭) 지역균형발전교부금으로 확대·개편하여 지역발전 또는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한재명, 2023).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역량 수준으로 기금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자체 역량과 재정 여건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예산이 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오병기, 202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이 낮아 투자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기금 배분 이후 사업비가 변경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한재명, 2023). 한편 기금 투자계획의 수립 및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항목이 기존에 시행하던 공모사업의 평가항목과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인구 유인책이나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는 지표 설정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마상열, 2022).

## 나. 종합: 평가 필요성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연구소, 기타 학술연구 보고서 등에서 지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예산 배분, 예산 효과성(성과), 기타 재정관리 측면에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효율성 측면의 평가가 요구된다. 내·외부 지적 사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공통적인 문제는 기금 사업과 예산 배분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간 연계를 지원하기보다는 단순히 관할 시·군·구에 재원을 균등 분배하는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분야의 획일적인 기금 사업에 예산을 배분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갖는 한시성, 평가 항목, 배분 기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의 예산 배분이 어렵고 단기적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예산 배분(포트폴리오)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 사업으로 적절한지, 배분적 효율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기된 평가의 필요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의 배분에 관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국가 재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같이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회계와 중복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기존 사업들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유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하고 있는가, 즉 효과성에 대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항목과 배분 기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유입 촉진 및 지방소멸대응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광역지원계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이 같은 체계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정작 인구감소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거나 독려할 유인이 거의 없다(박관규·주윤창, 2022). 반면 기초지자체 역시 인구소멸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예산 배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이나 적극 행정에 나설 동기가

부족하다(박관규·주윤창, 2022). 따라서 인구소멸지역 및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이 여타 지역에 비해 인구 소멸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된 변수인 인구, 인구유·출입, 지역 간 경제산업 격차, 의료 격차, 안전 격차에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와 재정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심층평가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항목이 기존에 시행하던 공모사업의 평가항목과 큰 차이가 없고 인구 유인책이나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는 지표 설정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마상열, 2022). 또한 현행 성과평가 기준은 실질적 사업성과가 낮더라도 외형상 예산 집행이 높은 경우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나라살림연구소, 2023). 이 외에도 기금 배분 기준 및 사업 계획 평가단 등에 대한 정보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수준으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낮다는 점과(예: 평가계획에서 연계사업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극단적으로 매칭사업도 연계사업이 될 여지가 존재)[3] 명확하지 않은 재원의 성격으로 재정관리 관련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는 등 재정관리 측면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향후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총 1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특회계·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4] 또한 성과에 의한 환류보다 단순 '나눠먹기식'의 재원배분으로 효과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철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5] 10년 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의견,[6] 현금성 지출을 허용하려는 지자체의 시도[7]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3) 정보 제공의 목적은 본 기금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해당 정보가 이해관계자의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일 정도로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예: 평가계획에서 연계를 제안하고 있으나, 해당 연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단순 매칭 사업도 연계사업이 될 여지가 존재함).

4)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은 후술하는 전문가 FGI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5) ○○당 ○○○의원의 4개 법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발의.

6)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NARS 입법·정책』 제108호, 2022.

7) 『시사저널』 「'못쓰나 안쓰나'…전남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1045억원 금고서 '낮잠'」, 2024. 10. 2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66, 검색일자: 2024. 11. 28.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유입을 위해 기금 용도와 범위를 출생과 양육 등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라고 밝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시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필요성하에서 이 연구는 논리모형 등을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반 사항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 Ⅲ.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평가 개요

## 1.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정책·사업의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평가대상인 정책·사업 자체의 논리모형이 튼튼하면 평가논리가 튼튼하고 평가의 품질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평가대상인 정책·사업 자체의 논리모형이 부실하면 평가의 논리와 평가의 품질이 낮을 것이다(Gugerty 2023; Jordan, 2010; Olejniczak et al., 2020).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무 부처와 관련 법령은 지방소멸대응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8] 따라서 본 기금에 대한 논리모형의 기반이 되는 사항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Ⅲ-1〉 지방소멸대응기금 논리모형

| 〈투입〉 | | 〈활동〉 | | 〈산출〉 | | 〈단기 성과〉 | | 〈중장기 성과〉 |
|---|---|---|---|---|---|---|---|---|
| 지방소멸대응 기금 연 1조원 | ▶ | 인구 유입 사업<br>관광객 유입 사업<br>청년취업·창업지원<br>지역 정착 지원 등 | ▶ | 시설물·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br>신규 일자리 창출 | ▶ | 생활인구 유입<br>인구유출 감소<br>지역 성장 및 활성화 | ▶ | 추세적 인구 증가<br>추세적 지역성장 및 활성화<br>지역 매력도 제고 |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본 심층평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논리모형을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을 투입하여 인구 유입, 관광객 유입, 청년 취업·창업 지원, 지역 정착 지원 등의 활동을 행함으로써 시설물·플랫폼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산출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생활인구의 유입, 주민등록인구 유출의 감소 또는 지역 성장 및 활성화를 기대할

8) 본 보고서 Ⅱ.'1. 가(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배경과 의의)' 참조.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지역성장 및 활성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추세적 성과를 시현하며, 지역 매력도[9] 제고라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본 심층평가의 범위는 계획평가, 과정평가, 영향평가(결과평가, 순영향평가)를 포괄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 시점(2022년 하반기)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영향평가에서 기금의 중장기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외된다. 각 평가별 세부 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4:20-22)이 제안한 제반 평가사항 중 본 평가에 적합한 주요 사항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Ⅲ-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Ⅲ-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과정·영향평가 수행 여부

| 심층평가 대상 | 계획평가 | 과정평가 | 영향평가 | |
|---|---|---|---|---|
| | | | 결과평가 | 순영향평가 |
|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 2. 평가유형 및 평가질문

이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구하는 성과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유형과 질문을 활용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예산 투입 외 외부요인 또는 누락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순효과의 추정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외부요인 또는 누락변수란, 투입 변수(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배정금액 등)와 성과 변수(인구 증감, 실업·고용, 지역내총생산 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의미하며, 이를 모두 통제해야만 재정 투입의 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순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동질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활용해 외부요인의 영향을 제거하는 준실험설계 방식을 적용한다. 준실험설계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처치군과 수혜를 받지 않지만 처치군과 유사한 대조군을 설정해 비교를 하는 방식이지만,

9) 지역 매력도(regional attractiveness)는 그 지역이 거주민과 이주민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거나 유익한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의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거주민과 이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직업을 얻고, 교육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문화적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평가하는 전반적인 지표로 설명될 수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지역의 매력도 제고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매력도는 단기에 달성하기 쉽지 않다(Clark et al. 2003; Florida 200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분받기 때문에 대조군 설정이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가등급의 차이로 인한 예산 배분액의 차이가 지역별 성과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불연속모형을 활용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순영향평가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차분법 모형, 동적 이중차분법 모형 등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 내 등급 간 배분금액 차이에 따른 성과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결과평가에서 기금의 단기적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결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집행액 또는 실집행액이 단기 성과인 주민등록인구 규모, 실업, 지역 성장 및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계량 분석한다. 이때 순영향평가와 달리, 결과평가는 외부요인 등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금 사업의 정책 효과, 비의도 효과, 여타 사업 대비 정책 효과 등을 평가한다. 설문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정평가를 통해 사업의 운영이 원래의 집행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에 따라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벗어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과정평가는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적절성의 경우, 기금 사업 특성이 집행 수준에 미치는 효과와 집행 수준의 적절성, 운용 자원의 충분성, 전달체계상 환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효과성의 경우, 정책목표(효과) 경로 분석의 효과성, 집행 시 이슈 분석의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과정평가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심층평가 시점인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시행된 지 3년 미만인 상태로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사업설계 측면에서의 적절성 평가, 즉 계획 단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계획평가는 주무기관의 기금투자계획 평가의 적절성, 기금 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기금투자계획상 추진 방식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주무기관의 기금투자계획 평가의 적절성의 경우, 평가 항목, 평가 투입 요소, 평가 이후 절차와 주무기관의 투자계획 평가 체계 및 운영을 평가한다. 기금 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의 경우, 광역계정 배분 방식과 기초계정 배분 방식을 평가한다. 기금투자계획상 추진 방식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의 경우, 기금 목적, 지원 기간, 타 재원 연계방식, 관리 방식과 지자체의 사전 제반체계 구축, 투자수요 예측, 사업 우선순

위 선정, 유사중복성 및 지자체 필요 분야에의 기금 배분(배분적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계획평가는 FGI, 설문조사, 계량분석을 활용한다. FGI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세부평가」의 평가단 위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위원은 약 26~27명으로 구성돼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대면 방식의 집단심층면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GI 서면자문 및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설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표 Ⅲ-3〉 평가유형별 평가질문과 평가방법론

| 평가 단계 | 평가질문 | 평가방법론 |
|---|---|---|
| 순영향평가 | • 외부요인 등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달성되었는가?<br>* 인구, 실업자, 전입자 등에 미치는 효과 | 계량분석 |
| 결과평가 | • (외부요인 등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는가?<br>* (외부요인 등의 통제 없는) 인구, 실업자, 전입자 등에 미치는 효과<br>* 기금 사업의 정책 효과, 비의도 효과, 여타 사업 대비 정책 효과 등 | 계량분석<br>설문조사 |
| 과정평가 | •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은 적절하였는가?<br>* 기금 사업 특성이 집행 수준에 미치는 효과<br>* 집행 수준의 적절성, 운용 자원의 충분성, 전달체계상 환류의 적절성 | 계량분석<br>설문조사 |
| | •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은 효과적이었는가?<br>* 정책목표(효과) 경로 분석의 효과성, 집행 시 이슈 분석의 효과성 | 설문조사 |
| 계획평가 | • 주무기관의 기금투자계획 평가는 적절한가?<br>* 평가 항목, 평가 투입 요소, 평가 이후 절차 등<br>* 주무기관의 투자계획 평가 체계 및 운영 | FGI<br>설문조사 |
| | • 기금 계정의 배분 방식은 적절하게 마련되었는가?<br>* 광역계정 배분 방식, 기초계정 배분 방식 | FGI |
| | • 기금투자계획상 추진 방식 및 수혜대상은 적절한가?<br>* 기금 목적, 지원 기간, 타 재원 연계 방식, 관리 방식 등<br>* 지자체의 사전 제반 체계 구축, 투자수요 예측, 사업 우선순위 선정, 유사중복성 등<br>* 지자체 필요 분야에의 기금 배분(배분적 효율성) | FGI<br>설문조사<br>계량분석 |

자료: 저자 작성.

## 3.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 가. 평가모형

평가방법은 크게 계량분석, 설문조사, FGI, 기타로 구분한다. 평가방법 중 계량분석이 가장 우선시되는 평가방법으로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엄중한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설문조사, FGI 및 기타는 보조 평가 방법으로서 계량분석을 보완할 것이다. 평가 단위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일부) 사업으로 하되, 평가내용에 부합하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결과 평가 중 사업의 계획된 효과성 평가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일부)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배분적 효율성 평가는 기초지자체 만을 대상으로 하며, 과정 평가 중 집행예산 고려의 충분성 평가는 (기초지자체의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별 구체적인 평가단위, 평가도구, 평가내용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층평가 평가모형

| 구분 | 순영향평가 | 결과평가 | 과정평가 | 계획평가 |
|---|---|---|---|---|
| 평가내용<br>(예시) | 외부요인을 제거한 순효과 평가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기·중기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효과성 평가) | 사업활동과 대상집단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수혜했는지 평가 (과정 적절성 평가) | 기금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제도 설계의 적절성 평가) 기존 사업들과 유사·중복성이 있는지(효율성 평가) |
| 평가방법 | 계량분석<br>(동적 이중차분법) | 계량분석<br>(고정효과패널모형)<br>설문조사 | 설문조사<br>계량분석 | FGI<br>설문조사<br>계량분석 |
| 평가단위 | 지방자치단체,<br>세부사업(일부) | 지방자치단체,<br>세부사업(일부) | 지방자치단체,<br>세부사업(일부) | 제도 전반<br>세부사업(일부) |
| 평가도구 | 정량 데이터 | 정량 데이터,<br>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기초자료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위원 대상 FGI 결과 등 |

자료: 저자 작성.

## 나. 평가방법

### 1) 설문조사 평가방법

설문 대상자는 기재부 및 행안부의 협조를 통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담당자)으로 한다. 설문내용은 계획평가 일부, 과정평가 일부, 결과평가 일부로 한다. 설문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응답자, 문항, 방법론 등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Ⅲ-5〉 설문조사 개요

□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제로 준비하고 운용하는 지역 현장 종사자의 제반 의견을 수렴
- ○ 주무기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이 적절한지를 지역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 의견 수렴
- ○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계획, 과정(집행), 효과에 대한 주요 사항이 적절한지를 지역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 의견 수렴

□ (설문 대상, 방법 및 응답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각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 총 973명(기초 868명, 광역 본청 10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실시함
- ○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응답자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설문(개별 응답자별 고유 링크 부여)을 원칙으로 함
- ○ 설문 응답 독려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업무 협조를 요청함
- ○ 기금 사업이 1개이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2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한 경우 2명의 사업 담당자가 존재하며, 이 경우 설문 대상자는 2명이 됨
- ○ 설문 대상자(973명) 중 유효 응답자는 430명(기초 인구감소지역 334명, 기초 관심지역 51명, 광역 본청 45명)으로 전체 유효응답률은 44.2%임

설문 대상자 및 유효 응답자

| 구분 | | 설문대상자(명) | 유효응답자(명) | 유효응답률(%) |
|---|---|---|---|---|
| 기초 | | 868 | 385 | 44.4% |
| | 인구감소지역 | 745 | 334 | 44.8% |
| | 관심지역 | 123 | 51 | 41.5% |
| 광역 본청 | | 105 | 45 | 42.9% |
| 합계 | | 973 | 430 | 44.2% |

□ (설문 일시) 설문 응답 독려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업무협조를 요청(10월 25일)한 이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함
- ○ 설문에 응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설문 독려를 위해 연구팀이 미응답 설문 대상자들에게 설문 요청 이메일을 두 차례(10월 31일, 11월 4일) 재발송함

※ 설문 완료자 중 추첨자에게는 상품권(5만원 상당)을 제공함

〈표 Ⅲ-5〉의 계속

□ (설문 문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9개 문항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 관련 9개 문항(응답에 따른 추가 문항 3개 포함 12개)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과정(집행) 관련 4개 문항(응답에 따른 추가 문항 1개 포함 5개)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결과 관련 4개 문항
  ○ 통계 처리 등을 위한 2개 문항

□ (분석 방법론) 설문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와 최소 응답 범주를 병행 사용하고, 기초통계량 분석과 설문조사로부터 도출되는 제반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변인에 따른 여타 변인에서의 차이 분석을 실시함
  ○ 지역 현장 종사자의 제반 의견을 입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리커트 5점 척도(예: 매우 양호, 대체로 양호, 보통, 대체로 부실, 매우 부실)를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문항에 필요한 최소 응답 범주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각 설문 문항별 기본적인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분석함
  ○ 차이 분석은 t분석을 활용함

□ (설문 결과와 여타 정보를 결합한 분석) 설문조사 결과와 제반 지자체 특징 정보, 기금사업의 효과성 정보 및 예산·집행 정보 등을 복합 분석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평가 등급, 지리적 특징(섬·내륙) 등 지자체 특징에 따른 각 설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함

### 2) FGI 평가방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설계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초점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입 초기의 제도로 양적 연구를 통한 효과성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질적 연구가 효과적이다. 초점집단면접법은 제도 도입·실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분위기 또는 환경 분석을 위해 제도 운용에 깊이 관여한 정책주도집단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 초점집단면접법의 장점은 단기간 내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시행 초기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초점집단면접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단 소속 전문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평가 과정에서 제도 운용상의 장애 요인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초점집단면접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초점집단면접 대상자는 10명으로 ① 담당 분야 ② 평가 참여 연도 ③ 학계 전문가와 분야별 국책 연구원의 구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초점집단면접 사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서면으로 받은 후, 서면 답변을 토대로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서면조사는 10월 21일(월)~10월 30일(수)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초점집단면접은 11월 2일(월)~11월 6일(금) 총 5회(1회당 2명씩)에 걸쳐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전문가의 지리적 접근성·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해 영상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표 Ⅲ-6〉 초점집단면접 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대상 |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단) |
| 표본규모 | • 총 10명(교수 6명, 분야별 국책 연구원 4명) |
| 조사방법 | • (1차) 사전 질문지를 통한 서면조사, (2차) 초점집단면접 |
| 조사기간 | • 서면조사: 2024년 10월 21일~10월 30일(총 10일간)<br>• 초점집단면접: 2024년 11월 2일~11월 6일(총 5회, 1회당 2명씩) |

〈표 Ⅲ-7〉 초점집단면접 대상

| 연번 | 분야 | 교수·연구원 | 평가 참여연도 |
|---|---|---|---|
| 1 | 문화 | 교수 | 2024 |
| 2 | 저출생 | 교수 | 2024 |
| 3 | 정주환경 | 교수 | 2024 |
| 4 | 산업일자리·교육 | 교수 | 2022, 2023 |
| 5 | 지역개발, 지방재정 | 교수 | 2025 |
| 6 | 저출생, 균형발전복지 | 교수 | 2025 |
| 7 | 지역개발 | 연구원 | 2025 |
| 8 | 지역개발, 지역정책 | 연구원 | 2022, 2023, 2024, 2025 |
| 9 | 산업일자리 | 연구원 | 2022, 2023, 2024 |
| 10 | 지역경제, 균형발전 | 연구원 | 2025 |

이 연구는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논리모형 중 계획평가를 시행하였다. 계획평가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제도 설계의 적절성과 수혜 대상의 적정성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한다. 제도 설계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적절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개편 방향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적절

한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지원 규모와 기간이 적절한지, 타 재원과의 연계 방식이 적절한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수혜 대상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평가 항목이 지방소멸대응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평가 투입 요소가 투자계획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제출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투자계획 평가 단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의 환류 단계에서 수혜 대상의 선정 방식에 관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였다.

### 3) 실증분석 평가방법

#### 가) 순영향평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은 〈표 Ⅲ-8〉에서와 같이 기금의 수혜지역이 수혜받지 않은 지역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더 높은지, 또는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 경제·개발지표(기금의 8개 지출분야 등)가 단기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이 사업의 접근방식 혹은 구성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는 사업 수혜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에 관한 분석, 즉 사업효과의 이질성 분석을 통하여 성과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8〉 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

| 질문유형 | 질문내용 |
|---|---|
| 사업효과 | • 사업(평가등급, 예산편성액, 집행액, 실집행액 등)이 단기적으로 지자체 인구변화(전입, 전출, 증감, 출생아 수 등)에 영향이 있었는가 |
| 사업효과의 이질성 | • 사업의 효과성이 사업의 접근방식 혹은 구성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br>• 사업의 효과성이 사업 수혜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br>• 사업의 효과성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가 |

〈표 Ⅲ-9〉 이질성분석을 위한 세부변수

| 성과의 변이 유발변수 | 세부변수 |
|---|---|
| 사업의 접근방식 혹은 구성요소 | 사업분야 |
| | 인프라조성 여부 |
| | 연계사업 유무 |
| |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 유무 |
| | 주민참여체계 유무 |
| | 사업의 우선순위 |
| | 기타 |
| 사업 수혜자의 인구학적 특성 | 연령대 |
| | 성별 |
| | 기타 |
| 지자체의 특성 | 인구특성 |
| | 교육수준·교육여건 |
| | 주거 |
| | 교통 |
| | 환경 |
| | 기타 |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의 한계는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사업의 상당수가 시설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자체의 인구변화, 지역경제·지역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시설이 아직 공사 중인 경우에는 시설이용에서 오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타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으로 전입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출, 즉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이 경우 추정된 결과는 실제 발생한 편익이 아닌 편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함). 따라서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등 다양한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식별하고자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소득 및 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단기 효과성을 소득 또는 일자리의 수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고용보다는 주민등록인구의 전입 또는 전출 등 지자체의 인구변화와 거주여건·삶의 질 개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

효과의 이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결과평가, 즉 인구소멸지역 및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이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된 성과변수에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고정효과패널모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 고정효과와 개별 사업 또는 개별 지자체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특정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추세와 특정 사업·지역에서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정책효과를 추정하는데,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beta\, Treat_{i,t} + X'_{i,t}\gamma + \epsilon_{i,t} \qquad \text{식 (1)}$$

모형에서 $i$는 개별 관찰단위를 나타내는데 사용 데이터에 따라 개별 사업 또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 있으며, $t$는 시간변수로 통계자료의 생성주기에 따라 반기 단위 또는 연 단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독립변수 $Treat_{i,t}$는 $t$시점에서 지역 $i$의 예산편성액 또는 예산집행액 등이 될 수 있으며, 종속변수 $y_{i,t}$는 $t$시점에서 지역 $i$의 인구, 전출인구, 전입인구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X_{i,t}$는 지역고정효과와 시간고정효과, 그리고 데이터 가용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i$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모형에 교차항을 추가하여 사업의 접근방식 혹은 구성요소, 지자체의 특성, 사업 수혜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른 사업효과의 이질성 분석이 가능하다.

고정효과모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등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해 추정된 결괏값을 인과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계사업이 있는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게 될 확률이 체계적으로 더 높은 경우에 연계사업 유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배분금액과 성과지표(인구증가 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또는 사업) 특성들이 모두 통제되어야 순효과를 추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변수들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누락변수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외부요인 또는 누락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처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배정한 뒤에 처치군에서만 사업을 시행하여 두 집단에 나타난 차이를 비교하는 무작위실험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무작위 배정이 어려운 사회과학에서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효과 식별 전략은 동질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활용하여 외부요인

의 영향을 제거하는 준실험설계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처치군과 수혜를 받지 않지만 처치군과 유사한 대조군을 설정하여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본 사업의 특징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금을 배분받는다는 점이다. 즉 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대조군 설정이 어렵다. 즉 기금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치 여부가 아닌 처치 강도의 차이, 즉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 내 등급 간 배분금액 차이에 따른 성과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y_{i,t} = \beta_1 Post_t \times Treated_i + \beta_2 Post_t + \beta_3 Treated_i + X'_{i,t}\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2)}$$

모형에서 $Post_t$는 시점 $t$가 기금사업이 시작된 시점(또는 예산집행이 완료된 시점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 이후이면 1의 값을 가지고,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Treated_i$는 지역 $i$가 기금의 수혜를 받으면 1의 값,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예산 배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중차분법 모형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의 차이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begin{aligned} y_{i,t} = {} & \beta_1 S_i \times Post_t + \beta_2 A_i \times Post_t + \beta_3 B_i \times Post_t + \\ & \beta_4 Post_t + \beta_5 S_i + \beta_6 A_i + \beta_7 B_i + X'_{i,t}\gamma +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 (3)}$$

$S_i$, $A_i$, $B_i$는 각각 지역 $i$가 S등급, A등급, B등급에 해당하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C등급 지역이 대조군의 역할을 하므로 추정된 계수 $\beta_1$의 값은 사업 시행 전 대비 시행 후의 종속변수의 평균적인 변화분에 대해서 S등급과 C등급을 비교한 값이 된다. 즉 C등급 배분금액 대비 S등급 배분금액의 상대적인 정책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업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S등급 지역의 인구는 평균적으로 10% 증가하였고 C등급 지역의 인구는 평균적으로 6%가 증가했다면 그 차이인 4%가 $\beta_1$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S등급과 C등급 예산 배분금액 차이에 의한 순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beta_2$는 C등급 배분금액 대비 A등급 배분금액의 상대적인 효

과, $\beta_3$는 C등급 배분금액 대비 B등급 배분금액의 상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중차분법 접근방식에 의한 추정 결과는 처치군과 대조군이 공통추세에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인과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처치가 없었더라면, 즉 예산 배분금액의 차이가 없었더라면 처치군(A, B, C 또는 D등급 지역)과 대조군(E등급 지역) 간에 인구증감 등 성과에 대한 추세가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처치가 없었더라면 처치군에 나타났을 성과는 현실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통추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으로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사업 시행 전 추세(pre-trend 또는 pre-treatment trend)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적이중차분법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y_{i,t} = (\sum_{j=2}^{11} \beta_{1,j} Pre_t^j) \times Treated_i + (\sum_{j=1}^{4} \beta_{2,j} Post_t^j) \times Treated_i + X'_{i,t}\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4)}$$

식에서 $Pre_t$ 및 $Post_t$는 기금사업 시행 전 또는 후의 반기별 기간(사용 데이터에 따라서 기간 조정 가능)으로 시행 5.5년 전부터 시행 후 2년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게 된다. 모형 (2)와 (3)에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 즉 사업 시행 전 기간은 시행 후의 상대적인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석의 기준 기간(reference period)이라고 하는데, 모형 (4)에서 기준 기간은 마찬가지로 모형에서 제외된 기간인 $Pre_t^1$(사업 시행 직전 반기)이다. 따라서, 추정된 결괏값은 사업 시행 직전 반기 동안의 성과 대비 기준 시점 성과의 평균적인 변화분에 대하여 처치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값이 된다. 예를 들어, S등급 지역과 C등급 지역만 표본에 포함하여 사업 시행 전 인구변화율 추세를 비교한다면, S등급이 처치군, C등급이 대조군이 되어, $Treated_i$는 지역 $i$가 S등급이면 1의 값, C등급이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추정 결과, $\beta_{1,11}$부터 $\beta_{1,2}$까지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면 S등급과 C등급의 인구증감 추세가 사업 시행 전에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후에도 추세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측정된 사업의 효과(즉, $\beta_{2,1}$, $\beta_{2,2}$, $\beta_{2,3}$, $\beta_{2,4}$)는 처치군과 대조군 간 성과지표에서의 상이한 추세가 통제되지 않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순효과 또는 인과효과라고 간주될 수 없게 된다.

나) 과정평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금예산이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예산집행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영향평가에서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정평가를 통해서도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정평가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계량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 Ⅲ-10〉에서와 같이 사업의 접근방식·구성요소 또는 사업 수혜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사업의 집행 수준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운영이 원래의 집행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사업의 특성 또는 수혜자의 특성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영향평가에서 사업성과가 미미한 경우, 그 원인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관련 질문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분석모형은 영향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패널모형이다.

〈표 Ⅲ-10〉 실증분석을 통한 과정평가 항목

| 질문내용 | 세부변수 |
|---|---|
| 사업의 접근방식 혹은 구성요소가 사업의 집행 수준에 영향이 있었는가 | 사업분야 |
| | 인프라조성 여부 |
| | 연계사업 유무 |
| |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 유무 |
| | 주민참여체계 유무 |
| | 사업의 우선순위 |
| | 기타 |
| 사업 수혜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사업의 집행 수준에 영향이 있었는가 | 연령대 |
| | 성별 |
| | 기타 |

다) 계획평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이 사업운영이 초기 단계인 사업은 영향평가에서 사업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정평가뿐만이 아니라 사업설계 측면에서의 적절성 평가, 즉 계획평가를 통해서도 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상대적 개발지수를 높이는 데 배분되었는지, 즉 기금의 8개 지출 분야(산업일자리, 교통, 주거, 노인의료, 문화관광, 보육, 교육, 복합) 중 수혜 지자체의 취약 분야에 맞게 기금이 배분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Ⅲ-11〉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출분야별 대표적인 통계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출분야 | 대표적인 통계 |
|---|---|
| 산업일자리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
| 교통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
| 주거 | 노후주택비율 |
| 노인의료 | 노인 1천명당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 문화관광 |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 보육 |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
| 교육 |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 |
| 복합 | 생활안전등급 |

$$Index_{i,k} = \frac{X_{i,k} - \mu_k}{\sigma_k} \qquad \text{식 (5)}$$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8개 지출분야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통계치를 선정하였다. 〈표 Ⅲ-11〉에서와 같이, 사용된 통계치는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율(고용률 등) 또는 인구 1인당/1천명당 통계치(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등)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출 분야에 대해서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수화하기 위하여 각 지출분야별 통계치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하였다. 즉 기초지자체 $i$의 지출분야 $k$의 대표 통계치를 $X_{i,k}$라고 하고, 지출분야 $k$의 전국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각각 $\mu_k$, $\sigma_k$이면 식 (5)에 의해서 기초지자체 $i$의 지출분야 $k$의 지수 $Index_{i,k}$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정규분포상의 값이 된다. 이때 노후주택비율과 같이 값이 클수록 취약함을 의미하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값을 붙여 값이 클수록 해당 분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보정을 하고, 산업일자리 등과 같이 지출분야 $k$에 대해서 복수의 통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화값의 평균을 취하였다.

$$Matching_i = -\frac{\sum_{k}^{8}\sum_{j}^{N}[I(Type_{i,j}=k)\times Index_{i,k}]}{N_{|i}} \quad \text{식 (6)}$$

다음은 식 (6)을 이용하여 각 지자체별 기금사업의 분야가 해당 지자체의 취약분야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한다. 여기서 $Type_{i,j}$는 기초지자체 $i$의 개별 기금사업 $j$의 사업 유형(8개 지출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I(Type_{i,j}=k)$는 사업유형이 $k$이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기초지자체 $i$가 2개($N=2$)의 기금사업이 있는데 기금사업 1의 유형이 산업일자리, 기금사업 2의 유형이 교통이라고 한다면, 그 지자체의 지출분야지수는 8개이므로 총 $2\times8=16$개의 조합이 만들어진다. 그중 기급사업의 유형에 해당하는 산업일자리 지수와 교통지수의 값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된다. 따라서 각각의 값이 -0.5와 0.3이라고 한다면 $\sum_{k}^{8}\sum_{j}^{N}[I(Type_{i,j}=k)\times Index_{i,k}]=-0.5+0.3=-0.2$가 되고, 따라서 $Matching_i = -\frac{-0.2}{2}=0.1$이 된다. 여기서 $Matching_i$의 값이 (+)이면서 클수록 그 지자체는 기금사업에 해당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 (-)이면서 클수록 그 지자체는 기금사업에 해당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강점을 가진 분야임을 의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A에서 교통, 주거, 노인의료 3개의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A의 관련 지표의 값이 각각 0.3, 0.5, 0.7이라면(즉 지자체 A는 세 사업의 지출분야에 해당하는 교통, 주거, 노인의료 관련 지수의 값이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Matching_A = -\frac{0.3+0.5+0.7}{3}=-0.5$이므로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

$$y_{i,t} = \beta Matching_{i,t} + X'_{i,t}\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7)}$$

마지막으로 고정효과모형 (8)을 통해서 기금사업의 분야가 수혜 지자체의 취약 분야에 맞는 경우에 예산이 더 배분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형에서 $i$는 기초지자체, $t$는 예산편성 연도를 나타내며, 종속변수 $y_{i,t}$는 기초지자체 $i$의 $t$년도 예산편성액이 될 수 있다. $X_{i,t}$는 지역고정효과, 시간고정효과를 포함한다.

## 4. 데이터 구축 현황

실증분석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의 현황은 〈표 Ⅲ-12〉와 같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집행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통해 구축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2022년, 2023년, 2024년 기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지자체별 예산 배분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분기별, 반기별 예산의 세부사업별, 지자체별 집행액과 실집행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금 사업 특성 자료의 경우 전국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지자체에서 실시한 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의 사업분야, 인프라 조성 여부, 사업 추진체계 유무, 외부네트워크체계 유무 등의 사업 특성을 정리한 데이터이다. 해당 자료를 통해 기금 사업의 예산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 집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 변수들은 229개 시군구 단위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인구감소 현상의 결과지표이자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수, 총전입 인구수 등의 변수들을 통해 지역별 인구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인구감소 현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인구 통계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교통,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지표를 통해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산업지표는 각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나타내며,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등의 교통지표는 지역 내 접근성과 연결성을 의미한다. 문화 및 교육지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로, 지역 커뮤니티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주요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Ⅲ-12〉 데이터 구축 현황

| 구분 | 데이터 명 | 자료 출처 |
|---|---|---|
| 기금 사업 집행 자료 | 세부사업별 누적예산배분금액 | 행정안전부 자료 |
| | 세부사업별 누적예산집행금액 | 행정안전부 자료 |
| | 세부사업별 누적예산실집행금액 | 행정안전부 자료 |
| | 지자체별 누적배분금액 | 행정안전부 자료 |
| | 지자체별 누적집행금액 | 행정안전부 자료 |
| | 지자체별 누적실집행금액 | 행정안전부 자료 |
| 기금 사업 특성 자료 | 사업분야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인프라 조성 여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추진체계 유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외부네트워크체계 유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주민참여체계 유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신규 사업 여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사전이행절차 여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여타 재원 유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연계사업 유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사업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사업의 차별화 및 새로움의 정도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수혜대상 연령 구분 유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수혜대상 주민등록 구분 유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 사업 이력 |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료 |
| 지역 특성 변수 | 주민등록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현황 |
| | 주민등록 세대 수 | 주민등록인구현황 |
| | 총전출 인구수 | 국내인구이동통계 |
| | 총전입 인구수 | 국내인구이동통계 |
| | 시도간/시도내 이동자 수 | 국내인구이동통계 |
| |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 국내인구이동통계 |
| |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현황 | 소유권이전등기 |
| | 출생아 수 | 인구동향조사 |
| | 합계출산율 | 인구동향조사 |
| | 혼인건수 | 인구동향조사 |

〈표 Ⅲ-12〉의 계속

| 구분 | 데이터 명 | 자료 출처 |
|---|---|---|
| | 취업자 수 | 지역별고용조사 |
| | 실업자 수 | 지역별고용조사 |
| | 도서 지역 여부 | 통계청 |
| | 경제활동참가율 | 지역별고용조사 |
| | 고용률 | 지역별고용조사 |
| | 청년고용률 | 지역별고용조사 |
|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 | 도로포장률 | 도로현황 |
| | 노후주택비율 | 주택총조사 |
| | 노인 1천명당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 | 노인복지시설현황 |
| |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건강보험통계 |
| |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문화기반시설총람 |
| |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
| |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 | 교육기본통계 |
| | 생활안전등급 | 지역안전지수 |

자료: 저자 작성.

## 5. 기초통계량

### 가. 지역의 인구·이동·소유권 통계 관련

#### 1) 인구동향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광역지자체의 인구동향 관련 변수를 비교한 기초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3명, 관심지역은 608명으로, 광역지자체의 평균 출생아 수인 1,905명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혼인건수 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평균 혼인건수는 147건, 관심지역은 483건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지역인,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인구동향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인구감소지역들에 실

시한 출산 관련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합계출산율의 산출식[10]에서 분모에 위치한 여성 주민등록인구가 지나치게 낮아 과대평가된 현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Ⅲ-1]에 따르면 2017~2023년의 모든 인구동향 관련 통계에서 모든 지역 구분에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지역의 인구동향 기초통계계량

(단위: 명)

| 구분 | | 2021년 평균 | 2022년 평균 | 2023년 평균 |
|---|---|---|---|---|
| 연도별 합계출산율 | 인구감소지역 | 1.01 | 0.96 | 0.94 |
| | 인구관심지역 | 0.88 | 0.85 | 0.80 |
| | 그 외 지역 | 0.83 | 0.80 | 0.74 |
| 연도별 출생아 수 | 인구감소지역 | 193 | 177 | 170 |
| | 인구관심지역 | 608 | 590 | 543 |
| | 그 외 지역 | 1,905 | 1,826 | 1,674 |
| 월별 혼인건수 | 인구감소지역 | 147 | 151 | 155 |
| | 인구관심지역 | 483 | 470 | 454 |
| | 그 외 지역 | 1,374 | 1,360 | 1,374 |

[그림 Ⅲ-1] 지역의 인구동향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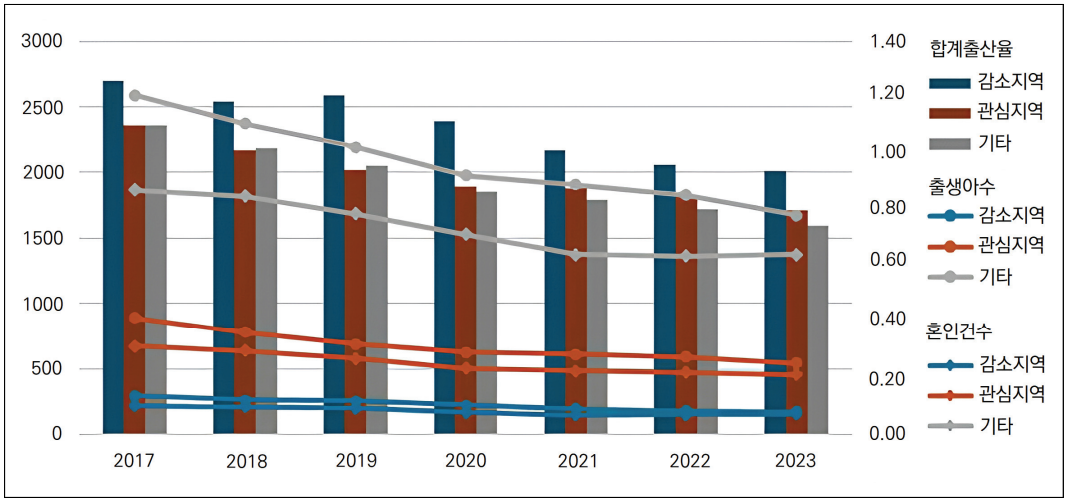


10) 15~49세(1세별)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15~49세(1세별) 여자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 2) 국내 인구이동[11)]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인구이동 관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동자 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불리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순이동자 수는 -29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관심지역의 경우 -2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지역 모두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 인구유출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평균 순이동자 수가 248명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인구유입을 보였다. 이러한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과 관련된 순이동자 수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 -175명, 관심지역에서는 평균 -464명으로, 직업을 이유로 한 전출인구가 100명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고용기회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많은 인구가 직업을 찾아 외부로 떠나는 현실을 반영한다. 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순이동자 수가 평균 196명으로, 직업을 이유로 한 전입인구가 월평균 100명 단위에 달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에 비해 인구유입을 보여준 전입사유는 '자연환경'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환경을 위해 이동한 인구들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11) 이 보고서는 주민등록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2024년 1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참고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2024년 12월 현재, 정부는 보도자료 및 행안부·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시군구별 생활인구 통계('24.1~6월)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생활인구 기준으로 2024년 3월 대비 6월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재평가를 추진한다면, 생활인구 개념까지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제언 등이 가능할 것이다.

〈표 Ⅲ-14〉 지역의 인구·이동 기초통계량

(단위: 명)

| 구분 | | 2021년 월평균 | 2022년 월평균 | 2023년 월평균 |
|---|---|---|---|---|
| 순이동자 수 | 인구감소지역 | -296 | 44.2 | 43.5 |
| | 인구관심지역 | -216 | -810 | -1109 |
| | 그 외 지역 | 248 | 318 | 132 |
| 전입사유별 순이동자 수 | | 2021년 월평균 | 2022년 월평균 | 2023년 월평균 |
| 가족 | 인구감소지역 | -198 | -50.3 | -52 |
| | 인구관심지역 | -91.3 | -91.4 | -162 |
| | 그 외 지역 | 158 | 50.2 | 61.9 |
| 교육 | 인구감소지역 | -77.4 | -59.5 | -50.3 |
| | 인구관심지역 | 125 | 96.4 | 91.8 |
| | 그 외 지역 | 38.1 | 29.1 | 23.1 |
| 직업 | 인구감소지역 | -175 | -99.3 | -79.2 |
| | 인구관심지역 | -464 | -576 | -515 |
| | 그 외 지역 | 196 | 157 | 134 |
| 주택 | 인구감소지역 | -2.61 | 71.5 | 76.2 |
| | 인구관심지역 | 182 | -244 | -513 |
| | 그 외 지역 | -25 | -16.1 | 20.1 |
| 주거환경 | 인구감소지역 | -44.1 | -23.6 | -16.5 |
| | 인구관심지역 | 10.6 | -50.1 | -77.2 |
| | 그 외 지역 | 30.6 | 24.6 | 23.4 |
| 자연환경 | 인구감소지역 | 184 | 176 | 150 |
| | 인구관심지역 | 78.4 | 59.6 | 53 |
| | 그 외 지역 | -146 | -137 | -117 |
| 기타 | 인구감소지역 | 18.1 | 29.1 | 15.3 |
| | 인구관심지역 | -57.2 | -3.72 | 13.4 |
| | 그 외 지역 | -4.79 | -20.7 | -13.2 |

### 3)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에 비해 부동산 매수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수인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매수인 수는 5,056명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지역의 평균 매수인 수는 7,589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평균 매수인 수는 1만 4,714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매수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의 매수인 수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수도권 매수인 수는 1,0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인구관심지역에서는 2,39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8,594명의 높은 매수를 보였다.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매수인 수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Ⅲ-2]와 같다. 빗금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한다. 2023년도 기준 경기 남부에서 세종시까지의 경부축을 중심으로는 활발하게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빗금으로 표시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은 비교적 적색에 가까운 색을 보여 매수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균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분산 측면에서 수도권 거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들은 대부분 동일 권역인 수도권에 대해서만 활발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매수를 보여주었다. 비수도권 권역 중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도의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매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5〉 지역의 소유권 기초통계량

(단위: 명)

| 구분 | | 2021년 평균 | 2022년 평균 | 2023년 평균 |
|---|---|---|---|---|
| 소유권이전등기 전체 매수인 수 | 인구감소지역 | 5,056 | 4,474 | 3,401 |
| | 관심지역 | 7,589 | 5,903 | 4,672 |
| | 그 외 지역 | 14,714 | 10,906 | 9,629 |
| 소유권이전등기 수도권 매수인 수 | 인구감소지역 | 1,045 | 914 | 658 |
| | 관심지역 | 2,398 | 1,928 | 1,634 |
| | 그 외 지역 | 8,594 | 6,206 | 5,371 |

[그림 Ⅲ-2]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 현황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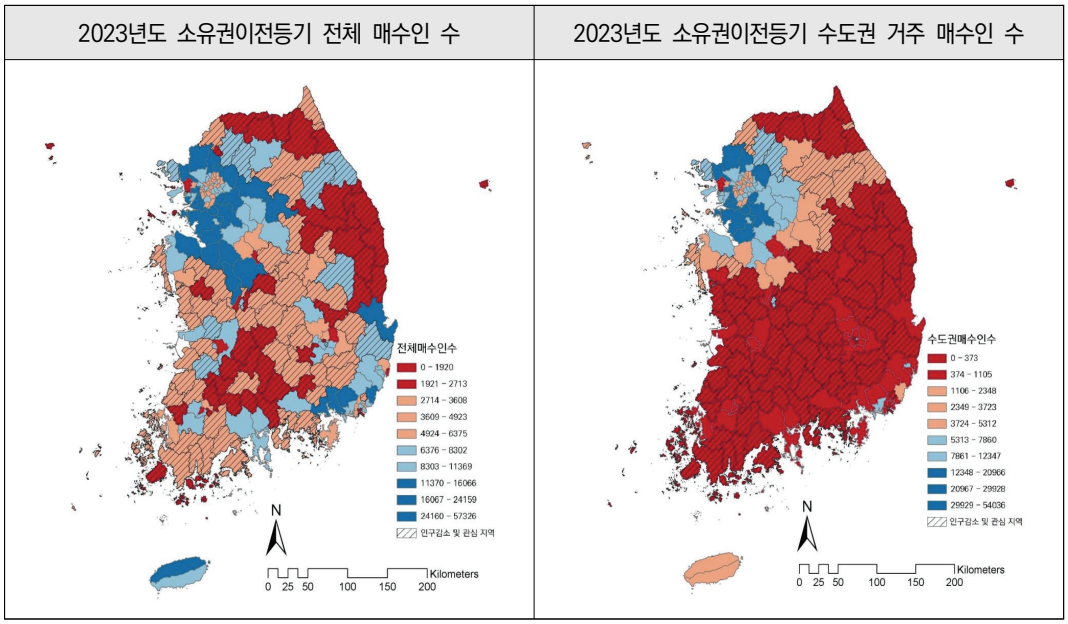


## 나. 지역의 분야별 상대적 개발지수 통계 관련

지역의 분야별 상대적 개발지수 통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9개 분야(산업일자리, 교통, 주거, 노인의료, 문화관광, 보육, 교육, 복합) 각각에 대해 개별 지자체의 개발 수준이 여타 지자체의 평균에 비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통계는 국가통계포털에서 대외 공개된 각 분야의 대표 지표를 사용하여, 표준정규값을 통해 상대적 개발지수를 산출하였다. 다만 이하의 기초통계에서는 각 대표 지표의 절대 규모를 사용하여 비교의 직관성을 높였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방소멸 관점에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통, 교육, 주거, 복합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산업일자리, 노인의료,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평균적으로 유리한 점이 드러났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인 도로포장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가 적어 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분야에서는 노후주택비율이 높게 나타나 물리적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 분야에서는 생활안전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2] 반면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률이, 노인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더 많아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이 아닌 지역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지역의 분야별 상대적 개발지수

| 구분 | | 지자체 개수 | 2021년 평균 | 2022년 평균 | 2023년 평균 |
|---|---|---|---|---|---|
| 산업일자리: 고용률 | 감소지역 | 89 | 67.2 | 67.8 | 68.5 |
| | 관심지역 | 18 | 58.5 | 59.4 | 60.3 |
| | 그 외 지역 | 122 | 58.8 | 60.0 | 60.9 |
| 교통: 도로포장률 | 감소지역 | 89 | 90.7 | 91.6 | 91.9 |
| | 관심지역 | 18 | 97.5 | 97.5 | 97.5 |
| | 그 외 지역 | 122 | 98.1 | 98.3 | 98.3 |
| 주거: 노후주택비율 | 감소지역 | 89 | 41.0 | 42.6 | 44.0 |
| | 관심지역 | 18 | 31.1 | 33.3 | 35.7 |
| | 그 외 지역 | 122 | 19.0 | 21.3 | 23.7 |
| 노인의료: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감소지역 | 89 | 15.3 | 15.1 | 14.9 |
| | 관심지역 | 18 | 5.25 | 5.11 | 5.02 |
| | 그 외 지역 | 122 | 4.36 | 4.31 | 4.2 |
| 문화관광: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감소지역 | 89 | 19.6 | 20.7 | 20.6 |
| | 관심지역 | 18 | 10.8 | 11.1 | 11.52 |
| | 그 외 지역 | 122 | 6.21 | 6.41 | 6.77 |
| 보육: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 감소지역 | 89 | 16.5 | 17.3 | 17.8 |
| | 관심지역 | 18 | 19.7 | 20 | 20.2 |
| | 그 외 지역 | 122 | 17.1 | 17.3 | 17.5 |
| 교육: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 | 감소지역 | 89 | 0.826 | 0.83 | 0.838 |
| | 관심지역 | 18 | 1.43 | 1.46 | 1.48 |
| | 그 외 지역 | 122 | 1.6 | 1.69 | 1.75 |
| 복합: 생활안전등급 | 감소지역 | 89 | 3.55 | 3.48 | 3.46 |
| | 관심지역 | 18 | 3.61 | 3.39 | 3.33 |
| | 그 외 지역 | 122 | 2.58 | 2.66 | 2.69 |

주: 본 통계는 대외 공개된 해당 분야의 대표 지표(예: 교통 분야는 도로포장률)에 대한 각 지역의 표준정규값(평균 0, 표준편차 1)을 사용하여 상대적 개발지수를 간편 개발했으나, 기초통계에서는 대표 통계의 절대 규모를 제시함.

12) 복합분야 통계를 위해 본 보고서는 생활안전등급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대상의 통계 중 생활안전등급이 복합분야를 부분적이나마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활안전등급 이외에 정부가 공개하면서 복합분야를 부분적이나마 대표할 수 있는 통계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복합분야는 여러 분야를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선택하는 분야이며, 2025년 투자계획서 기준 복합분야는 중복 포함 문화·관광 102개, 산업·일자리 101개, 주거 90개 등으로 '생활 안전등급'과는 연관성이 다소 부족함을 이유로 복합분야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합분야가 기금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2024년 기금 기준 20.3%,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복합분야를 삭제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유를 종합하여 본 보고서는 복합분야를 유지하되, 행정안전부 요청을 존중하여 복합분야를 삭제한 경우의 실증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복합분야를 포함할 때의 실증분석 결과와 복합분야를 삭제할 때의 결과는 상이하다.

## 다. 예산 집행·실집행 통계 관련

구축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기초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기금 사업의 집행자료를 토대로 산출한[13] 지역 구분별 예산 집행률은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예산 집행률 기초통계량

| 구분 | | 누적 집행률 평균 | 누적 실집행률 평균 |
|---|---|---|---|
| 2022년도 기금 | 인구감소지역 | 69.02% | 39.76% |
| | 인구관심지역 | 76.00% | 55.46% |
| | 광역지자체 | 95.01% | 61.20% |
| 2023년도 기금 | 인구감소지역 | 49.37% | 29.24% |
| | 인구관심지역 | 60.98% | 38.98% |
| | 광역지자체 | 96.04% | 47.66% |
| 2024년도 기금 | 인구감소지역 | 27.04% | 10.05% |
| | 인구관심지역 | 43.19% | 18.30% |
| | 광역지자체 | 67.54% | 21.22% |

주: 1. 기준: 2022년 기금을 2024년 6월까지 누적
2. 집행률과 실집행률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 일부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재정 365와의 교차점검을 통해 산정함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2022년 기금 배정액(7,477억원)의 2024년 6월까지 누적 평균 집행률(인구감소지역: 69.02%, 관심지역: 76.00%)과 누적 평균 실집행률(인구감소지역: 39.76%, 관심지역: 55.46%)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관심지역의 누적 집행률이 인구감소지역보다 소폭 높았으며, 광역지자체의 경우 약 95.01%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실집행률은 39.76%로 가장 낮은 모습이었고, 광역지자체는 실집행률 평균이 높은 편이었다.[14]

2023년 기금 배정액(9,967억원)의 2024년 6월까지 누적 평균 집행률(인구감소지역: 49.37%, 관심지역: 60.98%)과 누적 평균 실집행률(인구감소지역: 29.24%, 관심지역: 38.98%)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기금에서 광역지자체의 실집행률이 61.20%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과 달리, 2023년 기금에서는 광역지자체 역시 47.66%

13) (실)집행률 % = ((실)집행금액 / 배분금액) × 100
14) 광역지자체의 실집행률이 기초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 것은 광역지자체의 실집행률이 기초지자체보다 실제 높은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실집행률과 집행률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반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부는 양자를 구분하여 산정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로 낮은 누적 실집행률을 기록했다. 2024년 기금의 경우, 기금 배분에서 집행까지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모든 지역 구분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 대상의 모든 연도에서 인구감소지역은 가장 낮은 집행률 평균을 기록했으며, 특히 실집행률에서 이러한 격차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자금 집행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나 행정적 역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관심지역이나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실집행률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인구감소지역의 기금 활용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실행 방안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그림 Ⅲ-3] 시군구 단위 평균 집행률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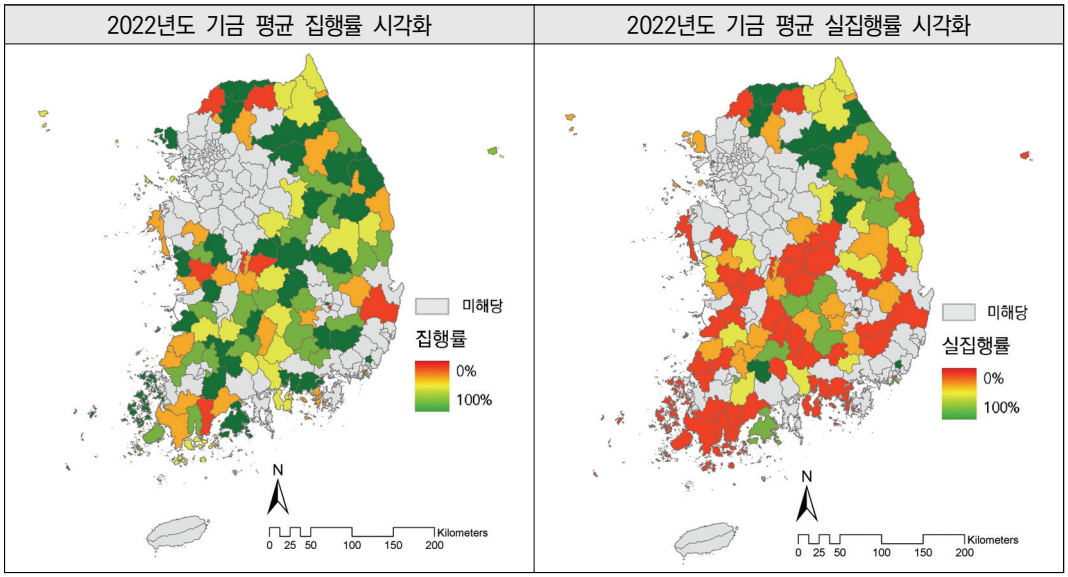


주: 1. 기준: 2024년 6월까지 누적
2. 광역 본청의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률과 실집행률만을 대상으로 시도 단위 평균을 산출

2022년도 기금을 기준으로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Ⅲ-3]과 같다. 집행률이 낮을수록 붉은색에 가까우며, 집행률이 높을수록 녹색에 가깝다. 집행률의 경우 전국적으로 특정한 분포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실집행률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여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 배정 후 예산 집행까지 가장 긴 시간이 주어진 2022년도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집행률과 실집행률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Ⅳ.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 1. 순영향평가

### 가. 외부요인 등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의 달성 여부

외부요인 등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즉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고용 등 핵심 성과지표에 미치는 인과효과는 식별되지 않았다(기금의 효과는 없다).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비수혜지역 간의 차이,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내 등급 간 배분금액의 차이에 따른 성과 차이를 활용한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에서 기금이 총전출자 수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적이중차분법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결과는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이질적인 추세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구감소지역과 비수혜지역은 사업 시행 전 이미 두 그룹의 추세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그 추세가 사업 시행 후에도 지속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효과는 식별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예산배정액의 차이가 성과지표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은 기금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인과효과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에서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기금의 인과효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정평가 및 계획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순영향평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향후 추가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 재평가를 시행한다면 순영향평가에서 유의하거나 의도한 결과가 발견될 수도 있다. 본 사항은 실증분석의 여타 평가 유형에서도 적용된다.

## 2. 결과평가

### 가. (외부요인 등의 통제 없는) 인구, 실업자, 전입자 등에 미치는 효과

기금의 순영향이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에(기금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평가를 통해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함의를 얻기는 어렵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평균적인 인과효과가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효과의 이질성 분석을 통해 기금사업의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성과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간접적으로 도출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평가에서 순영향평가는 지자체 단위에서만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 단위의 특성이 주요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평가를 통해서만 확인해볼 수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계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다. 즉 기금이 인구, 고용 등의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인데, 이는 인구 또는 고용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일수록 기금배정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역인과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세부사업단위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예산의 배분 또는 집행은 인구, 고용 등의 주요 성과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으며, 사업의 주요 특성에 따른 사업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사업 특성은 사업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교육사업, 보육사업, 그리고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간접적으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순효과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과 함의 도출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표 Ⅳ-1〉 참조).

〈표 Ⅳ-1〉 세부사업단위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주요 결과 요약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ln(총전입자수) | | ln(취업자수) | |
| 누적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109*** | | 0.000595 | | 0.000140 | |
| | **(6.39e-05)** | | (0.000678) | | (0.000131) | |
| 누적집행금액×교통 | 0.000279 | | 0.00339 | | -0.000236 | |
| | (0.000214) | | (0.00223) | | (0.000568) | |
| 누적집행금액×주거 | 3.00e-05 | | -0.000481 | | -4.11e-06 | |
| | (5.47e-05) | | (0.000643) | | (0.000123) | |
| 누적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128 | | 0.000468 | | **-0.000578**** | |
| | (0.000117) | | (0.000709) | | **(0.000280)** | |
| 누적집행금액×문화관광 | 1.64e-05 | | -0.000498 | | -0.000148 | |
| | (4.95e-05) | | (0.000577) | | (0.000143) | |
| 누적집행금액×보육 | **0.000471**** | | -0.00122 | | 8.81e-05 | |
| | **(0.000191)** | | (0.00183) | | (0.000339) | |
| 누적집행금액×교육 | 0.000196 | | 0.000971 | | -5.68e-05 | |
| | (0.000130) | | (0.00137) | | (0.000253) | |
| 누적집행금액×복합 | -1.84e-06 | | -0.000469 | | -0.000120 | |
| | (3.13e-05) | | (0.000477) | | (9.66e-05) | |
| 누적집행금액×기타 | -8.84e-05 | | 0.000901 | | -6.94e-05 | |
| | (9.50e-05) | | (0.00139) | | (0.000291) | |
| 누적실집행금액×산업일자리 | | **0.000153**** | | 0.000864 | | 0.000203 |
| | | **(6.92e-05)** | | (0.00117) | | (0.000183) |
| 누적실집행금액×교통 | | 4.03e-05 | | **0.00608*** | | -0.000246 |
| | | (0.000170) | | **(0.00307)** | | (0.000835) |
| 누적실집행금액×주거 | | -3.32e-05 | | -0.000603 | | 0.000371 |
| | | (8.95e-05) | | (0.00123) | | (0.000333) |
| 누적실집행금액×노인의료 | | -0.000118 | | 0.000140 | | **-0.000633**** |
| | | (0.000116) | | (0.000612) | | **(0.000291)** |
| 누적실집행금액×문화관광 | | -8.77e-07 | | -0.000896 | | -0.000145 |
| | | (5.06e-05) | | (0.000816) | | (0.000226) |
| 누적실집행금액×보육 | | **0.000639***** | | -0.00162 | | 0.000433 |
| | | **(0.000218)** | | (0.00213) | | (0.000462) |
| 누적실집행금액×교육 | | **0.000302*** | | **0.00261**** | | 0.000105 |
| | | **(0.000174)** | | **(0.00129)** | | (0.000315) |
| 누적실집행금액×복합 | | 9.96e-05 | | 0.00112 | | 2.55e-05 |
| | | (0.000168) | | (0.00188) | | (0.000486) |
| 누적실집행금액×기타 | | -0.000111 | | 0.00180 | | 7.33e-06 |
| | | (0.000119) | | (0.00172) | | (0.000431)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0.981 | 0.981 | 0.999 | 0.999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설명변수의 금액은 모두 억원 단위이며,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값임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나. 기금 사업의 정책 효과, 비의도 효과, 여타 사업 대비 정책 효과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여타 재정사업에 비해 중앙정부의 성과에 대한 관리통제가 다소 약한 편이고, 단기적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마중물의 가시적 성과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역현장에서는 지역 주도의 기금사업이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정책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인식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외부기관의 지적, 즉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별로 차별적 전략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재정사업과 유사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보다 연례적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견해와는 괴리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의 격차가 확인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정책효과에 대해 외부기관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본 서 제Ⅱ장의 2. 참조), 집행현장 담당자 다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지방소멸대응에 매우 또는 대체로 기여하고 있으며(설문문항 3-1, 〈표 Ⅴ-17〉), 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설문문항 3-2, 〈표 Ⅴ-18〉).

## 3. 과정평가

### 가. 가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적절성

#### 1) 기금 사업 특성이 집행 수준에 미치는 효과

순영향평가에서 기금의 인과효과가 식별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 짧은 시행기간에 따른 저조한 예산집행률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의 준비 정도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15]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정효과패널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사업의 유형 또는 수혜대상의 특성보다는 사업의 준비 정

15)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서의 인센티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여기서의 인센티브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에 따른 성과를 제시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구분하여 지방소멸대응이라는 기금의 정책목표 달성을 권장하기 위한 도구임. 따라서 인센티브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간의 과잉 경쟁 또는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본 사항은 본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도가 사업의 집행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완료된 경우, 추진을 완료한 경우에 예산의 집행 수준 또는 집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분야, 사업의 차별성, 수혜대상 등에 따른 사업진행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집행사업의 사전 준비도가 재원의 배분, 즉 사업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집행 수준, 운용자원, 환류의 적절성

첫째,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스템은 집행과정의 적절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내외부 관리와 점검이 보다 면밀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기금 관리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집행 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소멸대응기금관리조합이 발주한 외부기관 사업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외부기관, 공제회, 행정안전부, 일반 국민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과정에서 집행 수준이 적절한지, 운용자원을 충분하게 조달하였는지, 전달체계상 제기되는 의견 수집과 환류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저조한 사업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의 적절성(설문문항 2-1 내지 2-4)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점은, 지역 현장에서 집행 수준과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행태가 지역별로 상이하며 집행을 위한 준비도의 차이는 재정 책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집행자원의 충분성과 정책목표(효과)의 경로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금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한 자원(예산, 인력, 장비)의 집행의 충분성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였는데(설문문항 2-1, 〈표 V-12〉), 이때 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차이, 기금 집행률이 평균 이상인 고집행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저집행률 지역 간의 자원집행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였다. 즉 인구감소지역과 집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관심지역이나 집행률이 높은 지역에 비해 기금사업 집행을 위한 인력, 예산, 장비 등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전달체계 경로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고 환류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달체계 경로에서의 의견 수집과 환류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85.8%)는 의견을 수집하고 사업관리에 환류한다고 답하였다(70.5%, 설문 2-2).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 환류와 관련하여 진행완료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환류에 적극적이라고 답하였다(설문 2-2와 여타 통계의 결합).

## 나.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효과성

### 1) 정책목표(효과) 경로분석의 효과성

정책목표(효과)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기금 운용 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각 경로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로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금재원을 지원받는 곳에서 대체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기금집행률이 평균 이상인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는 분석의 강도에 있어서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설문문항 2-3, 〈표 V-15〉).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정책목표(효과) 경로분석의 정도가 관심지역보다 덜하고, 기금의 고집행률 지역이 저집행률 지역보다 정책목표(효과) 분석의 강도가 높았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기금 재원을 중장기에 걸쳐 확정적으로 배분받고, 기금집행 과정에서 자원의 조달이나 분석 노력을 덜 들이더라도 기금재원을 배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상대적으로 기금 집행률이 높은 자치단체는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집행자원에 대한 활용 노력과 효과의 경로분석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설문문항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역으로 현행 기금 배분 시스템과 같이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금이 배분될 경우, 기금 집행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 2) 기금집행 시 이슈 분석의 효과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시 이슈 분석의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이 소멸대응기금 집행과 관련한 이슈 분석을 대체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해당 이슈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는 그 원인을 자치단체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렸다. 기금집행 시 이슈 분석을 대체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그 이슈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답변은 이슈 분석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설문문항 2-4, 〈표 V-16〉). 자치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자치단체가 통제 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자치단체 스스로가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기금의 효과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금집행률 등 객관적 지표 성과가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집행 시 이슈 분석의 실효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계획평가

### 가. 주무기관의 기금투자계획 평가의 적절성

주무기관의 기금투자계획 평가의 적절성은 평가항목, 평가 투입요소, 평가 이후 절차, 평가체계 및 운영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 1) 평가항목, 평가 투입요소, 평가 이후 절차

첫째, 평가항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경과 시점을 고려할 때 적절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초기, 정부는 지역의 정주·체류 여건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기금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는 다년도가 소요되므로 기금 운용 초기에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기금투자계획 평가 항목이 주로 '투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4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20점), 사업 내용(40점), 연계(20점), 운영관리체계(11점) 등 투자계획 평가가 91점, 추진실적 평가가 4점, 정량지표(인구감소지수, 투자협약 체결 실적)가 5점으로 계획평가 중심이었다. 2025년 평가에서는 투자계획 평가점수를 8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추진실적 평가 10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3점, 정량지표(인구감소지수, 투자협약 체결 실적) 10점으로 실적 평가 점수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지

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상당수 기반 시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투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금투자계획의 평가 투입요소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투입요소란 평가기간, 평가인력 규모,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료·데이터, 평가조직의 공정성(중립성)을 의미한다. 평가 투입요소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제 기금투자계획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투입요소가 적절하게 제공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금투자계획 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려면 현장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인력의 확대와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타 부처 사업 간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 풀(pool)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 구성 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위촉한 바 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에서 현장 평가가 강조될 경우 서면 검토, 발표 평가에 투입되는 기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기금투자계획평가단 평가 이후 절차 또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금액은 평가단에서 투자계획(안)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정을 거쳐 조합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구조이다. 투자계획(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금액이 달라지므로 당초 제출한 기금투자계획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절차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투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자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계획서를 수정·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하므로 기금조합 회의를 통해 배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금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단 평가 이후의 절차는 적절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주무기관의 투자계획 평가체계 및 운영

첫째, 주무기관의 투자계획 평가체계의 적절성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필요성(니즈)에 부합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현장에서는 투자계획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기금을 배분하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였다(설문 문항 1-1 내지 1-3, 〈표 V-1〉). 또한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배분액의 격차가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대체로 수긍을 하였지만(설문문항 1-2, 〈표 V-2〉),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금배분 문제에 대하여는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설문문항 1-3, 〈표 V-3〉). 이때 투자계획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저평가 결과 지역의 응답 강도가 고평가 결과 지역의 응답보다 부적절함을 강하게 표시하여 저평가 지역에서는 배분 격차가 크지 않은 투자계획 평가체계에 대하여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는 강한 부적절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담당자들은 자기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것보다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배분금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소속 지자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16] 즉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가 받는 배분액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가 받는 배분액 규모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향후 투자계획 평가 결과가 저조할 경우에도 배분받는 규모가 일정 수준 확보되기 때문에 중장기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기금배분 대상 지자체의 이익과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타 통계와의 결합분석에서도 나타났는데, 자치단체 기금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고 사업이력이 계속사업이고 여타 재원이 있는 유리한 경우가 불리한 사업에 비해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작은 것을 선호하였다(〈표 V-33〉). 자치단체의 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의 배분 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량적 평가 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정성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섬 지역의 특성이나 현안을 고려하든가, 인구증가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인구와 지역사회 여건이 가장 악화되는 곳에 대한 성과 측정과 지원 방식의 차별화를 고민해 볼 수 있다.

16) 조직의 성과 결과에 따라 조직의 수입(이익)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수입(이익)이 등락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학(예: Hou, 2006), 경제학(예: Bloom et al., 2007), 경영학(예: DeFond & Park, 1997)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여타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의 결합분석에서 기금사업이 새롭지 않거나 여타 재원이 없는 경우가, 기금사업이 새롭고 여타 재원이 있는 경우보다 투자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기금 배분 개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2〉). 즉 기금사업의 환경이 경쟁적이거나 어려운 경우, 평가가 미흡한 자치단체가 기금을 배분받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투자계획 평가체계의 운영 측면에서, 지방재정공제회(투자계획평가단)와 평가대상 자치단체 간에 보다 객관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와 자치단체 간에는 외견상 특별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17]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투자계획평가단과 지자체의 관계는 외견상 비판적 감시 관계보다는 협력적·전략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운용하는 담당자들은 평가주체인 지방재정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설문문항 1-4), 소멸대응기금 운용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정보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설문문항 1-5)에 대하여 일관된 호의적 평가를 보인 데(〈표 V-4〉 내지 〈표 V-5〉)에 근거한다. 이는 그간 세 차례의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에 유용한 조언과 평가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하였기에 평가단의 권위를 존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평가 주체와 대상 간의 객관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투자계획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투자계획평가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나. 기금 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1) 광역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기금의 계정별로 구분하여 배분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계정으로, 투자계획서의 질을 평가하기보다 현재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의 비율 또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만든 배분 계수를 통해 배

17) 현재 행정안전부(지방재정공제회)는 평가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평가단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FGI 결과에서도 광역지원계정의 목적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적 재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광역 내 인구감소 지역의 비율에 따라 정액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기초계정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적절하다. 그러나 등급에 따라 동일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예산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등급별로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배분될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최하 등급의 예산만 확보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등급을 받는 지역별로 동일한 금액이 정액으로 배분되는 방식은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낮춘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이 160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기 위해 160억원에 맞춰 투자계획서를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배분체계를 기존 4등급(S·A·B·C)에서 2등급(우수·양호)으로 축소하고, 최소 배분액을 기존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다. 이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18] 그러나 이러한 배분체계 축소는 운영 과정에서 당초 제도 개편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도 개편은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예산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등급 체계로의 개편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심화시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의 질을 높이거나 중점사업의 발굴을 포기하고 최소 등급으로 72억원을 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FGI 결과, 지속해서 투자계획평가단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2등급 체계로 개편한 이후 우수 지역에 선정되기를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8)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 보도자료, 2024. 4. 2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8908, 검색일자: 2025. 4. 28.

늘어나고, 사업 계획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응답하였다. 2등급 체계로의 개편과 최소 배분액의 상향(64억원에서 72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반 교부금과 유사한 형태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다. 기금투자계획상 추진 방식과 수혜대상의 적절성

기금투자계획상 추진 방식과 수혜대상의 적절성은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기금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 사업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있는지, 기금 투자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1) 기금 목적과 지원 기간, 타 재원 연계 방식 및 관리 방식 측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기금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 지원 기간, 타 재원과의 연계 방식, 관리 방식을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에 관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급속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소멸을 고민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제·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FGI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지방소멸의 '해결'이 아닌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금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의 특징이 '마중물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원 기간과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지역활력타운, 지역혁신공모사업 등) 등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기간과 규모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의 연장·확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간의 중간 시점(예: 5년차)에 기금의 효율성(예: 집행실적), 효과성(예: 추세적 인구증가, 추세적 지역성장 및 활성화)을 점검하여 기금의 연장 및 확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이후까지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직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9]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마중물 재원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생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 주는 시작 재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 운용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 이후의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자체 재원 또는 민간 투자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여력이 낮아 스스로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다양한 국고보조 사업 등의 재원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대 특구 사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민간투자,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 등과 적극적으로 재원을 연계하도록 권고하는데, 한정된 재원하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재원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주로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되도록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타 재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중 하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RISE 사업은 대학을 지원해 청년들을 유입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패키지 방식의 재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금재원의 또다른 마중물 사례로서 ○○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촌에서의 (교육)유학에 필요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교육청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금 재원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더불어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재원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군은 기금 재원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교육 관련 정주여건을 조성하고(마중물 역할), 여타 재원을 통해 교육품질 개선에 활용하면서 지역 교육의 환경 및 품질

19) 행정안전부,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등-」, 보도자료, 2022. 2. 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0352 검색일자: 2025. 2. 13.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대응에 대응하고 있다.[20]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사례로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 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기업·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 지원하는 사업이다.[21]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패키지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핵심 사업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부 재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심의 재원 연계라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10년간 장기 지원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목표가 여타 재원보다 더욱 포괄적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우수 모델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일자리 지원을, 교육부와 대학에서는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농촌 인력 등을 협력·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방식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을 통해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운영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주체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1단(지역활력지원단), 3부(소멸기금관리부, 소멸기금운영부, 상생발전기금부) 중 소멸기금관리부와 소멸기금운영부가 있으며, 소멸기금 관련 정원은 총 12명(지자체 파견 8명, 공제회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FGI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평가 지원 및 사업 관리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기금 관리 주체가 개별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여건·

20) 해당 지자체는 2022년부터 연간 약 6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역교육청에 지원하여 왔고, 이후 별도의 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을 유치하여 2024년 현재 연간 60억원 규모의 지역에 특화된 종합적인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규모보다 커서 기금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21)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법무부는 지역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자원·역량·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 따라 맞춤형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을 중심으로 타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2] 행정안전부는 사전 컨설팅, 평가 후 평가 결과 환류 등을 도입해 기금 추진방향 제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FGI 결과, 평가위원들은 기금이 지역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등 사전 컨설팅 효과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기관 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FGI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사전 컨설팅이 지역의 특성과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 컨설팅의 방향이 지방소멸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자원, 특성, 인구 문제 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이 발굴·개발될 수 있도록 전환될 필요가 있다.

### 2) 사전 제반체계 구축,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유사중복성

첫째, 자치단체는 기금사업의 투자수요 예측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 제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는 투자수요의 예측에 대하여 대체로 수요조사는 실시하되,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담당자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문항 1-7, 〈표 V-8〉). 기금사업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75%는 객관적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지만, 나머지 25%는 자치단체장의 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설문문항 1-8 〈표 V-9〉). 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존의 재정사업과 차별화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역 주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요 예측과 우선순위 선정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멸대응기금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성과를 고려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다수(53.3%)는 해당 자치단체가 배분적 효율성을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또 고집행률 지역의 배분적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저집행률 지역보다 높았다(설문 3-3).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기금 사업의 생성에 노력을 들이거나(새로운 사업) 여타 재원이 없어 운용 환경이 어려운 지역은 배분적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설문 3-3과 여타 통계의 결합).

22) 기금과 여타 사업정책 간의 단순 연계를 넘어 기금이 중심이 되어 여타 사업정책 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연계를 제시하고, 그것이 지역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하며 성과 제고를 위해 환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금 사업은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조사에서는 유사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보다 다소 많았다(설문문항 1-9, 〈표 V-11〉).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시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허용하고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사중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중복성의 판단은 판단 시점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의 필요성(니즈)에 부합하는 사업이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경우 지역 수요와 거리가 먼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집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성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3) 지자체 필요 분야에의 기금 배분(배분적 효율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배분체계 또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지자체의 취약분야에 맞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도 평가과정에서 더 높은 등급, 즉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3] 사전적으로 예산 배분금액이 더 높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관심지역 지자체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취약분야에 더 부합하게 기금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취약분야-사업분야의 정합성이 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에서의 등급 결정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요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즉 배분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계획의 질적 개선이 실제 배분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현재의 미미한[24]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3) 본 사항은 실증분석 결과를 밝힌 것이다. 기금의 핵심 취지는 인구소멸 대응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것과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즉 강점을 살리는 것에만 투자하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은 기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예: Argent et al., 2013; Bijker et al., 2013)가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다.

24) 이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사항이다. 만약 향후 집행 기간이 길어지고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실증분석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가 현재 실증분석 결과보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 라. 기금 사업 분석

### 1) 기금 사업의 분야별 분석

총 9개의 분야인 교통, 보육, 노인의료, 기타, 교육, 주거, 복합, 산업·일자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전체 기금 사업들의 사업 분야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 사업의 24.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25]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기금 투입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일자리 분야가 23.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일자리 분야는 지역 경제 기반의 조성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강조된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클러스터 조성, 창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청년 인력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의 자립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주거(19.2%) 분야 역시 비교적 높은 사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Ⅳ-1] 분야별 사업의 비중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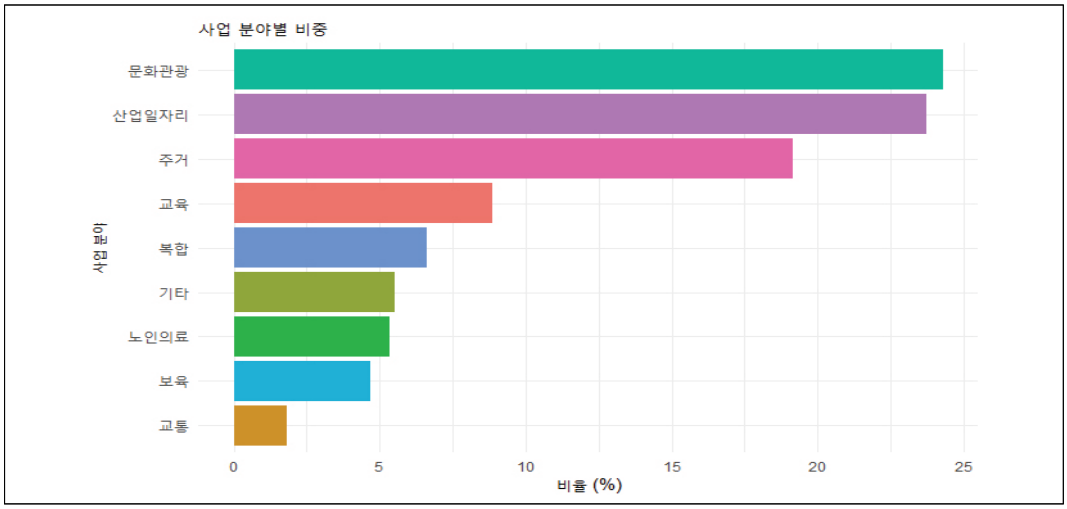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25) 분야별 사업의 비중=분야별 기금 사업의 수/전체 기금 사업의 수

또한 교육(8.8%), 복합(6.59%) 분야는 10% 아래의 비중을 보였다. 교육 분야는 특히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 도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복합 분야는 여러 분야의 사업이 결합된 형태로, 주로 지역 거점 복합센터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종합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타(5.52%), 노인의료(5.33%), 보육(4.69%), 교통(1.84%)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교통 분야는 전체 사업 중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 지역 내 교통 기반시설 확충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같은 교통 여건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우선시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타 분야는 특수한 목적이나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인의료 분야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제한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 분야 또한 출산율 제고 및 인구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비해 비중이 낮아 향후 이들 분야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금 사업의 분야별 분포는 지역 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 창출에 집중되는 반면, 일부 복지 및 생활기반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적 보완과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림 Ⅳ-2] 분야별 배분금액 비중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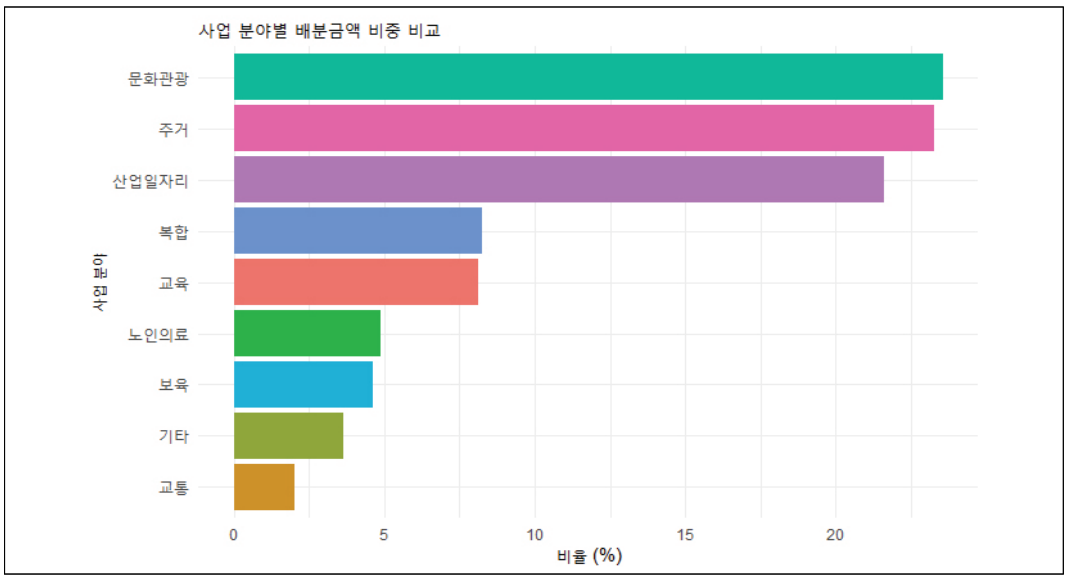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다음으로 기금 사업의 분야별 배분금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26] 전반적으로 사업 분야별 비중과 기금액 배정 비중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문화·관광 분야는 사업 수 비중(24.3%)과 사업비 비중(23.6%)이 거의 일치하여 비중과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일자리 부문의 경우에도 사업 수 비중(23.7%)과 사업비 비중(21.6%)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주거 분야는 사업 수 비중(19.2%)보다 사업비 비중(23.3%)이 더 높아 개별 사업당 평균 배정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 분야의 경우 사업 수 비중(1.84%)과 배정된 예산 비중(2.02%)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 분야별 사업의 집행률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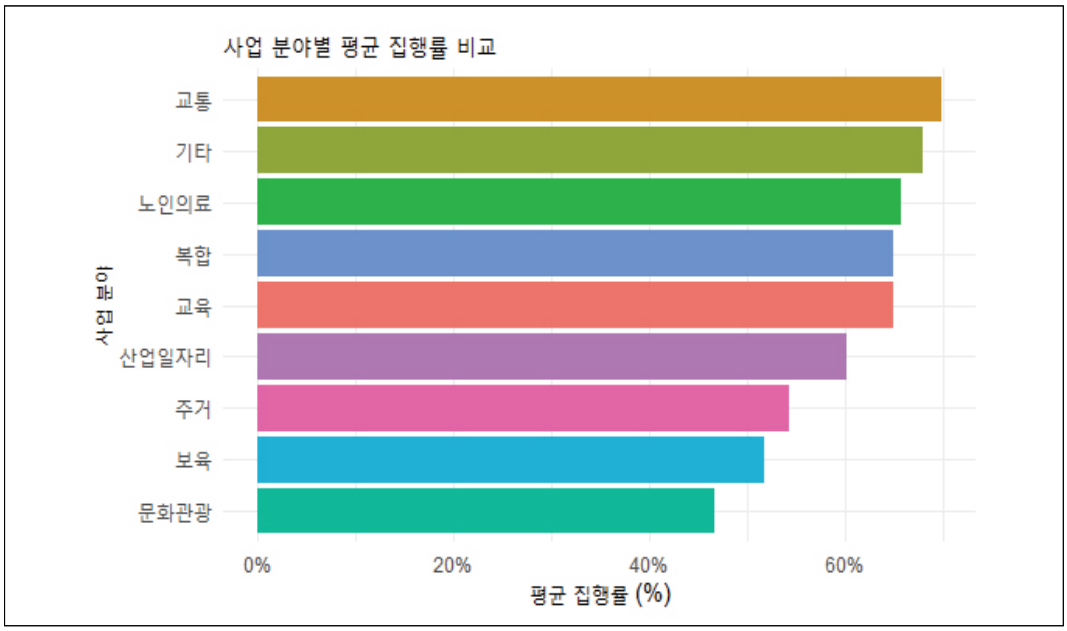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다음으로 분야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의 평균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 분야가 46.6%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교통 분야는 69.8%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사업 수와 집행률 간의 반비례 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각 사업 분

26) 분야별 사업의 배분금액 비중 = 분야별 기금 사업의 배분금액/전체 기금 사업의 배분금액

야의 특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27] 특히 문화·관광 분야는 전체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해당 분야의 사업들이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차이가 크거나, 행정 절차 등의 요소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교통 분야는 전체 사업 중 가장 낮은 2.21%의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집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반드시 높은 정책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의 특성과 집행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Ⅳ-2〉 기금 사업의 분야별 비중·기금액·집행률

(단위: %)

| 사업 분야 | 사업 분야별 비중 (비율) | 사업 분야별 기금액 배정 (비율) | 사업 분야별 집행률 |
|---|---|---|---|
| 문화·관광 | 24.3 | 23.6 | 46.6 |
| 산업·일자리 | 23.7 | 21.6 | 60.1 |
| 주거 | 19.2 | 23.3 | 54.2 |
| 교육 | 8.88 | 8.12 | 64.8 |
| 복합 | 6.59 | 8.26 | 64.8 |
| 기타 | 5.52 | 3.65 | 67.8 |
| 노인의료 | 5.33 | 4.89 | 65.6 |
| 보육 | 4.69 | 4.61 | 51.7 |
| 교통 | 1.84 | 2.02 | 69.8 |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그림 Ⅳ-4]와 같이 2022년, 2023년, 2024년의 연도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사업 분야별 구성은 전반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가 연도에 상관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점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적 전략에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7) 만약 사업 수와 집행률 간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면, 실제 집행률 평균은 사업 비중의 역순인 교통〉보육〉노인의료〉기타〉교육〉주거〉복합〉산업일자리〉문화관광 순서가 되어야 한다.

[그림 Ⅳ-4] 연도별 사업의 비중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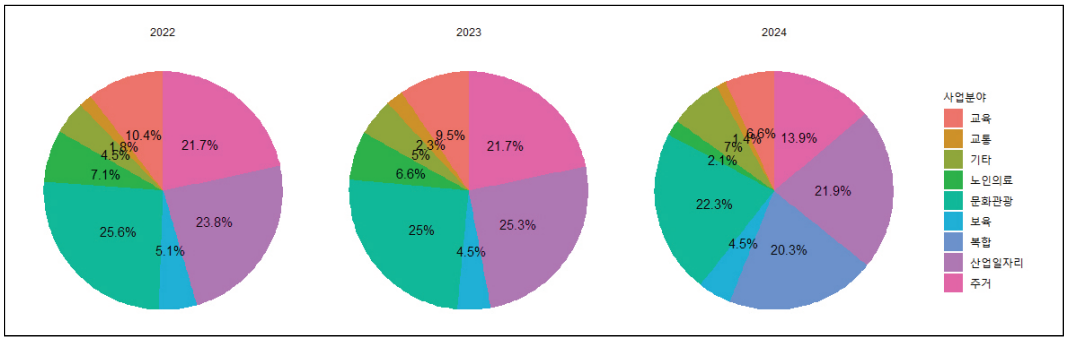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또한 [그림 Ⅳ-5]에서 15개 시·도별 기금 사업의 분야별 비중을 시각화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복합 분야가 높은 사업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보육, 복합, 주거 분야 순으로 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다른 시·도와 차별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주 여건을 안정화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복합 및 주거 분야의 높은 비중은 인구증가로 인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민의 만족도와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유사한 전략적 패턴을 보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특별한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금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Ⅳ-5] 시도별 기금사업 분야 비중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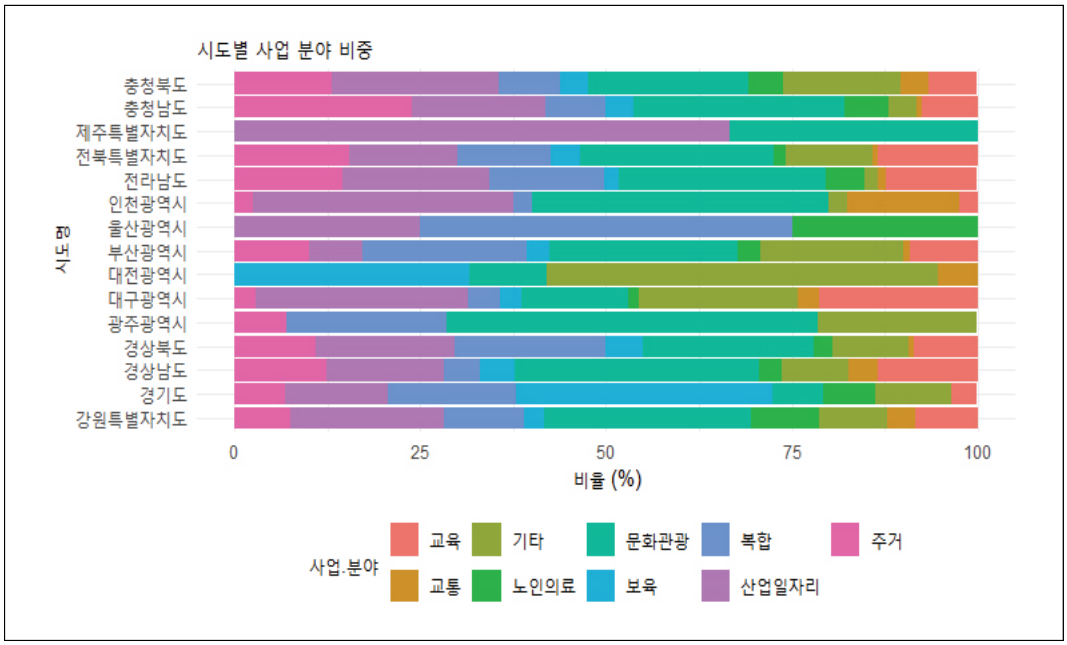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마지막으로 분야별 예시 사업들의 목록은 〈표 Ⅳ-3〉과 같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는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 '특색 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으로 체류인구 유입'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고 관광객과 체류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산업·일자리 분야는 '명품 로컬푸드 구독경제 실현',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농업기술을 결합하여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정 용어인 '생활인구' 개념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사업명에서 밝힌 '체류인구'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활인구 개념에 체류인구 개념이 포함되지만 생활인구와 체류인구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거주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빈집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청년 및 농업 근로자 등 지역 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 사업들은 주로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료 분야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분야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하고 통합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교통 분야는 교통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교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3〉 기금사업 분야별 예시

| 사업 분야 | 예시 기금 사업명 |
|---|---|
| 문화·관광 |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 |
| |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 |
| |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으로 체류인구 유입 |
| 산업·일자리 | 명품 로컬푸드 구독경제 실현 |
| |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
| | 농산물 유통 복합 가공센터 |
| 복합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
| | 청년복합공간 조성 및 운영 |
| | 가족형 워크빌리지 조성 |
| 주거 | 빈집활용 전통고택 조성사업 |
| | 청년 공공임대주택 만들기 |
| |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조성 |
| 교육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
| | 농산어촌유학생 작은학교 살리기 |
|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
| 기타 | 인구구조 변화대응 전략구상 |
| |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
| | 일상활력 공동체 회복 사업 |
| 노인의료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케어 |
| |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
| |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 |
| 보육 | 아이 꿈키움 공간 조성사업 |
| |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
| | 안심 보육을 위한 헬스&키즈드림센터 건립 |
| 교통 | 버스공영제 고도화로 소외없는 교통케어 |
| |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구축 |
| | 도시 간 교통허브 구축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 2) 기금 사업의 키워드 분석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단어 빈도를 기반으로 핵심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R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tidytext, tm, wordcloud2, stringr 패키지를 사용하여 기금 사업명에 포함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우선, 전체 연도에 걸쳐 모든 사업명을 대상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청년', '스마트팜', '워케이션'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기록하며 핵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청년' 키워드의 높은 빈도는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는 '스마트팜'과, 관광과 원격근무를 결합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업무 형태인 '워케이션'이 지방소멸대응 전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26.4%)을 차지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이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에서 '워케이션'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6] 기금 사업의 키워드 분석 시각화

| 전체 사업명 대상 워드 클라우드 | 문화·관광 분야 사업명 대상 워드 클라우드 |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대다수의 기금 사업들이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관광 분야 사업들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와 실제 집행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지방소멸대응책 중 하나로 등장한 생활인구 개념, 특히 '체류인구'(한 달 동안 3시간 이상 거주한 사람)[30]를 단기적으로 증가시키기에 문화·관광 분야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금 투자가 이 분야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시군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와 기금 배분의 불일치도 드러났다. 앞선 〈표 Ⅲ-1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 및 교육 인프라 부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금 사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표 Ⅲ-14〉에서 지방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교육 여건, 직업 기회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제 사업 분포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 전략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유지 및 유입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보다는 관광 활성화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으로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기금 사업명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근 정책 유행을 반영한 '스마트팜', '워케이션'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스마트팜과 워케이션과 같은 키워드는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생활방식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성 사업들이 지방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또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재 운용 방향은 지역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인구유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분야, 특히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

3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제2호: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로 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등장한 생활인구 개념, 특히 한 달 동안 3시간 이상 거주한 '체류인구'의 단기적 증가라는 목표와 맞물리면서 문화·관광 사업으로 기금 투자가 더욱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교통 인프라 부족, 교육 여건 미흡, 직업 기회 부족, 열악한 주거 환경과 같은 근본적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정책의 유행을 반영한 '스마트팜', '워케이션'과 같은 트렌드성 사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인구 유입이나 유지에 지속 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유행이나 일시적 트렌드에 기반한 사업들의 비중이 높을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장기적 효과성과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 및 인구 유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 V. 방법론별 상세 분석 내용

## 1. 설문조사 분석 내용

※ 공통 적용사항

□ 분석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및 광역 본청을 대상으로 함

□ 대상 지역을 아래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함
• (유형1)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광역 본청
• (유형2) 고(高)평가 결과 지역과 저(低)평가 결과 지역
  - 고평가 결과 지역: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중 2024년 투자계획평가에서 S, A등급을 받은 지역
  - 저평가 결과 지역: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중 2024년 투자계획평가에서 B, C등급을 받은 지역
• (유형3) 고(高)집행률 지역과 저(低)집행률 지역
  - 고집행률 지역: 지자체의 2024년 기금 사업의 평균 누적 집행률이 모든 지역의 평균인 36.41% 이상인 지역
  - 저집행률 지역: 지자체의 2024년 기금 사업의 평균 누적 집행률이 모든 지역의 평균인 36.41% 미만인 지역
• (유형4)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섬 지역: '섬지역기초단체장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27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충청남도(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전라북도(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울릉군), 경상남도(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평균 차이 및 t값
• 광역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차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평균의 차이, 고평가 결과 지역과 저평가 결과 지역 평균의 차이,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평균의 차이를 각각 분석함
• 각 평균 차이는 t값으로 분석함(* $p<0.1$ ** $p<0.05$, *** $p<0.01$)

□ 답변 항목의 점수화
• 각 답변 항목의 평균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최고 5점, 최저 1점으로 변환함
• 예를 들어, 답변 항목이 5개인 경우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변환하고, 답변 항목이 3개인 경우 5점, 3점, 1점으로 변환하며, 답변 항목이 2개인 경우 5점, 1점으로 변환함

## 가. 계획평가 결과

### 1) 적절성 평가

#### 가) 투자계획 평가체계(설문문항 1-1, 1-2, 1-3)

〈표 V-1〉에서 투자계획 평가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기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50.9%(매우 개선 필요 13.5%, 약간 개선 필요 37.4%)로, 현재 유지를 선호한 응답자(49.1%)보다 다소 많았다(평균 2.29). 한편 제반 유형 간 평균 차이(광역 본청 vs. 기초소계, 감소지역 vs. 관심지역, 고평가 지역 vs. 저평가 지역, 고집행률 지역 vs. 저집행률 지역, 섬 지역 vs. 육지 지역, 이하 생략)는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 설문문항 1-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준비가 미흡한 자치단체로 평가받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표 V-1〉 설문조사 결과-투자계획 평가(투자계획 평가 미흡 자치단체에의 기금 배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광역 본청]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매우 개선 필요(5점) | ② 약간 개선 필요(3점) | ③ 현재 유지 필요(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7 (15.6) | 18 (40.0) | 20 (44.4) | 2.42 | 0.223 (0.67) |
| 기초소계 | 385 (100.0) | 51 (13.2) | 143 (37.1) | 191 (49.6) | 2.27 | |
| 감소지역 | 334 (100.0) | 45 (13.5) | 120 (35.9) | 169 (50.6) | 2.26 | -0.115 (-0.54) |
| 관심지역 | 51 (100.0) | 6 (11.8) | 23 (45.1) | 22 (43.1) | 2.37 | |
| 합 계 | 430 (100.0) | 58 (13.5) | 161 (37.4) | 211 (49.1) | 2.29 | |

〈표 V-1〉의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매우 개선 필요(5점) | ② 약간 개선 필요(3점) | ③ 현재 유지 필요(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0 (14.9) | 30 (44.8) | 27 (40.3) | 2.49 | 0.266 (1.40)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41 (12.9) | 113 (35.5) | 164 (51.6) | 2.23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20 (14.2) | 47 (33.3) | 74 (52.5) | 2.23 | -0.081 (-0.56)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38 (13.1) | 114 (39.4) | 137 (47.4) | 2.31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8 (11.6) | 28 (40.6) | 33 (47.8) | 2.28 | 0.01 (0.02) |
| 육지 지역 | 316 (100.0) | 43 (13.6) | 115 (36.4) | 158 (50.0) | 2.27 | |

주: ① 투자계획 준비가 미흡한 자치단체는 기금 배분에서 배제하고, 투자계획 준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투자계획 준비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기금을 배분하되 그 규모는 지금보다 최소화하고, 투자계획 준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현재처럼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자금을 배분받는 것이 바람직함.

〈표 V-2〉에서 자치단체 간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약 63%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평균 3.53). 특히 고집행률 지역(평균 3.75)이 저집행률 지역(평균 3.42)보다 적절성을 높게 인식했다.

설문문항 1-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게 평가받은 자치단체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표 Ⅴ-2〉 설문조사 결과-투자계획 평가(자치단체 간 투자계획 평가 차이와 배분액 격차)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적절(5점) | ② 부적절(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29 (64.4) | 16 (35.6) | 3.58 | 0.053 (0.17) |
| 기초소계 | 385 (100.0) | 243 (63.1) | 142 (36.9) | 3.52 | |
| 감소지역 | 334 (100.0) | 210 (62.9) | 124 (37.1) | 3.51 | -0.073 (-0.25) |
| 관심지역 | 51 (100.0) | 33 (64.7) | 18 (35.3) | 3.59 | |
| 합 계 | 430 (100.0) | 272 (63.3) | 158 (36.7) | 3.53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41 (61.2) | 26 (38.8) | 3.45 | -0.093 (-0.36)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202 (63.5) | 116 (36.5) | 3.54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97 (68.8) | 44 (31.2) | 3.75 | **0.330 (1.67)***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175 (60.6) | 114 (39.4) | 3.42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44 (63.8) | 25 (36.2) | 3.55 | 0.032 (0.12) |
| 육지 지역 | 316 (100.0) | 199 (63.0) | 117 (37.0) | 3.52 | |

주: ① 투자계획의 우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적절함. ② 투자계획의 우수 여부에 따라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배분액 격차는 지금보다 커져야 함).

〈표 Ⅴ-3〉에서 자치단체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금 배분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약 2/3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평균 2.36). 저평가 결과 지역에서의 부정적 답변의 강도(평균 2.22)가 고평가 지역(평균 2.73)보다 유의하게 강하였다(평균 차이 0.511, $p<0.05$). 이를 통해 저평가 지역 응답자는 해당 지역의 특징이 투자계획 평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문항 1-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결과, 등급(S/A/B/C 또는 우수/양호)이 동일하면 자치단체의 인구, 산업, 지리적 특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표 Ⅴ-3〉 설문조사 결과-투자계획 평가(자치단체별 특징 고려하지 않은 기금 배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적절(5점) | ② 부적절(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20 (44.4) | 25 (55.6) | 2.78 | 0.469 (1.57) |
| 기초소계 | 385 (100.0) | 126 (32.7) | 259 (67.3) | 2.31 | |
| 감소지역 | 334 (100.0) | 111 (33.2) | 223 (66.8) | 2.33 | 0.153 (0.54) |
| 관심지역 | 51 (100.0) | 15 (29.4) | 36 (70.6) | 2.18 | |
| 합 계 | 430 (100.0) | 146 (34.0) | 284 (66.0) | 2.36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29 (43.3) | 38 (56.7) | 2.73 | **0.511 (2.03)****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97 (30.5) | 221 (69.5) | 2.22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49 (34.8) | 92 (65.2) | 2.39 | 0.048 (0.24)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97 (33.6) | 192 (66.4) | 2.34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8 (26.1) | 51 (73.9) | 2.04 | -0.324 (-1.3) |
| 육지 지역 | 316 (100.0) | 108 (34.2) | 208 (65.8) | 2.37 | |

주: ① 자치단체의 제반 특징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적절함. ② 자치단체의 제반 특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하여 적절하지 않음(자치단체의 제반 특징의 차이를 고려하여 배분해야 함).

나) 주무기관 운영(설문문항 1-4, 1-5)

〈표 V-4〉에서 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보통과 대체로 전문성·공정성의 중간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평균 3.68). 다만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광역본청(평균 3.89)이 기초자치단체(평균 3.65)보다 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평균 차이 0.234, p〈0.05), 고평가 결과 지역(평균 3.81)이 저평가 결과 지역(3.62)보다 높게 평가하며(평균 차이 0.183, p〈0.10), 고집행률 지역(평균 3.77)이 저집행률 지역(평균 3.63)보다 높게 평가하였다(평균 차이 0.140, p〈0.10).

설문문항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음)의 투자계획평가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행했나요?

**〈표 V-4〉 설문조사 결과-주무기관 운영(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5 (11.1) | 30 (66.7) | 10 (22.2) | 0 (0.0) | 0 (0.0) | 3.89 | **0.234 (2.03)**** |
| 기초소계 | 385 (100.0) | 46 (11.9) | 175 (45.5) | 152 (39.5) | 9 (2.3) | 3 (0.8) | 3.65 | |
| 감소 지역 | 334 (100.0) | 39 (11.7) | 153 (45.8) | 130 (38.9) | 9 (2.7) | 3 (0.9) | 3.65 | -0.059 (-0.53) |
| 관심 지역 | 51 (100.0) | 7 (13.7) | 22 (43.1) | 22 (43.1) | 0 (0.0) | 0 (0.0) | 3.71 | |
| 합 계 | 430 (100.0) | 51 (11.9) | 205 (47.7) | 162 (37.7) | 9 (2.1) | 3 (0.7) | 3.68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0 (14.9) | 35 (52.2) | 21 (31.3) | 1 (1.5) | 0 (0.0) | 3.81 | **0.183 (1.83)***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36 (11.3) | 140 (44.0) | 131 (41.2) | 8 (2.5) | 3 (0.9) | 3.62 | |

〈표 V-4〉의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21 (14.9) | 68 (48.2) | 51 (36.2) | 1 (0.7) | 0 (0.0) | 3.77 | **0.140 (1.86)***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30 (10.4) | 137 (47.4) | 111 (38.4) | 8 (2.8) | 3 (1.0) | 3.63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0 (14.5) | 28 (40.6) | 29 (42.0) | 0 (0.0) | 2 (2.9) | 3.64 | -0.021 (-0.21) |
| 육지 지역 | 316 (100.0) | 36 (11.4) | 147 (46.5) | 123 (38.9) | 9 (2.8) | 1 (0.3) | 3.66 | |

주: ① 매우 전문적·공정하였음. ② 대체로 전문적·공정하였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 ⑤ 매우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

〈표 V-5〉에서 공제회의 자치단체에의 유용한 정보·서비스 지원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러함과 보통의 중간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평균 3.44).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 간 대체로 평균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다만 고집행률 지역(평균 3.53)이 저집행률 지역(3.39)보다 높게 평가되어(평균 차이 0.141, p〈0.10), 집행률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공제회의 유용한 정보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문항 1-5. 선생님 또는 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음)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서 평가 및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았나요?

〈표 V-5〉 설문조사 결과-주무기관 운영(공제회의 자치단체에의 유용한 정보·서비스 지원 여부)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3 (6.7) | 22 (48.9) | 16 (35.6) | 4 (8.9) | 0 (0.0) | 3.53 | 0.107 (0.83) |
| 기초소계 | 385 (100.0) | 40 (10.4) | 122 (31.7) | 191 (49.6) | 26 (6.8) | 6 (1.6) | 3.43 | |
| 감소 지역 | 334 (100.0) | 36 (10.8) | 104 (31.1) | 166 (49.7) | 23 (6.9) | 5 (1.5) | 3.43 | 0.016 (0.13) |
| 관심 지역 | 51 (100.0) | 4 (7.8) | 18 (35.3) | 25 (49.0) | 3 (5.9) | 1 (2.0) | 3.41 | |
| 합 계 | 430 (100.0) | 43 (10.0) | 144 (33.5) | 207 (48.1) | 30 (7.0) | 6 (1.4) | 3.44 | |

〈표 V-5〉의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8 (11.9) | 21 (31.3) | 33 (49.3) | 4 (6.0) | 1 (1.5) | 3.46 | 0.044 (0.40)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32 (10.1) | 101 (31.8) | 158 (49.7) | 22 (6.9) | 5 (1.6) | 3.42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8 (12.8) | 54 (38.3) | 55 (39.0) | 13 (9.2) | 1 (0.7) | 3.53 | **0.141 (1.68)***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25 (8.7) | 90 (31.1) | 152 (52.6) | 17 (5.9) | 5 (1.7) | 3.39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9 (13.0) | 21 (30.4) | 32 (46.4) | 5 (7.2) | 2 (2.9) | 3.43 | 0.012 (0.10) |
| 육지 지역 | 316 (100.0) | 31 (9.8) | 101 (32.0) | 159 (50.3) | 21 (6.6) | 4 (1.3) | 3.42 | |

주: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이때 각 답변 항목별 점수는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이며 평균은 각 답변 항목별 점수의 평균임.

다) 계획의 충실성(설문문항 1-6)

〈표 V-6〉에서 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준비의 충실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에서 준비했다고 답하였다(평균 3.76). 다만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고집행률 지역(평균 3.85)이 저집행률 지역(3.72)보다 높게 평가하며(평균 차이 0.131, $p<0.10$), 섬 지역(평균 3.88)이 육지 지역(평균 3.71)보다 높게 평가하였다(평균 차이 0.172, $p<0.10$).

> 설문문항 1-6. 자치단체가 준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의 내용(효과성, 중장기계획, 사업관리 등을 말하며, 투자계획서의 가독성 또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요?

〈표 Ⅴ-6〉 설문조사 결과-계획의 충실성(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의 적절성)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6 (13.3) | 31 (68.9) | 7 (15.6) | 1 (2.2) | 0 (0.0) | 3.93 | 0.190 (1.57) |
| 기초소계 | 385 (100.0) | 63 (16.4) | 177 (46.0) | 130 (33.8) | 13 (3.4) | 2 (0.5) | 3.74 | |
| 감소 지역 | 334 (100.0) | 54 (16.2) | 155 (46.4) | 112 (33.5) | 11 (3.3) | 2 (0.6) | 3.74 | -0.002 (-0.02) |
| 관심 지역 | 51 (100.0) | 9 (17.6) | 22 (43.1) | 18 (35.3) | 2 (3.9) | 0 (0.0) | 3.75 | |
| 합 계 | 430 (100.0) | 69 (16.0) | 208 (48.4) | 137 (31.9) | 14 (3.3) | 2 (0.5) | 3.76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6 (23.9) | 28 (41.8) | 21 (31.3) | 2 (3.0) | 0 (0.0) | 3.87 | 0.149 (1.41)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47 (14.8) | 149 (46.9) | 109 (34.3) | 11 (3.5) | 2 (0.6) | 3.72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25 (17.7) | 74 (52.5) | 39 (27.7) | 2 (1.4) | 1 (0.7) | 3.85 | **0.131 (1.66)***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44 (15.2) | 134 (46.4) | 98 (33.9) | 12 (4.2) | 1 (0.3) | 3.72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9 (27.5) | 27 (39.1) | 20 (29.0) | 2 (2.9) | 1 (1.4) | 3.88 | **0.172 (1.65)*** |
| 육지 지역 | 316 (100.0) | 44 (13.9) | 150 (47.5) | 110 (34.8) | 11 (3.5) | 1 (0.3) | 3.71 | |

주: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표 Ⅴ-7〉에서 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자들은 모두 그 원인이 자치단체 내부에 있다고 응답하였다(100%). 즉 그 원인을 자치단체 외부에서 찾는 응답자는 없었다(0%). 또한 응답자들은 사업발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다(50.0%). 이러한 결과는 자치단체 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하였다.

설문문항 1-6-1. 위에서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대체로 미흡) 또는 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미흡)을 선택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자치단체가 준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내용(효과성, 중장기계획, 사업관리 등을 말하며, 투자계획서의 가독성 또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적절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V-7〉 설문조사 결과-계획의 충실성(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가 부적절한 경우 그 원인)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원인: 자치단체 외부 | 원인: 자치단체 내부 | ② 사업발굴 어려움 | ③ 자치단체장 이해부족 | ④ 인력/전문성 부족 | ⑤ 원인: 기타 |
|---|---|---|---|---|---|---|---|
| 광역본청 | 1<br>(100.0) | 0<br>(0.0) | 1<br>(100.0) | 0<br>(0.0) | 0<br>(0.0) | 0<br>(0.0) | 1<br>(100.0) |
| 기초소계 | 15<br>(100.0) | 0<br>(0.0) | 15<br>(100.0) | 8<br>(53.3) | 0<br>(0.0) | 3<br>(20.0) | 4<br>(26.7) |
| 감소 지역 | 13<br>(100.0) | 0<br>(0.0) | 13<br>(100.0) | 8<br>(61.5) | 0<br>(0.0) | 3<br>(23.1) | 2<br>(15.4) |
| 관심 지역 | 2<br>(100.0) | 0<br>(0.0) | 2<br>(100.0) | 0<br>(0.0) | 0<br>(0.0) | 0<br>(0.0) | 2<br>(100.0) |
| 합 계 | 16<br>(100.0) | 0<br>(0.0) | 16<br>(100.0) | 8<br>(50.0) | 0<br>(0.0) | 3<br>(18.8) | 5<br>(31.3)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2<br>(100.0) | 0<br>(0.0) | 2<br>(100.0) | 2<br>(100.0) | 0<br>(0.0) | 0<br>(0.0) | 0<br>(0.0) |
| 저평가 결과 지역 | 13<br>(100.0) | 0<br>(0.0) | 13<br>(100.0) | 6<br>(46.2) | 0<br>(0.0) | 3<br>(23.1) | 4<br>(30.8)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3<br>(100.0) | 0<br>(0.0) | 3<br>(100.0) | 1<br>(33.3) | 0<br>(0.0) | 1<br>(33.3) | 1<br>(33.3) |
| 저집행률 지역 | 13<br>(100.0) | 0<br>(0.0) | 13<br>(100.0) | 7<br>(53.8) | 0<br>(0.0) | 2<br>(15.4) | 4<br>(30.8)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섬 지역 | 3<br>(100.0) | 0<br>(0.0) | 3<br>(100.0) | 2<br>(66.7) | 0<br>(0.0) | 0<br>(0.0) | 1<br>(33.3) |
| 육지 지역 | 12<br>(100.0) | 0<br>(0.0) | 12<br>(100.0) | 6<br>(50.0) | 0<br>(0.0) | 3<br>(25.0) | 3<br>(25.0) |

주: ① 중앙부처·주무기관이 제시한 관련 지침의 부실. ②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의 어려움. ③ 자치단체장의 이해 부족. ④ 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또는 전문성 부족. ⑤ 기타(직접 기재)

라) 투자수요 예측(설문문항 1-7)

〈표 V-8〉에서 자치단체의 투자수요 예측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수요조사는 실시하되(외부 전문가가 아닌), 담당자가 엄정한 수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답하였다(평균 2.99). 섬 지역(평균 3.23)은 육지 지역(평균 2.92)보다 수요조사를 보다 엄정히 실시하였다(평균 차이 0.311, p〈0.05). 이는 섬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1] 여타 자치단체 유형에는 평균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설문문항 1-7. 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수혜대상, 사업규모, 지원조건 등의 관련사항을 설계할 때 수혜대상의 범위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지요? 실시했다면 누가 어느정도로 실시했는지요?

〈표 V-8〉 설문조사 결과-수요 예측(실시 여부, 실시 주체, 실시 정도)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5 (11.1) | 10 (22.2) | 15 (33.3) | 14 (31.1) | 1 (2.2) | 3.09 | 0.112 (0.66) |
| 기초소계 | 385 (100.0) | 46 (11.9) | 67 (17.4) | 117 (30.4) | 142 (36.9) | 13 (3.4) | 2.98 | |
| 감소 지역 | 334 (100.0) | 40 (12.0) | 61 (18.3) | 101 (30.2) | 123 (36.8) | 9 (2.7) | 3.00 | 0.176 (1.09) |
| 관심 지역 | 51 (100.0) | 6 (11.8) | 6 (11.8) | 16 (31.4) | 19 (37.3) | 4 (7.8) | 2.82 | |
| 합 계 | 430 (100.0) | 51 (11.9) | 77 (17.9) | 132 (30.7) | 156 (36.3) | 14 (3.3) | 2.99 | |

31) 섬 지역은 섬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분석하고 섬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조사하였다(김태완 외, 2022). 이 과정에서 각 섬 지역에서 기초 인프라 시설의 완비 여부 등 주민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섬 주민, 방문객을 대상으로 희망 산업을 확인하기 위한 수요조사 설문을 지역주민 1,500명, 방문객 500명에게 실시하였다(육수현 외, 2022). 예를 들어 기초 인프라 시설의 대부분이 인구 2만명 이상 거주하는 대규모 섬에 편중되어 있고, 기초 인프라 시설이 없는 섬이 다수임. 섬 내에 의료시설이 없는 섬은 전체 유인섬의 62.3%, 보육·교육시설이 없는 섬은 76.3%, 복지시설이 없는 섬은 43.3%, 문화·여가시설이 없는 섬은 65.1%였다(김태완 외, 2022).

〈표 V-8〉의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0 (14.9) | 11 (16.4) | 22 (32.8) | 22 (32.8) | 2 (3.0) | 3.07 | 0.119 (0.82)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36 (11.3) | 56 (17.6) | 95 (29.9) | 120 (37.7) | 11 (3.5) | 2.96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8 (12.8) | 23 (16.3) | 44 (31.2) | 50 (35.5) | 6 (4.3) | 2.98 | -0.014 (-0.13)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33 (11.4) | 54 (18.7) | 88 (30.4) | 106 (36.7) | 8 (2.8) | 2.99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1 (15.9) | 16 (23.2) | 21 (30.4) | 20 (29.0) | 1 (1.4) | 3.23 | **0.311 (2.19)**** |
| 육지 지역 | 316 (100.0) | 35 (11.1) | 51 (16.1) | 96 (30.4) | 122 (38.6) | 12 (3.8) | 2.92 | |

주: ① 실시함 & 외부 전문가가 엄정히 예측함. ② 실시함 & 외부 전문가가 간편 예측함. ③ 실시함 & 담당자가 엄정히 예측함. ④ 실시함 & 담당자가 간편 예측함. ⑤ 실시하지 않음.

### 마)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설문문항 1-8)

〈표 V-9〉에서 기금사업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에 대해 응답자들 중 74.9%는 자치단체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 반면, 25.1%는 자치단체장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고 답하였다(평균 4.00). 한편 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설문문항 1-8. 자치단체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각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래 중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요?

〈표 Ⅴ-9〉 설문조사 결과-우선순위 선정기준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자치단체 객관성(5점) | ② 자치단체장 주관성(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37 (82.2) | 8 (17.8) | 4.29 | 0.328 (1.20) |
| 기초소계 | 385 (100.0) | 285 (74.0) | 100 (26.0) | 3.96 | |
| 감소지역 | 334 (100.0) | 243 (72.8) | 91 (27.2) | 3.91 | -0.384 (-1.46) |
| 관심지역 | 51 (100.0) | 42 (82.4) | 9 (17.6) | 4.29 | |
| 합 계 | 430 (100.0) | 322 (74.9) | 108 (25.1) | 4.00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54 (80.6) | 13 (19.4) | 4.22 | 0.318 (1.35)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231 (72.6) | 87 (27.4) | 3.91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09 (77.3) | 32 (22.7) | 4.09 | 0.144 (0.81)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213 (73.7) | 76 (26.3) | 3.95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54 (78.3) | 15 (21.7) | 4.13 | 0.209 (0.88) |
| 육지 지역 | 316 (100.0) | 231 (73.1) | 85 (26.9) | 3.92 | |

주: ① 자치단체의 객관적인 지방소멸대응 관점. ② 자치단체장의 주관적인 관심도.

### 2) 효율성 평가(설문문항 3-3, 1-9)

#### 가) 배분적 효율성(설문문항 3-3)

〈표 Ⅴ-10〉에서 응답자의 53.3%(매우 그러함 10.5%, 대체로 그러함 42.8%)는 배분적 효율성을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평균 3.55). 한편 고집행률 지역의 배분적 효율성에 대한 인식(평균 3.71)이 저집행률 지역(평균 3.48)보다 높았다(평균 차이 0.232, $p<0.01$).

설문문항 3-3.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간 기금 배분(포트폴리오)은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요? 예를들어, 지방소멸대응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기금 사업에 많은 자금이 배분되고 지방소멸대응에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기금 사업에 적은 자금이 배분되었는지요?

〈표 V-10〉 설문조사 결과-배분적 효율성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7 (15.6) | 22 (48.9) | 13 (28.9) | 3 (6.7) | 0 (0.0) | 3.73 | 0.201 (1.57) |
| 기초소계 | 385 (100.0) | 38 (9.9) | 162 (42.1) | 159 (41.3) | 19 (4.9) | 7 (1.8) | 3.53 | |
| 감소 지역 | 334 (100.0) | 33 (9.9) | 141 (42.2) | 140 (41.9) | 15 (4.5) | 5 (1.5) | 3.54 | 0.094 (0.77) |
| 관심 지역 | 51 (100.0) | 5 (9.8) | 21 (41.2) | 19 (37.3) | 4 (7.8) | 2 (3.9) | 3.45 | |
| 합 계 | 430 (100.0) | 45 (10.5) | 184 (42.8) | 172 (40.0) | 22 (5.1) | 7 (1.6) | 3.55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7 (10.4) | 30 (44.8) | 25 (37.3) | 4 (6.0) | 1 (1.5) | 3.57 | 0.042 (0.39)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31 (9.7) | 132 (41.5) | 134 (42.1) | 15 (4.7) | 6 (1.9) | 3.53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8 (12.8) | 73 (51.8) | 43 (30.5) | 5 (3.5) | 2 (1.4) | 3.71 | **0.232 (2.80)*** **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27 (9.3) | 111 (38.4) | 129 (44.6) | 17 (5.9) | 5 (1.7) | 3.48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3 (18.8) | 27 (39.1) | 23 (33.3) | 5 (7.2) | 1 (1.4) | 3.67 | 0.164 (1.52) |
| 육지 지역 | 316 (100.0) | 25 (7.9) | 135 (42.7) | 136 (43.0) | 14 (4.4) | 6 (1.9) | 3.50 | |

주: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나) 유사중복성(설문문항 1-9)

〈표 V-11〉에서 기금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해 유사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자(52.3%)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7.7%)보다 다소 많았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시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는 별견되지 않았다.

> 설문문항 1-9.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사업목표 또는 사업대상 또는 정책수단 측면에서 유사한 여타 사업이 선생님 소속 자치단체 내 존재하는지요?

**〈표 V-11〉 설문조사 결과-유사중복성**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부존재(5점) | ② 존재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24 (53.3) | 21 (46.7) | 3.13 | 0.253 (0.80) |
| 기초소계 | 385 (100.0) | 181 (47.0) | 204 (53.0) | 2.88 | |
| 감소지역 | 334 (100.0) | 155 (46.4) | 179 (53.6) | 2.86 | -0.183 (-0.61) |
| 관심지역 | 51 (100.0) | 26 (51.0) | 25 (49.0) | 3.04 | |
| 합 계 | 430 (100.0) | 205 (47.7) | 225 (52.3) | 2.91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27 (40.3) | 40 (59.7) | 2.61 | -0.325 (-0.121)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154 (48.4) | 164 (51.6) | 2.94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70 (49.6) | 71 (50.4) | 2.99 | 0.117 (0.57)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135 (46.7) | 154 (53.3) | 2.87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섬 지역 | 69 (100.0) | 35 (50.7) | 34 (49.3) | 3.03 | 0.181 (0.68) |
| 육지 지역 | 316 (100.0) | 146 (46.2) | 170 (53.8) | 2.85 | |

주: ① 존재하지 않음. ② 존재함.

## 나. 과정평가 결과(설문문항 2-1부터 2-4까지)

### 1) 적절성 평가(설문문항 2-1, 2-2)

#### 가) 집행 자원의 충분성(설문문항 2-1)

〈표 V-12〉에서 기금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한 자원(예산, 인력, 장비) 집행의 충분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평균 3.72). 이러한 현상은 고집행률 지역(평균 3.85)이 저집행률 지역(평균 3.65)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평균 차이 0.201, $p<0.05$).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러한 응답이 도출된 것은 자치단체가 인력, 장비 등의 자원을 충분히 집행했지만 예산 집행률 제고는 쉽지 않았거나, 예산 집행률은 낮지만 자치단체 담당자 입장에서 인력, 장비 집행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려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설문문항 2-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해 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은 충분히 집행되었는지요?

〈표 V-12〉 설문조사 결과-자원 집행의 충분성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9 (20.0) | 22 (48.9) | 13 (28.9) | 1 (2.2) | 0 (0.0) | 3.87 | 0.168 (1.21) |
| 기초소계 | 385 (100.0) | 71 (18.4) | 164 (42.6) | 118 (30.6) | 27 (7.0) | 5 (1.3) | 3.70 | |
| 감소지역 | 334 (100.0) | 59 (17.7) | 134 (40.1) | 113 (33.8) | 24 (7.2) | 4 (1.2) | 3.66 | **-0.302 (-2.26)**** |
| 관심지역 | 51 (100.0) | 12 (23.5) | 30 (58.8) | 5 (9.8) | 3 (5.9) | 1 (2.0) | 3.96 | |
| 합 계 | 430 (100.0) | 80 (18.6) | 186 (43.3) | 131 (30.5) | 28 (6.5) | 5 (1.2) | 3.72 | |

〈표 V-12〉의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0 (14.9) | 25 (37.3) | 25 (37.3) | 7 (10.4) | 0 (0.0) | 3.57 | -0.159 (-1.33)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61 (19.2) | 139 (43.7) | 93 (29.2) | 20 (6.3) | 5 (1.6) | 3.73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30 (21.3) | 67 (47.5) | 37 (26.2) | 7 (5.0) | 0 (0.0) | 3.85 | **0.201 (2.22)****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50 (17.3) | 119 (41.2) | 94 (32.5) | 21 (7.3) | 5 (1.7) | 3.65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6 (23.2) | 30 (43.5) | 14 (20.3) | 7 (10.1) | 2 (2.9) | 3.74 | 0.049 (0.41) |
| 육지 지역 | 316 (100.0) | 55 (17.4) | 134 (42.4) | 104 (32.9) | 20 (6.3) | 3 (0.9) | 3.69 | |

주: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표 V-13〉에서 기금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한 자원(예산, 인력, 장비)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69.7%)는 자치단체 내부, 특히 자치단체 인력/전문성의 부족을 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자치단체 유형 중 대부분의 유형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섬 지역은 이행절차 지연(33.3%), 기타(33.3%), 자치단체 인력/전문성의 부족(22.2%) 순으로 답하였다.

설문문항 2-1-1. 위에서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대체로 미흡) 또는 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미흡)을 선택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한 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V-13〉 설문조사 결과-자원 집행의 충분성(불충분한 경우 그 원인)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원인: 자치단체 내부 | ① 이행절차 지연 | ② 자치단체장 의지부족 | ③ 인력/ 전문성 부족 | ④ 원인: 자치단체 외부 | ⑤ 원인: 기타[1)] |
|---|---|---|---|---|---|---|---|
| 광역본청 | 1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100.0) | 0 (0.0) |
| 기초소계 | 32 (100.0) | 23 (71.9) | 9 (28.1) | 0 (0.0) | 14 (43.8) | 2 (6.3) | 7 (21.9) |
| 감소 지역 | 28 (100.0) | 20 (71.4) | 9 (32.1) | 0 (0.0) | 11 (39.3) | 2 (7.1) | 6 (21.4) |
| 관심 지역 | 4 (100.0) | 3 (75.0) | 0 (0.0) | 0 (0.0) | 3 (75.0) | 0 (0.0) | 1 (25.0) |
| 합 계 | 33 (100.0) | 23 (69.7) | 9 (27.3) | 0 (0.0) | 14 (42.4) | 3 (9.1) | 7 (21.2)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7 (100.0) | 5 (71.4) | 1 (14.3) | 0 (0.0) | 4 (57.1) | 0 (0.0) | 2 (28.6) |
| 저평가 결과 지역 | 25 (100.0) | 18 (72.0) | 8 (32.0) | 0 (0.0) | 10 (40.0) | 2 (8.0) | 5 (20.0)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7 (100.0) | 5 (71.4) | 1 (14.3) | 0 (0.0) | 4 (57.1) | 1 (14.3) | 1 (14.3) |
| 저집행률 지역 | 26 (100.0) | 18 (69.2) | 8 (30.8) | 0 (0.0) | 10 (38.5) | 2 (7.7) | 6 (23.1)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섬 지역 | 9 (100.0) | 5 (55.6) | 3 (33.3) | 0 (0.0) | 2 (22.2) | 1 (11.1) | 3 (33.3) |
| 육지 지역 | 23 (100.0) | 18 (78.3) | 6 (26.1) | 0 (0.0) | 12 (52.2) | 1 (4.3) | 4 (17.4) |

주: 1. ① 자치단체가 마련한 투자 계획 이행절차 지연. ② 자치단체장의 이행 의지 부족. ③ 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또는 전문성 부족. ④ 중앙부처·주무기관의 지원 지연. ⑤ 기타(직접 기재)

1) 설문조사에서 원인에 대해 일부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① 자치단체의 인력 준비 부족 및 준비없는 사업 진행. 인력부족

② 기금은 주로 본래 업무외의 추가 업무가 많은데 인력여건 열악

③ 투자계획 이행절차 지연, 지지체 인력과 전문성 부족, 행정기관 지원 지연

④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하지만 급조/날조한 사업계획서로 인해 사업 추진 시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 사업계획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함.(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비 편성)

나)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 환류(설문문항 2-2)

〈표 V-14〉에서 전달체계 경로에서의 의견 수집과 환류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60.0%)는 의견을 수집하고 사업관리에 대체로 환류한다고 답하였다(평균 3.25). 이러한 현상은 여타 자치단체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 설문문항 2-2. 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전달경로에 있는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반 의견(만족도 측정 포함)을 수집하는지요? 수집한다면 해당 사항을 사업관리에 얼마나 환류하여 반영하고 있는지요?

**〈표 V-14〉 설문조사 결과-전달체계 경로의 의견 환류**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3.7점) | ③ (2.4점) | ④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5 (11.1) | 24 (53.3) | 11 (24.4) | 5 (11.1) | 3.23 | -0.019 (-0.11) |
| 기초소계 | 385 (100.0) | 40 (10.4) | 234 (60.8) | 55 (14.3) | 56 (14.5) | 3.26 | |
| 감소지역 | 334 (100.0) | 33 (9.9) | 210 (62.9) | 46 (13.8) | 45 (13.5) | 3.29 | 0.124 (0.79) |
| 관심지역 | 51 (100.0) | 7 (13.7) | 24 (47.1) | 9 (17.6) | 11 (21.6) | 3.07 | |
| 합 계 | 430 (100.0) | 45 (10.5) | 258 (60.0) | 66 (15.3) | 61 (14.2) | 3.25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9 (13.4) | 36 (53.7) | 15 (22.4) | 7 (10.4) | 3.30 | 0.075 (0.53)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31 (9.7) | 198 (62.3) | 40 (12.6) | 49 (15.4) | 3.25 | |

〈표 V-14〉의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3.7점) | ③ (2.4점) | ④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6 (11.3) | 89 (63.1) | 23 (16.3) | 13 (9.2) | 3.39 | 0.160 (1.49)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29 (10.0) | 169 (58.5) | 43 (14.9) | 48 (16.6) | 3.19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7 (10.1) | 43 (62.3) | 13 (18.8) | 6 (8.7) | 3.35 | 0.08 (0.58) |
| 육지 지역 | 316 (100.0) | 33 (10.4) | 191 (60.4) | 42 (13.3) | 50 (15.8) | 3.24 | |

주: 1. ① 수집함 &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환류함. ② 수집함 & 사업관리에 대체로 환류함. ③ 수집함 & 사업관리에 대체로 환류하지 않음. ④ 수집하지 않음.
2. 문항 성격상 선지가 4개인 상태에서 최고 5점, 최저 1점으로 배분하기에 5점, 3.7점, 2.4점, 1점으로 구분함.

### 2) 효과성 평가(설문문항 2-3, 2-4)

#### 가) 정책목표(효과) 경로 분석(설문문항 2-3)

〈표 V-15〉에서 기금사업의 정책목표(효과)의 경로 분석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충분히 검토하거나(18.6%) 대체로 검토하는(75.8%) 등 검토하였다고 답변(94.4%)하였다(평균 3.26). 한편 인구감소지역(평균 3.20)이 관심지역(평균 3.55)보다 분석의 정도가 약하였고(평균 차이 -0.351, $p<0.05$), 고집행률 지역(평균 3.37)이 저집행률 지역(3.21)보다 분석의 정도가 강하였다(평균 차이 0.161, $p<0.10$).

> 설문문항 2-3. 선생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담당자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당초 계획한 정책목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로, 방식 및 조건 등을 어느정도 검토(분석)하였는지요?

〈표 V-15〉 설문조사 결과-정책목표(효과) 경로 분석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충분히 검토(5점) | ② 대체로 검토(3점) | ③ 미검토(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12 (26.7) | 30 (66.7) | 3 (6.7) | 3.40 | 0.156 (1.04) |
| 기초소계 | 385 (100.0) | 68 (17.7) | 296 (76.9) | 21 (5.5) | 3.24 | |
| 감소지역 | 334 (100.0) | 51 (15.3) | 265 (79.3) | 18 (5.4) | 3.20 | **-0.351 (-2.53)**** |
| 관심지역 | 51 (100.0) | 17 (33.3) | 31 (60.8) | 3 (5.9) | 3.55 | |
| 합 계 | 430 (100.0) | 80 (18.6) | 326 (75.8) | 24 (5.6) | 3.26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6 (23.9) | 48 (71.6) | 3 (4.5) | 3.39 | 0.174 (1.39)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52 (16.4) | 248 (78.0) | 18 (5.7) | 3.21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30 (21.3) | 107 (75.9) | 4 (2.8) | 3.37 | **0.161 (1.66)***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50 (17.3) | 219 (75.8) | 20 (6.9) | 3.21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5 (21.7) | 50 (72.5) | 4 (5.8) | 3.32 | 0.091 (0.74) |
| 육지 지역 | 316 (100.0) | 53 (16.8) | 246 (77.8) | 17 (5.4) | 3.23 | |

주: ① 대외적으로 발표·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토함. ② 자체 학습 등의 방법으로 대체로 검토함. ③ 검토하지 않음.

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슈 원천(설문문항 2-4)

〈표 V-16〉에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슈의 파악 여부 및 원천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파악하고 있고(89.1%), 그 원인으로 자치단체(내부)(51.9%),[32] 주민(26.3%) 순으로 답하였다. 한편 고평가 결과 지역은 응답자의 82.1%가 문제·이슈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저평가 결과 지역은 고평가 결과 지역보다 높은 90.3%의 응답자가 문제·이슈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평균 차이 -0.285, $p<0.10$).

> 설문문항 2-4. 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또는 이슈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파악하고 있다면 해당 문제점 또는 이슈가 발생하는 원천은 대체로 선생님이 소속한 자치단체, 소속 자치단체 주민, 여타 기관(중앙정부 등) 중 어디인지요?

〈표 V-16〉 설문조사 결과-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슈 원천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파악함(5점) | | | | ② 파악하지 않음(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 | 소계 | 자치단체 | 주민 | 기타 | | | |
| 광역본청 | 45 (100.0) | 41 (91.1) | 28 (62.2) | 10 (22.2) | 3 (6.7) | 4 (8.9) | 4.64 | -0.118 (-0.91) |
| 기초소계 | 385 (100.0) | 342 (88.8) | 195 (50.6) | 103 (26.8) | 44 (11.4) | 43 (11.2) | 4.55 | |
| 감소지역 | 334 (100.0) | 298 (89.2) | 171 (51.2) | 92 (27.5) | 35 (10.5) | 36 (10.8) | 4.57 | -0.054 (-0.43) |
| 관심지역 | 51 (100.0) | 44 (86.3) | 24 (47.1) | 11 (21.6) | 9 (17.6) | 7 (13.7) | 4.45 | |
| 합 계 | 430 (100.0) | 383 (89.1) | 223 (51.9) | 113 (26.3) | 47 (10.9) | 47 (10.9) | 4.56 | |

32) 자치단체 내부 원인의 사례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대내외 환경분석, 상위계획이나 법령과의 부합성, 전년도 평가 결과의 체계적 반영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집행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사업성과로 연계시키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관련 조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정책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는 경우, 자치단체 내부 추진체계에서 역할과 추진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부서별로 시의적절한 집행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목격된다(자치단체 담당자와의 인터뷰 활용).

〈표 V-16〉의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파악함(5점) | | | | ② 파악하지 않음(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 | 소계 | 자치단체 | 주민 | 기타 | |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55 (82.1) | 39 (58.2) | 10 (14.9) | 6 (9.0) | 12 (17.9) | 4.28 | **-0.285 (-2.57)****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287 (90.3) | 156 (49.1) | 93 (29.2) | 38 (11.9) | 31 (9.7) | 4.61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25 (88.7) | 71 (50.4) | 39 (27.7) | 15 (10.6) | 16 (11.3) | 4.55 | 0.006 (0.07)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258 (89.3) | 152 (52.6) | 74 (25.6) | 32 (11.1) | 31 (10.7) | 4.57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63 (91.3) | 34 (49.3) | 23 (33.3) | 6 (8.7) | 6 (8.7) | 4.65 | 0.044 (0.40) |
| 육지 지역 | 316 (100.0) | 279 (88.3) | 161 (50.9) | 80 (25.3) | 38 (12.0) | 37 (11.7) | 4.53 | |

## 다. 결과평가 결과(설문문항 3-1부터 3-4까지)

### 1) 효과성 평가(설문문항 3-1, 3-2)

#### 가) 지방소멸대응 정책목표의 효과(설문문항 3-1)

〈표 V-17〉에서 지방소멸대응 정책목표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1.2%는 기금 사업 자체의 목표(예: ○○시설 건립)를 달성했다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59.3%는 해당 사업이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했다(매우 기여 13.3%, 대체로 기여 46.0%)고 답변했다(평균 3.19). 한편, 섬 지역에서의 정책목표의 효과성(평균 3.57)이 육지 지역(평균 3.14)보다 높았다(평균 차이 0.429, $p<0.05$).

설문문항 3-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표(예: ○○시설 건립)을 달성하였나요? 그렇다면 해당 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표를 넘어 지방소멸대응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표 V-17〉 설문조사 결과-지방소멸대응 정책목표의 효과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5 (11.1) | 18 (40.0) | 2 (4.4) | 10 (22.2) | 10 (22.2) | 2.96 | -0.257 (-1.19) |
| 기초소계 | 385 (100.0) | 52 (13.5) | 180 (46.8) | 22 (5.7) | 60 (15.6) | 71 (18.4) | 3.21 | |
| 감소지역 | 334 (100.0) | 46 (13.8) | 152 (45.5) | 20 (6.0) | 54 (16.2) | 62 (18.6) | 3.20 | -0.116 (-0.57) |
| 관심지역 | 51 (100.0) | 6 (11.8) | 28 (54.9) | 2 (3.9) | 6 (11.8) | 9 (17.6) | 3.31 | |
| 합 계 | 430 (100.0) | 57 (13.3) | 198 (46.0) | 24 (5.6) | 70 (16.3) | 81 (18.8) | 3.19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4 (20.9) | 23 (34.3) | 7 (10.4) | 11 (16.4) | 12 (17.9) | 3.24 | 0.031 (0.17)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38 (11.9) | 157 (49.4) | 15 (4.7) | 49 (15.4) | 59 (18.6) | 3.21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8 (12.8) | 73 (51.8) | 7 (5.0) | 23 (16.3) | 20 (14.2) | 3.33 | 0.209 (1.48)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39 (13.5) | 125 (43.3) | 17 (5.9) | 47 (16.3) | 61 (21.1) | 3.12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8 (26.1) | 31 (44.9) | 3 (4.3) | 6 (8.7) | 11 (15.9) | 3.57 | **0.429 (2.38)**** |
| 육지 지역 | 316 (100.0) | 34 (10.8) | 149 (47.2) | 19 (6.0) | 54 (17.1) | 60 (19.0) | 3.14 | |

주: ①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매우 기여함. ②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대체로 기여함. ③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하지 않음. ④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의 기여 여부를 알수 없음. ⑤ 사업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나) 의도하지 않은 효과(설문문항 3-2)

〈표 V-18〉에서 응답자의 76.5%는 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자치단체 유형 모두에서 유사하였다.

> 설문문항 3-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의도하지 않은 (좋은/나쁜) 효과를 발생한 적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해당 비의도 효과가 무엇인지 예시를 괄호 안에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V-18〉 설문조사 결과-의도하지 않은 효과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미발생 | ② 좋은 비의도 효과 발생 | ③ 나쁜 비의도 효과 발생 |
|---|---|---|---|---|
| 광역본청 | 45 (100.0) | 34 (75.6) | 9 (20.0) | 2 (4.4) |
| 기초소계 | 385 (100.0) | 295 (76.6) | 75 (19.5) | 15 (3.9) |
| 감소지역 | 334 (100.0) | 254 (76.0) | 67 (20.1) | 13 (3.9) |
| 관심지역 | 51 (100.0) | 41 (80.4) | 8 (15.7) | 2 (3.9) |
| 합 계 | 430 (100.0) | 329 (76.5) | 84 (19.5) | 17 (4.0)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49 (73.1) | 16 (23.9) | 2 (3.0)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246 (77.4) | 59 (18.6) | 13 (4.1)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104 (73.8) | 31 (22.0) | 6 (4.3)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225 (77.9) | 53 (18.3) | 11 (3.8)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섬 지역 | 69 (100.0) | 50 (72.5) | 17 (24.6) | 2 (2.9) |
| 육지 지역 | 316 (100.0) | 245 (77.5) | 58 (18.4) | 13 (4.1) |

주: ① 비의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② 좋은 비의도 효과가 발생한 적이 있음. ③ 나쁜 비의도 효과가 발생한 적이 있음.

### 2) 효율성 평가(설문문항 3-4)

#### 가) 기술적 효율성(설문문항 3-4)

〈표 V-19〉에서 응답자의 72.1%(매우 그러함 13.3%, 대체로 그러함 58.8)는 기술적 효율성을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평균 3.80). 한편 자치단체 유형 간 평균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 설문문항 3-4.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의 여타 사업에 비해 지방소멸대응 측면에서 얼마나 양호/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표 V-19〉 설문조사 결과-기술적 효율성

| 구분 | 응답자 수 (비중) | ① (5점) | ② (4점) |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45 (100.0) | 8 (17.8) | 27 (60.0) | 10 (22.2) | 0 (0.0) | 0 (0.0) | 3.96 | 0.179 (1.49) |
| 기초소계 | 385 (100.0) | 49 (12.7) | 226 (58.7) | 93 (24.2) | 9 (2.3) | 8 (2.1) | 3.78 | |
| 감소 지역 | 334 (100.0) | 38 (11.4) | 201 (60.2) | 84 (25.1) | 8 (2.4) | 3 (0.9) | 3.79 | 0.082 (0.70) |
| 관심 지역 | 51 (100.0) | 11 (21.6) | 25 (49.0) | 9 (17.6) | 1 (2.0) | 5 (9.8) | 3.71 | |
| 합 계 | 430 (100.0) | 57 (13.3) | 253 (58.8) | 103 (24.0) | 9 (2.1) | 8 (1.9) | 3.80 | |
|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 | | | | | | | | |
| 고평가 결과 지역 | 67 (100.0) | 13 (19.4) | 39 (58.2) | 12 (17.9) | 1 (1.5) | 2 (3.0) | 3.90 | 0.144 (1.38) |
| 저평가 결과 지역 | 318 (100.0) | 36 (11.3) | 187 (58.8) | 81 (25.5) | 8 (2.5) | 6 (1.9) | 3.75 | |
| [고집행률 지역과 저집행률 지역] | | | | | | | | |
| 고집행률 지역 | 141 (100.0) | 23 (16.3) | 84 (59.6) | 30 (21.3) | 2 (1.4) | 2 (1.4) | 3.88 | 0.125 (1.60) |
| 저집행률 지역 | 289 (100.0) | 34 (11.8) | 169 (58.5) | 73 (25.3) | 7 (2.4) | 6 (2.1) | 3.75 | |
| [섬 지역과 육지 지역] | | | | | | | | |
| 섬 지역 | 69 (100.0) | 13 (18.8) | 37 (53.6) | 16 (23.2) | 2 (2.9) | 1 (1.4) | 3.86 | 0.096 (0.93) |
| 육지 지역 | 316 (100.0) | 36 (11.4) | 189 (59.8) | 77 (24.4) | 7 (2.2) | 7 (2.2) | 3.76 | |

주: ① 매우 양호함. ② 대체로 양호함. ③ 차이가 거의 없음. ④ 대체로 미흡함. ⑤ 매우 미흡함.

## 라. 설문조사 결과와 여타 통계와의 결합 평가

### 1) 여타 통계 개요

본 통계는 설문조사 관련 통계가 아니다. 본 통계는 자치단체의 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각 사업의 12가지 특징을 구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수집되었다(사업 단위). 설문조사 결과와 결합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기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여타 통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자치단체 사업 담당자가 제시한 사업 692개, 2022년 및 2023년 기금은 2023년 말 기준, 2024년 기금은 2024년 6월 말 기준)

#### 가) 사업 분야

기금 사업이 투자되는 분야는 문화관광(24.3%) 〉 산업일자리(17.1%) 〉 복합(15.8%) 〉 주거(12.3%) 〉 기타(12.3%)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개수 기준).

〈표 Ⅴ-20〉 여타 통계 개요-사업 분야

| 구분 | 개수 (비중) | 교육 | 교통 | 노인 의료 | 문화 관광 | 보육 | 산업 일자리 | 주거 | 복합 | 기타 |
|---|---|---|---|---|---|---|---|---|---|---|
| 광역본청 | 163 (100.0) | 5 (3.1) | 3 (1.8) | 11 (6.7) | 34 (20.9) | 4 (2.5) | 26 (16.0) | 19 (11.7) | 34 (20.9) | 27 (16.6) |
| 기초소계 | 529 (100.0) | 56 (10.6) | 6 (1.1) | 23 (4.3) | 134 (25.3) | 19 (3.6) | 92 (17.4) | 66 (12.5) | 75 (14.2) | 58 (11.0) |
| 감소지역 | 484 (100.0) | 52 (10.7) | 5 (1.0) | 21 (4.3) | 124 (25.6) | 15 (3.1) | 91 (18.8) | 66 (13.6) | 55 (11.4) | 55 (11.4) |
| 관심지역 | 45 (100.0) | 4 (8.9) | 1 (2.2) | 2 (4.4) | 10 (22.2) | 4 (8.9) | 1 (2.2) | 0 (0.0) | 20 (44.4) | 3 (6.7) |
| 합계 | 692 (100.0) | 61 (8.8) | 9 (1.3) | 34 (4.9) | 168 (24.3) | 23 (3.3) | 118 (17.1) | 85 (12.3) | 109 (15.8) | 85 (12.3) |

주: (  )는 비중

나) 사업별 추진체계(있음=1, 없음=0)[33]

사업별 추진체계가 있는 사업(71.0%)이 없는 사업(29.0%)의 2배를 초과한다. 광역본청의 기금사업이 사업별 추진체계를 갖춘 정도(83.4%)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사업(67.1%)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표 V-21〉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추진체계

| 구분 | 개수 | 있음 (=1) | 없음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163 (100.0) | 136 (83.4) | 27 (16.6) | 0.83 | **0.163 (4.06)*** ** |
| 기초소계 | 529 (100.0) | 355 (67.1) | 174 (32.9) | 0.64 | |
| 감소지역 | 484 (100.0) | 328 (67.8) | 156 (32.2) | 0.68 | 0.078 (1.06) |
| 관심지역 | 45 (100.0) | 27 (60.0) | 18 (40.0) | 0.60 | |
| 합계 | 692 (100.0) | 491 (71.0) | 201 (29.0) | 0.74 | |

다) 사업별 외부네트워크체계(있음=1, 없음=0)[34]

사업별 외부네트워크체계가 없는 사업(60.7%)이 있는 사업(39.3%)을 초과한다. 그러나 광역본청은 사업별 외부네트워크체계가 있는 사업(51.5%)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기초소계는 없는 사업(64.5%)이 과반수를 차지한다(차이는 유의함).

33) 있음: 개별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나 내·외부 참여기관 등 참여주체를 명시하고 주체별 역할분담 및 담당 업무와 회의 등 운영 현황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 사업 추진체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단순 부서 나열이나 조직도는 사업별 추진체계 아님). 없음: 위 있음 경우 외의 모든 경우(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

34) 있음: 개별사업에 대하여 내부 행정조직 이외에 외부기관,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조직 등 참여자 내역과 역할, 운영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만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단순 위수탁 기관이나 외부 기관의 나열 등은 사업별 외부네트워크에서 제외). 없음: 위 있음 경우 외의 모든 경우(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

〈표 Ⅴ-22〉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외부네트워크체계

| 구분 | 개수 | 있음 (=1) | 없음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163 (100.0) | 84 (51.5) | 79 (48.5) | 0.52 | **0.160 (3.69)*** ** |
| 기초소계 | 529 (100.0) | 188 (35.5) | 341 (64.5) | 0.41 | |
| 감소지역 | 484 (100.0) | 167 (34.5) | 317 (65.5) | 0.35 | -0.122 (-1.63) |
| 관심지역 | 45 (100.0) | 21 (46.7) | 24 (53.3) | 0.47 | |
| 합계 | 692 (100.0) | 272 (39.3) | 420 (60.7) | 0.46 | |

라) 사업별 주민참여체계(있음=1, 없음=0)[35]

사업별 주민참여체계가 없는 사업(82.8%)이 있는 사업(17.2%)의 약 5배에 육박한다. 광역본청과 기초소계 간 평균 차이와 기초소계 내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표 Ⅴ-23〉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주민참여체계

| 구분 | 개수 | 있음 (=1) | 없음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163 (100.0) | 27 (16.6) | 136 (83.4) | 0.17 | -0.008 (-0.24) |
| 기초소계 | 529 (100.0) | 92 (17.4) | 437 (82.6) | 0.18 | |
| 감소지역 | 484 (100.0) | 84 (17.4) | 400 (82.6) | 0.17 | -0.004 (-0.07) |
| 관심지역 | 45 (100.0) | 8 (17.8) | 37 (82.2) | 0.18 | |
| 합계 | 692 (100.0) | 119 (17.2) | 573 (82.8) | 0.17 | |

35) 있음: 기금사업 계획,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한 추진체계에 주민참여가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한 경우에만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설명회, 설문조사 등은 사업별 주민참여체계에서 제외). 없음: 위 있음 경우 외의 모든 경우(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

마)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진행 완료=1, 여타=0)[36]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을 완료한 사업의 비중(44.7%)은 진행 중/미진행 등 그렇지 않은 사업(55.3%)보다 작다. 한편 광역본청의 진행 완료 실적(33.7%)이 기초소계(48%)보다 유의하게 작다. 또한 감소지역의 진행 완료 실적(46.9%)이 관심지역(60%)보다 유의하게 작다.

〈표 Ⅴ-24〉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실적

| 구분 | 개수 | 진행 완료 (=1) | 여타 소계(=0) | |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 | | | 진행 중 | 미진행 | | |
| 광역본청 | 163 (100.0) | 55 (33.7) | 108 (66.3) | 105 (64.4) | 3 (1.8) | 0.34 | **-0.143 (-3.22)**** |
| 기초소계 | 529 (100.0) | 254 (48.0) | 275 (52.0) | 259 (49.0) | 16 (3.0) | 0.53 | |
| 감소지역 | 484 (100.0) | 227 (46.9) | 257 (53.1) | 242 (50.0) | 15 (3.1) | 0.6 | **0.131 (1.68)*** |
| 관심지역 | 45 (100.0) | 27 (60.0) | 18 (40.0) | 17 (37.8) | 1 (2.2) | 0.47 | |
| 합계 | 692 (100.0) | 309 (44.7) | 383 (55.3) | 364 (52.6) | 19 (2.7) | 0.53 | |

바) 사업별 우선순위(상=1, 하=0)[37]

기금 사업 담당자 중 자기 사업의 우선순위가 중간 이하 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61.8%)가 중간 이상 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38.2%)보다 많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본청, 기초소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6) 진행 완료: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의견수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 절차가 모두 추진 완료된 경우. 진행 중: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의견수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 절차가 모두 추진 중인 경우. 미진행: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의견수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 절차 중 하나라도 진행되지 못한 경우(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

37) 본 심층평가 연구팀이 아래와 같이 안내한 것에 대해 각 자치단체 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율 판단함. 우선순위: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 중 지방소멸대응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본청 또는 시군 중 작성자가 해당되는 곳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세부사업 중 예: 10개면 1부터 10까지 표시(중복 없음). 해당 조직(본청 또는 시군) 전체 관점의 우선순위임(공무원 개인의 주관적/정치적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아님).

〈표 Ⅴ-25〉 여타 통계 개요-사업별 우선순위

| 구분 | | 개수 | 상(=1) | 하(=0) |
|---|---|---|---|---|
| 광역본청 | | 163<br>(100.0) | 78<br>(47.9) | 85<br>(52.1) |
| 기초소계 | | 529<br>(100.0) | 186<br>(35.2) | 343<br>(64.8) |
| | 감소지역 | 484<br>(100.0) | 174<br>(36.0) | 310<br>(64.0) |
| | 관심지역 | 45<br>(100.0) | 12<br>(26.7) | 33<br>(73.3) |
| 합계 | | 692<br>(100.0) | 264<br>(38.2) | 428<br>(61.8) |

주: '상'은 개별 기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해당 지자체의 전체 기금 사업 중 상위 50% 안쪽인 경우, '하'는 우선순위가 상위 50% 이하 100%까지인 경우(기금 사업 담당자의 자체 판단임).

사) 기금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움의 정도(새로움=1, 새롭지 않음=0)[38]

기금 사업이 지역 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완전히 새로움/어느정도 새로움) 사업이라는 경우(87%)가 새롭지 않은 경우(13%)보다 약 6.7배 많다. 이러한 경향은 광역본청(새로움 95.1%)이 기초소계(새로움 84.5%)보다 유의하게 강하다.

〈표 Ⅴ-26〉 여타 통계 개요-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움의 정도

| 구분 | | 개수 | 새로움(=1) | | | 새롭지않음<br>(=0) | 평균 | 평균 차이<br>(t값) |
|---|---|---|---|---|---|---|---|---|
| | | | | 완전히<br>새로움 | 어느정도<br>새로움 | | | |
| 광역본청 | | 163<br>(100.0) | 155<br>(95.1) | 16<br>(9.8) | 139<br>(85.3) | 8<br>(4.9) | 0.95 | **0.106**<br>**(3.54)*** ** |
| 기초소계 | | 529<br>(100.0) | 447<br>(84.5) | 67<br>(18.3) | 350<br>(66.2) | 82<br>(15.5) | 0.81 | |
| | 감소지역 | 484<br>(100.0) | 412<br>(85.1) | 64<br>(19.4) | 318<br>(65.7) | 72<br>(14.9) | 0.85 | 0.074<br>(1.30) |
| | 관심지역 | 45<br>(100.0) | 35<br>(77.8) | 3<br>(6.7) | 32<br>(71.1) | 10<br>(22.2) | 0.78 | |
| 합계 | | 692<br>(100.0) | 602<br>(87.0) | 113<br>(16.3) | 489<br>(70.7) | 90<br>(13.0) | 0.88 | |

38) 본 심층평가 연구팀이 다음과 같이 안내한 것에 대해 각 자치단체 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율 판단함. 사업의 목적, 수혜대상, 집행방식 등에서 기존 지역 내 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특별히 새롭지 않음/어느 정도 새로움/완전히 새로움).

아) 주요 수혜대상 주민 연령별 구분(구분함=1, 구분 안 함=0)[39]

기금 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업(61.3%)이 구분하는 사업(38.7%)보다 많다. 이러한 경향은 광역본청(구분 안 함 66.9%)이 기초소계(구분 안 함 59.5%)보다 유의하게 강하다.

〈표 V-27〉 여타 통계 개요-주요 수혜대상 주민 연령별 구분

| 구분 | 개수 | 구분함 (=1) | 구분 안 함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163 (100.0) | 54 (33.1) | 109 (66.9) | 0.33 | **-0.073 (-1.68)*** |
| 기초소계 | 529 (100.0) | 214 (40.5) | 315 (59.5) | 0.41 | |
| 감소지역 | 484 (100.0) | 195 (40.3) | 289 (59.7) | 0.40 | -0.019 (-0.25) |
| 관심지역 | 45 (100.0) | 19 (42.2) | 26 (57.8) | 0.42 | |
| 합계 | 692 (100.0) | 268 (38.7) | 424 (61.3) | 0.37 | |

자) 주요 수혜대상 주민 등록·비등록 구분(구분함=1, 구분 안 함=0)[40]

기금 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의 주민을 등록인(토착주민)/등록인(이주민)/비등록인(체류자)으로 구분하지 않는 사업(55.6%)이 구분하는 사업(44.4%)보다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광역본청(구분 안 함 72.4%)이 기초소계(구분 안 함 50.5%)보다 유의하게 강하고, 감소지역(구분 안 함 52.3%)이 관심지역(구분 안 함 31.1%)보다 유의하게 강하다.

39) 본 심층평가 연구팀이 다음과 같이 안내한 것에 대해 각 자치단체 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율 판단함. 세부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 유소년(0~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연령 구분 없음.

40) 본 심층평가 연구팀이 다음과 같이 안내한 것에 대해 각 자치단체 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율 판단함. 세부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를 선택: 여성, 남성, 성별 구분 없음.

〈표 Ⅴ-28〉 여타 통계 개요-주요 수혜대상 주민 등록·비등록 구분

| 구분 | 개수 | 구분함(=1) | | | | 구분 안 함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 | | 등록인 (토착주민) | 등록인 (이주민) | 비등록인 (체류자) | | | |
| 광역본청 | 163 (100.0) | 45 (27.6) | 17 (10.4) | 12 (7.4) | 16 (9.8) | 118 (72.4) | 0.28 | **-0.219 (-5.01)*** ** |
| 기초소계 | 529 (100.0) | 262 (49.5) | 139 (26.3) | 54 (10.2) | 69 (13.0) | 267 (50.5) | 0.58 | |
| 감소지역 | 484 (100.0) | 231 (47.7) | 117 (24.2) | 54 (11.2) | 60 (12.4) | 253 (52.3) | 0.48 | **-0.212 (-2.73)** ** |
| 관심지역 | 45 (100.0) | 31 (68.9) | 22 (48.9) | 0 (0.0) | 9 (20.0) | 14 (31.1) | 0.69 | |
| 합계 | 692 (100.0) | 307 (44.4) | 156 (22.5) | 66 (9.5) | 85 (12.3) | 385 (55.6) | 0.43 | |

차) 사업이력(기금에서 신규 선정된 사업=1, 기금 이전에 운용되었던 사업=0)[41]

기금에서 신규 선정된 사업이 대다수 93.8%인 반면, 기금 이전에 운용되었던 사업이 소수인 6.2% 존재하고 있다. 광역본청의 신규 사업 비중(98.2%)이 기초소계의 신규 사업 비중(92.4%)보다 유의하게 높다.

〈표 Ⅴ-29〉 여타 통계 개요-사업이력

| 구분 | 개수 | 신규 사업 (=1) | 이전 계속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163 (100.0) | 160 (98.2) | 3 (1.8) | 0.98 | **0.057 (2.66)** ** |
| 기초소계 | 529 (100.0) | 489 (92.4) | 40 (7.6) | 0.93 | |
| 감소지역 | 484 (100.0) | 447 (92.4) | 37 (7.6) | 0.92 | -0.009 (-0.24) |
| 관심지역 | 45 (100.0) | 42 (93.3) | 3 (6.7) | 0.93 | |
| 합계 | 692 (100.0) | 649 (93.8) | 43 (6.2) | 0.96 | |

41) 본 심층평가 연구팀이 다음과 같이 안내한 것에 대해 각 자치단체 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율 판단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로 신규 선정된 사업(과거에 지역 내 유사한 사업이 여타 재원으로 운용되지 않은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전에 운용되었던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되면서 변화 또는 연장된 사업(과거에 지역 내 유사한 사업이 여타 재원으로 운용된 경우).

카) 기금 이외의 여타 재원(있음=1, 없음=0)[42]

기금 이외의 여타 재원이 없는 사업의 비중(66.3%)이 있는 사업의 비중(33.7%)보다 약 2배 높았다. 기초소계의 비중(여타 재원 없음 68.9%)이 광역본청의 비중(여타 재원 없음 57.1%)보다 유의하게 높다.

〈표 V-30〉 여타 통계 개요-기금 이외의 여타 재원

| 구분 | 개수 | 있음 (=1) | 없음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163 (100.0) | 70 (42.9) | 93 (57.1) | 0.43 | **0.121 (2.88)**** |
| 기초소계 | 529 (100.0) | 163 (30.8) | 366 (69.2) | 0.31 | |
| 감소지역 | 484 (100.0) | 149 (30.8) | 335 (69.2) | 0.31 | -0.003 (-0.05) |
| 관심지역 | 45 (100.0) | 14 (31.1) | 31 (68.9) | 0.31 | |
| 합계 | 692 (100.0) | 233 (33.7) | 459 (66.3) | 0.37 | |

타) 기금 사업에 연계된 사업(있음=1, 없음=0)[43]

기금 사업에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경우는 47.8%로 전체 사업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소계에서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경우(50.7%)가 광역본청의 경우(38.7%)보다 유의하게 높다.

42) 본 심층평가 연구팀이 다음과 같이 안내한 것에 대해 각 자치단체 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율 판단함. 여타 재원 있음: 본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외의 여타 재원(예: 국비-특별교부세, 지방비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기타-특별교부금)이 있는 경우. 여타 재원 없음: 그렇지 않은 경우

43) 본 심층평가 연구팀이 다음과 같이 안내한 것에 대해 각 자치단체 기금 사업 담당자가 자율 판단함. 연계 사업 있음: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연계 사업 없음: 그렇지 않은 경우.

〈표 V-31〉 여타 통계 개요-연계 사업

| 구분 | 개수 | 있음 (=1) | 없음 (=0) |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 광역본청 | 163 (100.0) | 63 (38.7) | 100 (61.3) | 0.39 | **-0.120 (-2.69)**** |
| 기초소계 | 529 (100.0) | 268 (50.7) | 261 (49.3) | 0.40 | |
| 감소지역 | 484 (100.0) | 256 (52.9) | 228 (47.1) | 0.53 | **0.262 (3.40)***** |
| 관심지역 | 45 (100.0) | 12 (26.7) | 33 (73.3) | 0.27 | |
| 합계 | 692 (100.0) | 331 (47.8) | 361 (52.2) | 0.39 | |

### 2) 설문조사 결과와 여타 통계와의 결합 평가 결과-계획평가 결과

설문조사 결과와의 결합에 사용되는 여타 통계는 설문조사 문항과의 관련성 및 설문조사 문항의 세부 특징의 부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2가지 통계 중 다음의 8가지 통계(4개*2유형)를 사용한다. 또한 다음의 2개 유형 중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1개 유형을 사용한다.

- 사업의 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
- 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

**[적절성 평가]**

가) 투자계획 평가체계(설문문항 1-1, 1-2, 1-3)와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1-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준비가 미흡한 자치단체로 평가받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설문 1-1)과 새로움의 정도 통계의 결합에서 기금 사업이 새롭지 않음(평균 2.60)이 새로운 경우(평균 2.27)보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 이러한 차이는 감소지역(새롭지 않음 평균 2.53 vs. 새로움 평균 2.20) 및 기초소계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기금 사업이 새롭지 않은 경우 투자계획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타 재원 통계와의 결합에서 여타 재원이 없음(평균 2.44)이 여타 재원이 있음(평균 2.05)보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 이러한 차이는 감소지역(여타 재원 없음 평균 2.39 vs. 있음 평균 1.94) 및 기초소계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기금 사업이 새롭지 않거나 여타 재원이 없는 등 기금을 둘러싼 환경이 상대적으로 경쟁적이거나 어려운 경우, 투자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자체가 기금을 배분받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32〉 설문조사 결과(설문 1-1. 투자계획 평가 미흡 자치단체에의 기금 배분)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37 (163) | 2.56 (78) | 2.20 (85) | 0.364 (1.61) | 2.35 (155) | 2.75 (8) | -0.395 (-0.75) |
| 기초소계 | 2.49 (529) | 2.29 (186) | 2.29 (343) | 0.001 (0.01) | 2.23 (447) | 2.59 (82) | **-0.350 (-2.10)**** |
| 감소지역 | 2.25 (484) | 2.29 (174) | 2.23 (310) | 0.061 (0.47) | 2.20 (412) | 2.53 (72) | **-0.328 (-1.87)*** |
| 관심지역 | 2.73 (45) | 2.33 (12) | 2.88 (33) | -0.545 (-1.07) | 2.66 (35) | 3.00 (10) | -0.343 (-0.62) |
| 합 계 | 2.43 (692) | 2.37 (264) | 2.27 (428) | 0.100 (0.91) | 2.27 (602) | 2.60 (90) | **-0.334 (-2.11)****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37 (163) | 2.35 (160) | 3.67 (3) | -1.317 (-1.56) | 2.20 (70) | 2.51 (93) | -0.305 (-1.34) |
| 기초소계 | 2.49 (529) | 2.29 (489) | 2.25 (40) | 0.042 (0.18) | 1.98 (163) | 2.43 (366) | **-0.444 (-3.43)***** |
| 감소지역 | 2.25 (484) | 2.25 (447) | 2.24 (37) | 0.005 (0.02) | 1.94 (149) | 2.39 (335) | **-0.445 (-3.33)***** |
| 관심지역 | 2.73 (45) | 2.76 (42) | 2.33 (3) | 0.429 (0.47) | 2.43 (14) | 2.87 (31) | -0.442 (-0.90) |
| 합 계 | 2.43 (692) | 2.31 (649) | 2.35 (43) | -0.042 (-0.19) | 2.05 (233) | 2.44 (459) | **-0.395 (-3.52)*****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매우 개선 필요, 3점 - 약간 개선 필요, 1점 - 현재 유지 필요.

설문문항 1-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게 평가받은 자치단체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설문 1-2)와 우선순위 통계와의 결합에서 감소지역에서 우선순위가 상위 50% 이내인 사업(평균 3.78)은 하위 50% 사업(평균 3.41)에 비해 자치단체 간 기금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

(설문 1-2)와 사업이력 통계와의 결합에서 기금 사업이 이전부터 계속 사업인 경우(평균 4.53)가 신규 사업인 경우(평균 3.45)에 비해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유의하게 선호했다. 또한 여타 재원 통계와의 결합의 경우 여타 재원이 있는 사업(평균 3.90)이 없는 사업(평균 3.32)에 비해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유의하게 선호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기금 사업의 경쟁도 또는 재원 여건 등에서 유리한 사업(우선순위 상, 사업이력 계속사업, 여타 재원 있음)이 불리한 사업에 비해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작은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33〉 설문조사 결과(설문 1-2. 자치단체 간 투자계획 평가 차이와 배분액 격차)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33 (163) | 3.31 (78) | 3.35 (85) | -0.045 (-0.14) | 3.35 (155) | 3.00 (8) | 0.348 (0.49) |
| 기초소계 | 3.70 (529) | 3.80 (186) | 3.45 (343) | **0.346 (1.99)**** | 3.60 (447) | 3.39 (82) | 0.213 (0.92) |
| 감소지역 | 3.55 (484) | 3.78 (174) | 3.41 (310) | **0.368 (2.02)**** | 3.60 (412) | 3.22 (72) | 0.379 (1.54) |
| 관심지역 | 3.84 (45) | 4.00 (12) | 3.79 (33) | 0.212 (0.34) | 3.63 (35) | 4.60 (10) | -0.971 (-1.49) |
| 합 계 | 3.51 (692) | 3.65 (264) | 3.43 (428) | 0.221 (1.46) | 3.54 (602) | 3.36 (90) | 0.182 (0.83) |

〈표 Ⅴ-33〉의 계속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33 (163) | 3.33 (160) | 3.67 (3) | -0.342 (-0.29) | 4.03 (70) | 2.81 (93) | **1.222 (4.09)*** ** |
| 기초소계 | 3.70 (529) | 3.49 (489) | 4.60 (40) | **-1.113 (-3.56)*** ** | 3.85 (163) | 3.45 (366) | **0.398 (2.21)** ** |
| 감소지역 | 3.55 (484) | 3.46 (447) | 4.57 (37) | **-1.106 (-3.39)*** ** | 3.90 (149) | 3.39 (335) | **0.511 (2.71)** ** |
| 관심지역 | 3.84 (45) | 3.76 (42) | 5.00 (3) | -1.238 (-1.13) | 3.29 (14) | 4.10 (31) | -0.811 (-1.38) |
| 합 계 | 3.51 (692) | 3.45 (649) | 4.53 (43) | **-1.088 (-3.60)*** ** | 3.90 (233) | 3.32 (459) | **0.583 (3.78)*** **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적절, 1점 - 부적절.

설문문항 1-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결과, 등급(S/A/B/C 또는 우수/양호)이 동일하면 자치단체의 인구, 산업, 지리적 특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설문 1-3)과 사업이력 통계와의 결합에서 관심지역의 경우 계속 사업(평균 3.67)이 신규 사업(평균 1.67)보다 자치단체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 1-2)와 여타 통계와의 결합에서 보인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 유리한 기금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기금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보다는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타 재원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 기준으로 평균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초소계와 광역본청 각각에서는 평균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방향이 반대이다. 광역은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배분이 여타 재원이 있는 경우보다 여타 재원이 없을 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Ⅴ-34〉 설문조사 결과(설문 1-3. 자치단체별 특징 고려하지 않은 기금 배분)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96 (163) | 2.85 (78) | 3.07 (85) | -0.224 (-0.71) | 3.01 (155) | 2.00 (8) | 1.013 (1.39) |
| 기초소계 | 2.07 (529) | 2.20 (186) | 2.34 (343) | -0.136 (-0.80) | 2.29 (447) | 3.62 (82) | -0.028 (-0.12) |
| 감소지역 | 2.34 (484) | 2.24 (174) | 2.39 (310) | -0.152 (-0.85) | 2.34 (412) | 2.33 (72) | 0.006 (0.02) |
| 관심지역 | 1.80 (45) | 1.67 (12) | 1.85 (33) | -0.182 (-0.33) | 1.69 (35) | 2.20 (10) | -0.514 (-0.88) |
| 합 계 | 2.52 (692) | 2.39 (264) | 2.49 (428) | -0.092 (-0.61) | 2.48 (602) | 2.29 (90) | 0.186 (0.85)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96 (163) | 2.98 (160) | 2.33 (3) | 0.642 (0.54) | 2.54 (70) | 3.28 (93) | **-0.737 (-2.35)**** |
| 기초소계 | 2.07 (529) | 2.26 (489) | 2.70 (40) | -0.440 (-1.43) | 2.52 (163) | 2.19 (366) | **0.330 (1.87)**** |
| 감소지역 | 2.34 (484) | 2.32 (447) | 2.62 (37) | -0.306 (-0.94) | 2.53 (149) | 2.25 (335) | 0.276 (1.48) |
| 관심지역 | 1.80 (45) | 1.67 (42) | 3.67 (3) | **-2.000 (-2.15)**** | 2.43 (14) | 1.52 (31) | **0.912 (1.79)*** |
| 합 계 | 2.52 (692) | 2.44 (649) | 2.67 (43) | -0.238 (-0.78) | 2.53 (233) | 2.41 (459) | 0.116 (0.75)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자치단체 특징 고려하지 않은 배분은 적절, 1점 - 부적절.

나) 주무기관 운영(설문문항 1-4, 1-5)과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음)의 투자계획평가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행했나요?

(설문 1-4)와 새로움의 정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평균 3.68)이 새롭지 않은 사업(평균 3.53)보다 주무기관 운영에 대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설문 1-5)와 여타 통계와의 결합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표 V-35〉 설문조사 결과(설문 1-4. 주무기관 운영: 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85 (163) | 3.78 (78) | 3.91 (85) | -0.123 (-1.46) | 3.85 (155) | 3.75 (8) | 0.102 (0.52) |
| 기초소계 | 3.64 (529) | 3.64 (186) | 3.58 (343) | 0.056 (0.82) | 3.62 (447) | 3.51 (82) | 0.107 (1.18) |
| 감소지역 | 3.60 (484) | 3.66 (174) | 3.56 (310) | 0.090 (1.26) | 3.62 (412) | 3.44 (72) | **0.179 (1.86)*** |
| 관심지역 | 3.67 (45) | 3.42 (12) | 3.76 (33) | -0.341 (-1.38) | 3.57 (35) | 4.00 (10) | -0.429 (-1.65) |
| 합 계 | 3.74 (692) | 3.68 (264) | 3.65 (428) | 0.034 (0.61) | 3.68 (602) | 3.53 (90) | **0.146 (1.80)***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85 (163) | 3.84 (160) | 4.00 (3) | -0.156 (-0.49) | 3.79 (70) | 3.89 (93) | -0.107 (-1.25) |
| 기초소계 | 3.64 (529) | 3.60 (489) | 3.63 (40) | -0.023 (-0.19) | 3.64 (163) | 3.58 (366) | 0.059 (0.83) |
| 감소지역 | 3.60 (484) | 3.60 (447) | 3.54 (37) | 0.061 (0.47) | 3.64 (149) | 3.58 (335) | 0.058 (0.78) |
| 관심지역 | 3.67 (45) | 3.60 (42) | 4.67 (3) | **-1.071 (-2.57)**** | 3.71 (14) | 3.65 (31) | 0.069 (0.28) |
| 합 계 | 3.74 (692) | 3.66 (649) | 3.65 (43) | 0.009 (0.08) | 3.69 (233) | 3.65 (459) | 0.039 (0.68)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매우 전문적/공정하였음, 4점 - 대체로 전문적/공정하였음, 3점 - 보통, 2점 - 대체로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 1점 - 매우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

설문문항 1-5. 선생님 또는 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음)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서 평가 및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았나요?

〈표 Ⅴ-36〉 설문조사 결과(설문 1-5. 주무기관 운영: 공제회의 자치단체에의 유용한 정보·서비스 지원)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52 (163) | 3.53 (78) | 3.52 (85) | 0.007 (0.07) | 3.54 (155) | 3.13 (8) | 0.417 (1.59) |
| 기초소계 | 3.40 (529) | 3.48 (186) | 3.37 (343) | 0.110 (1.52) | 3.40 (447) | 3.48 (82) | -0.075 (-0.78) |
| 감소지역 | 3.42 (484) | 3.50 (174) | 3.37 (310) | **0.132 (1.77)*** | 3.41 (412) | 3.46 (72) | -0.050 (-0.50) |
| 관심지역 | 3.38 (45) | 3.25 (12) | 3.42 (33) | -0.174 (-0.57) | 3.31 (35) | 3.60 (10) | -0.286 (-0.89) |
| 합 계 | 3.46 (692) | 3.50 (264) | 3.40 (428) | 0.094 (1.54) | 3.44 (602) | 3.44 (90) | -0.007 (-0.08)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52 (163) | 3.53 (160) | 3.33 (3) | 0.192 (0.45) | 3.41 (70) | 3.60 (93) | -0.188 (-1.65) |
| 기초소계 | 3.40 (529) | 3.42 (489) | 3.38 (40) | 0.040 (0.30) | 3.37 (163) | 3.43 (366) | -0.063 (-0.84) |
| 감소지역 | 3.42 (484) | 3.42 (447) | 3.32 (37) | 0.098 (0.72) | 3.37 (149) | 3.44 (335) | -0.066 (-0.85) |
| 관심지역 | 3.38 (45) | 3.33 (42) | 4.00 (3) | -0.667 (-1.26) | 3.36 (14) | 3.39 (31) | -0.030 (-0.10) |
| 합 계 | 3.46 (692) | 3.44 (649) | 3.37 (43) | 0.070 (0.56) | 3.38 (233) | 3.47 (459) | -0.084 (-1.34)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매우 그러함, 4점 - 대체로 그러함, 3점 - 보통, 2점 - 대체로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렇지 않음.

다) 계획의 충실성(설문문항 1-6)과 여타 통계의 결합

설문문항 1-6. 자치단체가 준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의 내용(효과성, 중장기계획, 사업관리 등을 말하며, 투자계획서의 가독성 또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요?

(설문 1-6)과 사업별 추진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사업별 추진체계 있음(평균 3.75)이 없음(3.61)보다 계획이 충실하다고 답변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 그러나 광역본청(없음 평균이 높음)과 기초소계(있음 평균이 높음)의 방향성이 상반된다. 광역은 사업별 추진체계가 없는 경우 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한다. 외부네트워크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평균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역본청(없음 평균이 높음)과 기초소계(있음 평균이 높음)의 방향성이 상반된다. 광역은 외부네트워크체계가 없을 때 투자계획체계가 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광역이 사업별 추진체계가 없을 때와 외부네트워크체계가 없을 때 투자계획이 충실하다는 응답은 기초와 달리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광역계정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거나 기초계정에 예산을 매칭하는 등 단순 활용하는 데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다고 추정된다.

주민참여체계 통계 및 사전절차 이행 실적 통계와의 결합에서 각각 평균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역본청의 경우 두 가지 모두에서 있음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광역본청의 경우 주민참여체계 및 사전절차 이행 실적이 있는 사업에서 계획의 충실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37〉 설문조사 결과(설문 1-6. 계획의 충실성 – 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의 적절성)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사업별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체계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53 (163) | 3.46 (136) | 3.89 (27) | **-0.425 (-2.29)**** | 3.25 (84) | 3.84 (79) | **-0.585 (-4.40)***** |
| 기초소계 | 3.76 (529) | 3.86 (355) | 3.57 (174) | **0.287 (3.92)***** | 3.88 (188) | 3.70 (341) | **0.179 (2.47)**** |
| 감소지역 | 3.76 (484) | 3.88 (328) | 3.51 (156) | **0.365 (4.72)***** | 3.93 (167) | 3.67 (317) | **0.256 (3.33)***** |
| 관심지역 | 3.77 (45) | 3.59 (27) | 4.06 (18) | **-0.463 (-2.26)**** | 3.48 (21) | 4.04 (24) | **-0.565 (-2.90)**** |
| 합 계 | 3.71 (692) | 3.75 (491) | 3.61 (201) | **0.135 (1.95)*** | 3.68 (272) | 3.72 (420) | -0.040 (-0.61) |

〈표 V-37〉의 계속

| 구분 | 평균 | 주민참여체계 | | | 사전절차 이행 실적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진행 완료 평균 | 여타 사항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53 (163) | 4.00 (27) | 3.44 (136) | **0.559 (3.05)**** | 3.91 (55) | 3.34 (108) | **0.566 (4.01)***** |
| 기초소계 | 3.76 (529) | 3.72 (92) | 3.77 (437) | -0.053 (-0.58) | 3.73 (254) | 3.79 (275) | -0.064 (-0.92) |
| 감소지역 | 3.76 (484) | 3.73 (84) | 3.77 (400) | -0.041 (-0.42) | 3.73 (227) | 3.79 (257) | -0.054 (-0.73) |
| 관심지역 | 3.77 (45) | 3.63 (8) | 3.81 (37) | -0.185 (-0.67) | 3.70 (27) | 3.89 (18) | -0.185 (-0.86) |
| 합 계 | 3.71 (692) | 3.78 (119) | 3.69 (573) | 0.088 (1.06) | 3.76 (309) | 3.67 (383) | 0.094 (1.50)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매우 그러함, 4점 - 대체로 그러함, 3점 - 보통, 2점 - 대체로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렇지 않음.

라) 투자수요 예측(설문문항 1-7)과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1-7. 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수혜대상, 사업규모, 지원조건 등의 관련사항을 설계할 때 수혜대상의 범위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지요? 실시했다면 누가 어느정도로 실시했는지요?

(설문 1-7)과 외부네트워크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관심지역의 경우 외부네트워크체계 없음(평균 2.88)이 있음(2.29)보다 수요예측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답변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 또한 사전절차 이행 실적과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미진행한 경우(평균 3.09)가 진행 완료한 경우(2.84)보다 수요예측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답변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

〈표 Ⅴ-38〉 설문조사 결과(설문 1-7. 수요예측 실시 여부·주체·정도)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사업별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체계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08 (163) | 3.04 (136) | 3.30 (27) | -0.252 (-0.99) | 3.07 (84) | 3.10 (79) | -0.029 (-0.15) |
| 기초소계 | 2.94 (529) | 2.99 (355) | 2.87 (174) | 0.118 (1.13) | 2.82 (188) | 3.02 (341) | -0.198 (-1.94) |
| 감소지역 | 2.97 (484) | 3.02 (328) | 2.88 (156) | 0.139 (1.28) | 2.89 (167) | 3.03 (317) | -0.142 (-1.32) |
| 관심지역 | 2.60 (45) | 2.52 (27) | 2.72 (18) | -0.204 (-0.57) | 2.29 (21) | 2.88 (24) | **-0.589 (-1.74)*** |
| 합 계 | 2.97 (692) | 3.00 (491) | 2.93 (201) | 0.076 (0.79) | 2.90 (272) | 3.03 (420) | -0.136 (-1.52) |

| 구분 | 평균 | 주민참여체계 | | | 사전절차 이행 실적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진행 완료 평균 | 여타 사항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08 (163) | 3.26 (27) | 3.05 (136) | 0.208 (0.81) | 2.87 (55) | 3.19 (108) | -0.322 (-1.62) |
| 기초소계 | 2.94 (529) | 2.91 (92) | 2.95 (437) | -0.041 (-0.31) | 2.83 (254) | 3.05 (275) | **-0.216 (-2.21)**** |
| 감소지역 | 2.97 (484) | 2.99 (84) | 2.98 (400) | 0.010 (0.07) | 2.89 (227) | 3.05 (257) | -0.160 (-1.57) |
| 관심지역 | 2.60 (45) | 2.13 (8) | 2.70 (37) | -0.577 (-1.29) | 2.33 (27) | 3.00 (18) | **-0.666 (-1.95)*** |
| 합 계 | 2.97 (692) | 2.99 (119) | 2.98 (573) | 0.014 (0.12) | 2.84 (309) | 3.09 (383) | **-0.250 (-2.87)****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실시함 & 외부전문가가 엄정히 예측함, 4점 - 실시함 & 외부전문가가 간편 예측함, 3점 - 실시함 & 담당자가 엄정히 예측함, 2점 - 실시함 & 담당자가 간편 예측함, 1점 - 실시하지 않음.

### 마)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설문문항 1-8)과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1-8. 자치단체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각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래 중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요?

(설문 1-8)과 여타 재원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여타 재원이 있는 경우(평균 4.12)가 없는 경우(평균 3.84)에 비해 자치단체의 객관적인 지방소멸대응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광역본청의 경우 여타 재원이 없는 경우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도 앞서 언급한 대로 광역계정을 직접

사업추진보다 기초에 균등배분하는 등 단순 활용하는 데에서 오는 차이로 추정된다.

〈표 Ⅴ-39〉 설문조사 결과(설문 1-8. 우선순위 선정기준)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72 (163) | 3.67 (78) | 3.78 (85) | -0.109 (-0.37) | 3.68 (155) | 4.50 (8) | -0.816 (-1.20) |
| 기초소계 | 4.00 (529) | 4.16 (186) | 3.92 (343) | 0.245 (1.56) | 3.97 (447) | 4.17 (82) | -0.199 (-0.95) |
| 감소지역 | 4.00 (484) | 4.17 (174) | 3.90 (310) | 0.269 (1.64) | 3.98 (412) | 4.11 (72) | -0.131 (-0.58) |
| 관심지역 | 4.02 (45) | 4.00 (12) | 4.03 (33) | -0.030 (-0.05) | 3.86 (35) | 4.60 (10) | -0.743 (-1.19) |
| 합 계 | 3.94 (692) | 4.02 (264) | 3.89 (428) | 0.127 (0.91) | 3.90 (602) | 4.20 (90) | -0.303 (-1.52)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72 (163) | 3.70 (160) | 5.00 (3) | -1.300 (-1.19) | 3.32 (70) | 4.26 (93) | **-0.935 (-3.25)**** |
| 기초소계 | 4.00 (529) | 3.97 (489) | 4.40 (40) | -0.431 (-1.51) | 4.07 (163) | 3.97 (366) | 0.094 (0.58) |
| 감소지역 | 4.00 (484) | 3.97 (447) | 4.35 (37) | -0.380 (-1.28) | 4.09 (149) | 3.96 (335) | 0.126 (0.73) |
| 관심지역 | 4.02 (45) | 3.95 (42) | 5.00 (3) | -1.047 (-1.00) | 3.86 (14) | 4.10 (31) | -0.240 (-0.42) |
| 합 계 | 3.94 (692) | 3.90 (649) | 4.44 (43) | **-0.539 (-1.94)*** | 4.12 (233) | 3.84 (459) | **0.283 (1.99)****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자치단체의 객관적인 지방소멸대응 관점, 1점 - 자치단체장의 주관적인 관심도.

**[효율성 평가]**

가) 배분적 효율성(설문문항 3-3)과 여타 통계의 결합

설문문항 3-3.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간 기금 배분(포트폴리오)은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지방소멸대응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기금 사업에 많은 자금이 배분되고 지방소멸대응에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기금 사업에 적은 자금이 배분되었는지요?

(설문 3-3)과 새로움의 정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새로운 사업(평균 3.59)은 새롭지 않은 사업(평균 3.44)에 비해 배분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설문 3-3)과 여타 재원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여타 재원이 없는 사업(평균 3.63)은 여타 재원이 있는 사업(평균 3.46)보다 배분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기금 사업의 생성에 노력을 들이거나(새로운 사업) 여타 재원이 없어 운용 환경이 어려운 사업과 배분적 효율성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40〉 설문조사 결과(설문 3-3. 배분적 효율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64 (163) | 3.63 (78) | 3.78 (85) | -0.030 (-0.25) | 3.65 (155) | 3.63 (8) | 0.020 (0.07) |
| 기초소계 | 3.55 (529) | 3.55 (186) | 3.56 (343) | -0.008 (-0.11) | 3.58 (447) | 3.43 (82) | 0.150 (1.59) |
| 감소지역 | 3.55 (484) | 3.55 (174) | 3.55 (310) | -0.008 (-0.12) | 3.57 (412) | 3.43 (72) | 0.142 (1.43) |
| 관심지역 | 3.57 (45) | 3.58 (12) | 3.58 (33) | 0.007 (0.02) | 3.63 (35) | 3.40 (10) | 0.229 (0.71) |
| 합 계 | 3.57 (692) | 3.57 (264) | 3.58 (428) | -0.005 (-0.08) | 3.59 (602) | 3.44 (90) | **0.150 (1.71)***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64 (163) | 3.64 (160) | 4.00 (3) | -0.362 (-0.81) | 3.73 (70) | 3.53 (93) | **0.203 (1.69)*** |
| 기초소계 | 3.55 (529) | 3.54 (489) | 3.70 (40) | -0.158 (-1.22) | 3.44 (163) | 3.61 (366) | **-0.171 (-2.31)**** |
| 감소지역 | 3.55 (484) | 3.54 (447) | 3.68 (37) | -0.134 (-1.01) | 3.43 (149) | 3.61 (335) | **-0.176 (-2.31)**** |
| 관심지역 | 3.57 (45) | 3.55 (42) | 4.00 (3) | -0.452 (-0.84) | 3.50 (14) | 4.00 (31) | -0.49 (-0.38) |
| 합 계 | 3.57 (692) | 3.57 (649) | 3.72 (43) | -0.155 (-1.27) | 3.46 (233) | 3.63 (459) | **-0.168 (-2.69)****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매우 그러함, 4점 - 대체로 그러함, 3점 - 보통, 2점 - 대체로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렇지 않음.

나) 유사중복성(설문문항 1-9)과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1-9.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사업목표 또는 사업대상 또는 정책수단 측면에서 유사한 여타 사업이 선생님 소속 자치단체 내 존재하는지요?

설문 1-9와 우선순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우선순위가 상위 50% 이내인 사업(평균 2.89)은 하위 50% 사업(평균 2.56)에 비해 유사중복성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설문 1-9)와 사업이력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이전 계속 사업(평균 3.70)은 신규 사업(평균 2.62)에 비해 유사중복성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41〉 설문조사 결과(설문 1-9. 유사중복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44 (163) | 2.49 (78) | 2.41 (85) | 0.075 (0.24) | 2.39 (155) | 3.50 (8) | -1.106 (-1.59) |
| 기초소계 | 2.76 (529) | 3.06 (186) | 2.60 (343) | **0.466 (2.59)**** | 2.73 (447) | 2.95 (82) | -0.224 (-0.93) |
| 감소지역 | 2.74 (484) | 3.05 (174) | 2.57 (310) | **0.471 (2.52)**** | 2.72 (412) | 2.89 (72) | -0.170 (-0.67) |
| 관심지역 | 2.95 (45) | 3.33 (12) | 2.82 (33) | 0.515 (0.75) | 2.83 (35) | 3.40 (10) | -0.571 (-0.78) |
| 합 계 | 2.68 (692) | 2.89 (264) | 2.56 (428) | **0.333 (2.15)**** | 2.64 (602) | 3.00 (90) | -0.359 (-1.61)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44 (163) | 2.40 (160) | 5.00 (3) | **-2.600 (-2.34)**** | 2.38 (70) | 2.54 (93) | -0.167 (-0.54) |
| 기초소계 | 2.76 (529) | 2.69 (489) | 3.60 (40) | **-0.907 (-2.79)**** | 2.67 (163) | 2.80 (366) | -0.134 (-0.71) |
| 감소지역 | 2.74 (484) | 2.67 (447) | 3.59 (37) | **-0.921 (-2.73)**** | 2.66 (149) | 2.78 (335) | -0.115 (-0.58) |
| 관심지역 | 2.95 (45) | 2.90 (42) | 3.67 (3) | -0.761 (-0.62) | 2.71 (14) | 3.06 (31) | -0.350 (-0.53) |
| 합 계 | 2.68 (692) | 2.62 (649) | 3.70 (43) | **-1.077 (-3.49)***** | 2.63 (233) | 2.72 (459) | -0.085 (-0.54)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존재하지 않음, 1점 - 존재함.

### 3) 설문조사 결과와 여타 통계와의 결합 평가 결과-과정평가 결과

**[적절성 평가]**

가) 집행자원의 충분성(설문문항 2-1)과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2-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해 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은 충분히 집행되었는지요?

(설문 2-1)과 주민참여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주민참여체계가 없는 사업(평균 3.77)은 있는 사업(평균 3.47)에 비해 집행자원을 충분히 집행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소계(감소지역)에서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주민참여체계가 있는 경우 주민의견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거나 제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 2-1)과 사전절차 이행 실적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사전절차 진행 완료 사업(평균 3.85)은 완료하지 못한 여타 사업(평균 3.61)에 비해 집행자원을 충분히 집행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통상의 경우에 부합하는 사항이다.

〈표 Ⅴ-42〉 설문조사 결과(설문 2-1. 집행자원의 충분성)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사업별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체계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85 (163) | 3.89 (136) | 3.67 (27) | 0.223 (1.63) | 3.87 (84) | 3.84 (79) | 0.033 (0.32) |
| 기초소계 | 3.67 (529) | 3.66 (355) | 3.70 (174) | -0.033 (-0.41) | 3.66 (188) | 3.68 (341) | -0.012 (-0.15) |
| 감소지역 | 3.62 (484) | 3.61 (328) | 3.65 (156) | -0.044 (-0.52) | 3.58 (167) | 3.65 (317) | -0.065 (-0.79) |
| 관심지역 | 4.20 (45) | 4.30 (27) | 4.06 (18) | 0.241 (1.20) | 4.33 (21) | 4.08 (24) | 0.250 (1.27) |
| 합 계 | 3.71 (692) | 3.73 (491) | 3.69 (201) | 0.033 (0.48) | 3.73 (272) | 3.71 (420) | 0.020 (0.32) |

〈표 Ⅴ-42〉의 계속

| 구분 | 평균 | 주민참여체계 | | | 사전절차 이행 실적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진행 완료 평균 | 여타 사항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85 (163) | 3.63 (27) | 3.90 (136) | -0.267 (-1.97) | 3.98 (55) | 3.79 (108) | **0.195 (1.82)*** |
| 기초소계 | 3.67 (529) | 3.42 (92) | 3.73 (437) | **-0.301 (-3.05)**** | 3.82 (254) | 3.54 (275) | **0.280 (3.76)***** |
| 감소지역 | 3.62 (484) | 3.35 (84) | 3.68 (400) | **-0.337 (-3.27)**** | 3.77 (227) | 3.49 (257) | **0.276 (3.54)***** |
| 관심지역 | 4.20 (45) | 4.25 (8) | 4.19 (37) | 0.060 (0.23) | 4.22 (27) | 4.17 (18) | 0.055 (0.27) |
| 합 계 | 3.71 (692) | 3.47 (119) | 3.77 (573) | **-0.295 (-3.59)***** | 3.85 (309) | 3.61 (383) | **0.239 (3.84)*****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매우 그러함, 4점 - 대체로 그러함, 3점 - 보통, 2점 - 대체로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렇지 않음.

나)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 환류(설문문항 2-2)와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2-2. 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전달경로에 있는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반 의견(만족도 측정 포함)을 수집하는지요? 수집한다면 해당 사항을 사업관리에 얼마나 환류하여 반영하고 있는지요?

(설문 2-2)와 사업별 추진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평균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광역본청과 기초소계의 평균 차이 방향이 상반된다. (설문 2-2)와 외부네트워크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외부네트워크체계가 없음(평균 3.23)이 있음(평균 3.04)에 비해 환류에 적극적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통상의 경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반면 (설문 2-2)와 사절절차 이행 실적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진행 완료 사업(평균 3.34)이 그렇지 않은 사업(평균 3.01)보다 환류에 적극적이라고 답하였다.

〈표 Ⅴ-43〉 설문조사 결과(설문 2-2.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환류)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사업별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체계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82 (163) | 2.72 (136) | 3.34 (27) | **-0.623 (-2.35)**** | 2.30 (84) | 3.37 (79) | **-1.074 (-5.92)***** |
| 기초소계 | 3.25 (529) | 3.31 (355) | 3.15 (174) | **0.167 (1.69)*** | 3.38 (188) | 3.19 (341) | 0.183 (1.88) |
| 감소지역 | 3.28 (484) | 3.32 (328) | 3.22 (156) | 0.098 (0.99) | 3.41 (167) | 3.22 (317) | **0.196 (2.01)*** |
| 관심지역 | 2.95 (45) | 3.25 (27) | 2.50 (18) | **0.752 (1.69)*** | 3.07 (21) | 2.85 (24) | 0.216 (0.48) |
| 합 계 | 3.15 (692) | 3.15 (491) | 3.17 (201) | -0.023 (-0.24) | 3.04 (272) | 3.23 (420) | **-0.183 (-2.08)*** |

| 구분 | 평균 | 주민참여체계 | | | 사전절차 이행 실적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진행 완료 평균 | 여타 사항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82 (163) | 3.11 (27) | 2.76 (136) | 0.352 (1.31) | 3.70 (55) | 2.40 (108) | **0.847 (4.21)***** |
| 기초소계 | 3.25 (529) | 3.32 (92) | 3.24 (437) | 0.007 (0.62) | 3.33 (254) | 3.19 (275) | 0.140 (1.51) |
| 감소지역 | 3.28 (484) | 3.40 (84) | 3.26 (400) | 0.132 (1.08) | 3.38 (227) | 3.20 (257) | **0.178 (1.93)*** |
| 관심지역 | 2.95 (45) | 2.54 (8) | 3.04 (37) | -0.503 (-0.86) | 2.91 (27) | 3.02 (18) | -0.109 (-0.23) |
| 합 계 | 3.15 (692) | 3.27 (119) | 3.13 (573) | 0.144 (1.26) | 3.34 (309) | 3.01 (383) | **0.334 (3.89)*****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수집함 &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환류함, 3.7점 - 수집함 & 사업관리에 대체로 환류함, 2.4점 - 수집함 & 사업관리에 대체로 환류하지 않음, 1점 - 수집하지 않음.

3. 문항 성격상 선지가 4개인 상태에서 최고 5점, 최저 1점으로 배분하기에 5점, 3.7점, 2.4점, 1점으로 구분함.

**[효과성 평가]**

가) 정책목표(효과) 경로분석(설문문항 2-3)과 여타 통계의 결합

설문문항 2-3. 선생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담당자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당초 계획한 정책목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로, 방식 및 조건 등을 어느 정도 검토(분석)하였는지요?

(설문 2-3)과 사업별 추진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사업별 추진체계 있음(평균 3.30)이 없음(평균 3.13)보다 정책목표 경로 분석에서 충실했다고 답하였다. 외부네트워크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광역본청과 기초소계의 평균 차이 방향이 상반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광역계정을 직접사업 추진보다 기초에 대한 균등배분 등 단순 활용하는 데에서 오는 인식 차이로 추정된다.

(설문 2-3)과 주민참여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주민참여체계 있음(3.45)이 없음(3.21)보다 정책목표 경로분석에서 충실했다고 답하였다. 사전절차 이행 실적 통계와의 결합에서 광역본청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완료(3.58)가 여타사항(평균 3.19)보다 정책목표 경로분석에서 충실했다고 답하였다.

〈표 Ⅴ-44〉 설문조사 결과(설문 2-3. 정책목표 경로분석)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사업별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체계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31 (163) | 3.35 (136) | 3.15 (27) | 0.204 (1.06) | 3.17 (84) | 3.48 (79) | **-0.314 (-2.22)**** |
| 기초소계 | 3.22 (529) | 3.28 (355) | 3.13 (174) | **0.149 (1.71)*** | 3.35 (188) | 3.16 (341) | **0.192 (2.26)**** |
| 감소지역 | 3.20 (484) | 3.25 (328) | 3.10 (156) | **0.147 (1.68)*** | 3.35 (167) | 3.13 (317) | **0.221 (2.58)**** |
| 관심지역 | 3.48 (45) | 3.59 (27) | 3.33 (18) | 0.259 (0.65) | 3.38 (21) | 3.58 (24) | -0.202 (-0.52) |
| 합 계 | 3.24 (692) | 3.30 (491) | 3.13 (201) | **0.168 (2.14)*** | 3.29 (272) | 3.22 (420) | 0.075 (1.03) |

| 구분 | 평균 | 주민참여체계 | | | 사전절차 이행 실적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진행 완료 평균 | 여타 사항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31 (163) | 3.22 (27) | 3.34 (136) | -0.116 (-0.60) | 3.58 (55) | 3.19 (108) | **0.397 (2.67)**** |
| 기초소계 | 3.22 (529) | 3.52 (92) | 3.16 (437) | **0.357 (3.33)***** | 3.25 (254) | 3.20 (275) | 0.048 (0.58) |
| 감소지역 | 3.20 (484) | 3.48 (84) | 3.15 (400) | **0.331 (3.08)**** | 3.20 (227) | 3.20 (257) | 0.000 (0.00) |
| 관심지역 | 3.48 (45) | 4.00 (8) | 3.38 (37) | 0.621 (1.24) | 3.67 (27) | 3.22 (18) | 0.444 (1.13) |
| 합 계 | 3.24 (692) | 3.45 (119) | 3.21 (573) | **0.247 (2.64)**** | 3.31 (309) | 3.20 (383) | 0.112 (1.57)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대외적으로 발표·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토함, 3점 - 자체 학습 등의 방법으로 대체로 검토함, 1점 - 검토하지 않음.

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슈 원천(설문문항 2-4)

※ 설문문항 2-4. 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또는 이슈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파악하고 있다면 해당 문제점 또는 이슈가 발생하는 원천은 대체로 선생님이 소속한 자치단체, 소속 자치단체 주민, 여타 기관(중앙정부 등) 중 어디인지요?

설문 2-4와 사업별 추진체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사업별 추진체계 없음(평균 4.68)이 있음(평균 4.49)보다 집행과정 문제·이슈의 원천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네트워크체계 통계(합계의 경우 등), 주민참여체계 통계(광역본청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실적(합계, 광역본청, 기초소계의 경우 등)에서 일관되게 파악되었다. 이는 기금 사업 담당자가 해당 문제·이슈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설문 응답자인 사업 담당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별 추진체계가 없다고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표 V-45〉 설문조사 결과(설문 2-4. 집행과정 문제·이슈 원천)와 여타 통계(사업별 추진체계, 외부네트워크체계, 주민참여체계, 사전절차 이행 실적)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사업별 추진체계 | | | 외부네트워크체계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4.77 (163) | 4.79 (136) | 4.70 (27) | 0.090 (0.46) | 4.81 (84) | 4.75 (79) | 0.062 (0.43) |
| 기초소계 | 4.47 (529) | 4.38 (355) | 4.68 (174) | **-0.297 (-2.39)**** | 4.21 (188) | 4.62 (341) | **-0.411 (-3.39)***** |
| 감소지역 | 4.47 (484) | 4.37 (328) | 4.72 (156) | **-0.352 (-2.70)**** | 4.19 (167) | 4.63 (317) | **-0.448 (-3.52)***** |
| 관심지역 | 4.46 (45) | 4.56 (27) | 4.33 (18) | 0.222 (0.52) | 3.48 (21) | 4.04 (24) | -0.071 (-0.17) |
| 합 계 | 4.54 (692) | 4.49 (491) | 4.68 (201) | **-0.186 (-1.76)*** | 4.40 (272) | 4.65 (420) | **-0.250 (-2.55)**** |

〈표 Ⅴ-45〉의 계속

| 구분 | 평균 | 주민참여체계 | | | 사전절차 이행 실적 | | |
|---|---|---|---|---|---|---|---|
| |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진행 완료 평균 | 여타 사항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4.77 (163) | 4.41 (27) | 4.85 (136) | **-0.446 (-2.33)**** | 4.56 (55) | 4.89 (108) | **-0.325 (-2.17)**** |
| 기초소계 | 4.47 (529) | 4.57 (92) | 4.46 (437) | 0.105 (0.68) | 4.32 (254) | 4.62 (275) | **-0.299 (-2.56)**** |
| 감소지역 | 4.47 (484) | 4.62 (84) | 4.45 (400) | 0.169 (1.04) | 4.30 (227) | 4.64 (257) | **-0.346 (-2.84)**** |
| 관심지역 | 4.46 (45) | 4.00 (8) | 4.57 (37) | -0.567 (-1.06) | 4.56 (27) | 4.33 (18) | 0.222 (0.52) |
| 합 계 | 4.54 (692) | 4.53 (119) | 4.55 (573) | -0.023 (-0.18) | 4.37 (309) | 4.70 (383) | **-0.331 (-3.45)*****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파악함, 1점 - 파악하지 않음.

### 4) 설문조사 결과와 여타 통계와의 결합 평가 결과-결과평가 결과

**[효과성 평가]**

가) 지방소멸대응 정책목표의 효과(설문문항 3-1)와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 3-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표(예: ○○시설 건립)를 달성하였나요? 그렇다면 해당 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표를 넘어 지방소멸대응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문 3-1)과 우선순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우선순위 상위 50% 사업(평균 3.22)이 하위 50% 사업(평균 2.97)보다 정책효과가 높다고 응답했다. 새로움의 정도 통계와의 결합에서 관심지역의 경우 새로운 사업(평균 3.57)이 새롭지 않은 사업(평균 2.60)보다 정책효과가 높다고 응답했다. 여타 재원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여타 재원이 없는 사업(평균 3.15)이 여타 재원이 있는 사업(평균 2.91)보다 정책효과가 높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고,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며, 기금만으로 운용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 정책효과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Ⅴ-46〉 설문조사 결과(설문 3-1. 지방소멸대응 정책목표의 효과)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69 (163) | 3.01 (78) | 2.41 (85) | **0.601 (2.68)**** | 2.66 (155) | 3.50 (8) | -0.841 (-1.60) |
| 기초소계 | 3.18 (529) | 3.31 (186) | 3.11 (343) | 0.192 (1.58) | 3.18 (447) | 3.18 (82) | -0.001 (-0.01) |
| 감소지역 | 3.16 (484) | 3.31 (174) | 3.08 (310) | **0.226 (1.78)*** | 3.15 (412) | 3.26 (72) | -0.116 (-0.67) |
| 관심지역 | 3.35 (45) | 3.25 (12) | 3.39 (33) | -0.143 (-0.32) | 3.57 (35) | 2.60 (10) | **0.971 (2.13)**** |
| 합 계 | 3.06 (692) | 3.22 (264) | 2.97 (428) | **0.245 (2.27)**** | 3.05 (602) | 3.21 (90) | -0.165 (-1.05)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2.69 (163) | 2.69 (160) | 3.00 (3) | -0.306 (-0.361) | 2.42 (70) | 3.07 (93) | **-0.652 (-2.89)**** |
| 기초소계 | 3.18 (529) | 3.17 (489) | 3.35 (40) | -0.182 (-0.82) | 2.85 (163) | 3.33 (366) | **-0.484 (-3.89)***** |
| 감소지역 | 3.16 (484) | 3.14 (447) | 3.43 (37) | -0.289 (-1.26) | 2.84 (149) | 3.31 (335) | **-0.472 (-3.61)***** |
| 관심지역 | 3.35 (45) | 3.43 (42) | 2.33 (3) | 1.095 (1.40) | 2.93 (14) | 3.55 (31) | -0.620 (-1.48) |
| 합 계 | 3.06 (692) | 3.05 (649) | 3.33 (43) | -0.275 (-1.26) | 2.91 (233) | 3.15 (459) | **-0.231 (-2.09)****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매우 기여함, 4점 -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대체로 기여함, 3점 -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하지 않음, 2점 -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의 기여 여부를 알수 없음, 1점 - 사업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나) 의도하지 않은 효과(설문문항 3-2)와 여타 통계의 결합

※ 설문문항과 선지의 성격상 여타 통계와의 결합이 적절하지 않아 생략함.

| |
|---|
| 설문문항 3-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의도하지 않은 (좋은/나쁜) 효과를 발생한 적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해당 비의도 효과가 무엇인지 예시를 괄호 안에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점 – 비의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3점 - 좋은 비의도 효과가 발생한 적이 있음, 1점 - 나쁜 비의도 효과가 발생한 적이 있음). |

**[효율성 평가]**

가) 기술적 효율성(설문문항 3-4)과 여타 통계의 결합

| |
|---|
| 설문문항 3-4.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의 여타 사업에 비해 지방소멸대응 측면에서 얼마나 양호·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설문 3-4)와 새로움의 정도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새로운 사업(평균 3.85)이 새롭지 않은 사업(평균 3.47)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자치단체(감소지역)에서 뚜렷하였다. 사업이력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신규 사업(평균 3.83)이 이전 계속 사업(평균 3.35)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자치단체(감소지역)에서 뚜렷하였다. 여타 재원 통계와의 결합에서 합계의 경우 여타 재원이 있는 사업(평균 3.98)이 여타 재원이 없는 사업(평균 3.71)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광역본청의 경우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광역계정을 직접사업 추진보다 기초에 대한 균등배분 등 단순 활용하는 데에서 오는 인식 차이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고 신규 사업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Ⅴ-47〉 설문조사 결과(설문 3-4. 기술적 효율성)와 여타 통계(우선순위, 새로움의 정도, 사업이력, 여타 재원)와의 결합 평가 결과

| 구분 | 평균 | 우선순위 | | | 새로움의 정도 | | |
|---|---|---|---|---|---|---|---|
| | | 상 평균 | 하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새로움 평균 | 새롭지 않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78 (163) | 3.74 (78) | 3.82 (85) | -0.079 (-0.64) | 3.79 (155) | 3.75 (8) | 0.037 (0.12) |
| 기초소계 | 3.80 (529) | 3.76 (186) | 3.83 (343) | -0.069 (-0.96) | 3.87 (447) | 3.44 (82) | **0.431 (4.60)*** ** |
| 감소지역 | 3.81 (484) | 3.76 (174) | 3.84 (310) | -0.083 (-1.13) | 3.88 (412) | 3.43 (72) | **0.448 (4.60)*** ** |
| 관심지역 | 3.71 (45) | 3.75 (12) | 3.70 (33) | 0.053 (0.16) | 3.77 (35) | 3.50 (10) | 0.271 (0.77) |
| 합 계 | 3.80 (692) | 3.75 (264) | 3.83 (428) | -0.073 (-1.18) | 3.85 (602) | 3.47 (90) | **0.382 (4.32)*** ** |

| 구분 | 평균 | 사업이력 | | | 여타 재원 | | |
|---|---|---|---|---|---|---|---|
| | | 신규 사업 평균 | 이전 계속 평균 | 평균 차이 (t값) | 있음 평균 | 없음 평균 | 평균 차이 (t값) |
| 광역본청 | 3.78 (163) | 3.78 (160) | 4.00 (3) | -0.219 (-0.47) | 3.46 (70) | 4.21 (93) | **-0.752 (-6.78)*** ** |
| 기초소계 | 3.80 (529) | 3.84 (489) | 3.30 (40) | **0.545 (4.23)*** ** | 3.88 (163) | 3.77 (366) | 0.115 (1.54) |
| 감소지역 | 3.81 (484) | 3.86 (447) | 3.27 (37) | **0.587 (4.50)*** ** | 3.92 (149) | 3.76 (335) | **0.155 (2.03)*** |
| 관심지역 | 3.71 (45) | 3.71 (42) | 3.67 (3) | 0.047 (0.08) | 3.50 (14) | 3.81 (31) | -0.306 (-0.98) |
| 합 계 | 3.80 (692) | 3.83 (649) | 3.35 (43) | **0.480 (3.88)*** ** | 3.98 (233) | 3.71 (459) | **0.277 (4.39)*** ** |

주: 1. ( ) 안은 응답자 수

2. 5점 - 매우 양호함, 4점 - 대체로 양호함, 3점 - 차이가 거의 없음, 2점 - 대체로 미흡함, 1점 - 매우 미흡함.

## 마. 설문조사 평가 요약

우선 계획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과평가 체계와 관련하여, 투자계획 평가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기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다수였다(50.9%, 설문 1-1). 자치단체 간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현재 체계가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다수였다(약 63%, 설문 1-2). 자치단체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기금 배분체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자가 다수였다(66%). 이러한 특징은 저평가 결과 지역에서 유의하게 강하였다(설문 1-3).

둘째, 주무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공제회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은 보통 이상의 수준(평균 3.62/5점)이고(설문 1-4), 공제회로부터 보통 이상의 유용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았다고(평균 3.44/5점) 답하였다(설문 1-5). 셋째, 투자계획의 충실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에서 충실히 준비했다고 답하였다(평균 3.76/5점). 다만 이러한 현상은 고집행률 지역이 저집행률 지역보다, 섬 지역이 육지 지역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자치단체 투자계획 준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자들은 모두 그 원인은 자치단체 내부에 있고 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하였다(설문 1-6). 넷째, 투자수요 예측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부분(96.7%)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방법으로 (외부 전문가가 아닌) 담당자가 간편 예측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36.3%). 한편 섬 지역이 육지 지역보다 수요조사를 엄정히 실시하였다(설문 1-7). 다섯째, 기금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하여, 응답자들 다수(74.9%)는 자치단체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 반면, 일부에서는(25.1%) 자치단체장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고 답하였다(설문 1-8). 여섯째,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다수(53.3%)는 해당 자치단체가 배분적 효율성을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고집행률 지역의 배분적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저집행률 지역보다 높았다(설문 3-3). 일곱째, 유사중복성과 관련하여, 기금 사업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자(52.3%)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7.7%)보다 다소 많았다(설문 1-9). 참고로 행정안전부(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시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계획평가 관련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활동을 하거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또는 인식은 고·저평가 결과 지역 및 섬·육지 지역 등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과정평가에 대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 자원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다수는 기금 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한 자원(예산, 인력, 장비)이 충분히 집행되었다고 답하였다(평균 3.72/5점). 이러한 현상은 고집행률 지역이 저집행률 지역보다 뚜렷했다(설문 2-1). 둘째, 전달체계 경로에서의 의견 수집과 환류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85.8%)는 의견을 수집하고 사업관리에 환류한다고 답하였다(70.5%)(설문 2-2). 셋째, 기금 사업의 정책목표(효과)의 경로분석에 대한 설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94.4%)가 대체로 또는 충분히 검토했고 답변했다. 고집행률 지역이 저집행률 지역에 비해 경로 분석에 엄밀하였다(설문 2-3). 넷째,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슈의 파악 여부 및 원천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의 응답자(89.1%)는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그 원인으로 자치단체(내부), 주민 순으로 지목하였다(설문 2-4). 이상의 과정평가 관련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활동을 하거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 또는 인식은 고·저집행률 지역 등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일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결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대다수(81.2%)는 담당하는 기금 사업이 자체 목표(예: ○○시설 건립)를 달성했고, 다수(59.3%)는 해당 사업이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섬 지역에서의 정책목표의 효과성이 육지 지역보다 높았다(설문 3-1). 둘째, 응답자의 다수(76.5%)는 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설문 3-2). 셋째, 응답자의 다수(72.1%)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의 여타 사업에 비해 지방소멸대응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답변했다(설문 3-4). 이상의 결과평가 관련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섬·육지 지역 등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일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설문조사와 여타 통계를 결합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성과평가 체계와 관련하여 기금 사업이 새롭거나 여타 재원이 없는 등 기금을 둘러싼 환경이 상대적으로 경쟁적이거나 어려운 경우 투자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자체가 기금을 배분받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설문 1-1과 여타 통계의 결합).

둘째, 자치단체 기금 사업의 경쟁도 또는 재원 여건 등에서 유리한 사업(우선순위 상, 사업이력 계속 사업, 여타 재원 있음)이 불리한 사업에 비해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작은 것을 선호하였다(설문 1-2와 여타 통계의 결합). 셋째,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기금 사업의 생성에 노력을 들이거나(새로운 사업) 여타 재원이 없어 운용 환경이 어려운 사업은 배분적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설문 3-3과 여타 통계의 결합). 넷째, 유사중복성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상위 그룹인 경우 하위 그룹인 경우에 비해 유사중복성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설문 1-9와 여타 통계의 결합). 다섯째, 집행자원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진행 완료 사업은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비해 집행자원을 충분히 집행했다는 의견이 많았다(설문 2-1과 여타 통계의 결합). 여섯째,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 환류와 관련하여 진행 완료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 전달체계 경로의 의견 환류에 적극적이라고 답하였다(설문 2-2와 여타 통계의 결합). 일곱째, 정책목표(효과) 경로분석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체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정책목표(효과) 경로분석에서

충실했다고 답하였다. 여덟째, 정책목표의 효과와 관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며, 기금만으로 운용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 정책효과가 높다고 답하였다(설문 3-1과 여타 통계의 결합). 아홉째,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신규 사업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높다고 답하였다(설문 3-4와 여타 통계의 결합).

## 2.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내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단)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인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② 추진 방식의 적절성 ③ 수혜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성으로 구성하였다.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1)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 관할 인구감소지역의 비율에 따라 정액 배분되며, 그 외 시·도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만든 배분계수를 적용한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되고 있다.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FGI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비율,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만든 배분계수를 적용한 산식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산식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광역-기초 간 연계·협력 노력,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성과평가 결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 이동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광역시 차원의 인구감소 수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표 Ⅴ-48〉 FGI 결과: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 공통 의견 | 인구감소지역의 비율, 인구감소지수 및 재정 여건 등 산식에 따라 지원하는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은 적절함 |
| A | 광역계정 배분 방식에는 이견이 없으나, 광역계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 B | 광역계정이라는 측면에서 인구감소 현황을 중심으로 산식을 통해 배분되는 원칙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의 연계가 부족해 관할 시군구의 성과평가 결과와 계획 대비 사업추진 현황(예산집행률)을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함 |
| C | 정률 및 정액의 혼합 방식으로 적정함 |
| D | 인구감소지역의 비율에 따라 정액 배분할 경우,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 이동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광역시 차원의 인구감소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E | 대체적으로 광역계정 배분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F | 인구감소지역의 비율 또는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 G | 광역계정의 특성상 배분계수를 적용한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하는 것은 적절함 |
| H | 인구감소지역의 비율과 배분계수를 적용한 산식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광역계정과 기초계정 간 연계·협력적 운용 노력이 미흡해 개선의 여지가 있음. 광역계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I | 광역계정 배분 방식은 적절함 |
| J | 현재의 배분 방식은 성과평가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액 배분 방식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은 적절하지만, 광역계정의 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고, 특히 광역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이 활용되는 용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광역자치단체마다 광역계정의 예산 활용에 있어 편차가 크고, 일부 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거나 기초계정에 예산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단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광역지원계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소멸의 원인이나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에 광역재원을 단순히 추가 투입하는 것은 광역지원계정의 운용 의미를 낮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광역계정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광역 차원의 특화된 사업(예: 인구소멸지역과 그 외 지역 간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 현재 배분체계하에서는 개별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을 배분받기 위한 경쟁 관

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협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계정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핵심인 기초계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핵심 '시' 지역(예: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광역지원계정의 일부 재원은 인구감소지역 인근의 핵심 비인구감소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재원은 비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하는 사업(예: 상생 사업, 컨소시업 사업, 공동 사업 등)에 지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시설을 타 지역 주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표 Ⅴ-49〉 FGI 결과: 광역계정의 예산의 활용(추가 의견)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광역계정 재원의 용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함. 광역계정의 재원은 기초계정 사업을 단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광역 차원의 업무에 활용되어야 함 |
| A | 광역계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 B | 광역기금은 광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광역의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예산이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 광역기금을 기초지자체의 매칭 예산으로만 사용하며, 광역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광역이 기초지자체의 단순 예산 보충을 넘어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광역 차원의 특화된 사업 발굴을 강화하여, 광역기금의 본래 의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의 강화가 필요함 |
| C |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광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함 |
| E | 광역계정 활용에 있어 시도별 편차가 큼. 일부 시도는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광역 차원의 업무에 활용하며 일부 시도는 기초계정이 부족한 지역에 n분의 1 방식으로 분배하는 데 그침. 광역 차원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기초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정 작업 등의 역할이 요구됨 |
| F | 광역계정이 기초 지자체에 일부 예산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도내 핵심 도시들이 활성화되어야 주변 소멸지역도 동반 성장 가능하므로, 광역이 주도하여 핵심 지역과 소멸위기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나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표 Ⅴ-49〉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G | 현재 광역기금이 기초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순 배분되고 있어, 초기 광역계정 설정 목적이 퇴색됨. 광역이 기초지자체와 별도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을 도출하는 구조가 부족함. 기초지자체들이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도록 계획 수립, 피드백, 관리 기능을 광역이 맡아야 함 |
| H | 광역계정의 사용 및 운용이 시군과의 연계나 협의와 같은 본래 취지와 적합하지 않음. 광역계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업에 사용될 우려가 존재함. 광역계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3년간의 사용 내역을 시도별로 검토하고, 광역계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면 기초지자체 단위로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 I | 일부 광역은 시군 사업과 중복되거나 포괄적이지 못한 사업을 제출해 의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함. 광역 단위의 재정 배분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시군 사업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광역재정의 배분 목적과 기준을 제시해, 광역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함 |

### 2)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등급별로 정액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FGI 응답자들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이 자체적으로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의 여건 분석과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과도한 목표를 제안하는 사례가 있어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등급별로 정액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등급별로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배분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최하 등급의 예산만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등급별 지방자치단체 수가 정해져 있어 적절한 예산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일한 등급을 받는 지역별로 동일한 금액이 정액으로 배분되는 방식이 예산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60억원 중 100억원만 필요한 지역도 있으나 160억원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이 보다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등급별로 동일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보다 예산의 범위 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Ⅴ-50〉 FGI 결과: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적절함. 다만 최하위 등급에도 정액의 예산을 배분할 경우 계획의 우수성과는 무관하게 예산이 배분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됨 |
| A |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과 등급별 정액 예산 배분 방식 모두 적절함.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안을 발굴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투자계획서를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 B | 기초계정을 배분하는 현 방식 자체는 적절함 |
| C | 등급에 따라 정액의 예산을 배분할 경우, 금액에 맞춰 사업계획을 제시하므로 실제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계획 내용과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받는다는 문제가 있음 |
| D |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적절하나, 평가항목의 개선이 필요함 |
| E |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과 등급별로 정액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자체는 적절함 |
| F | 등급을 구분해 정액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최하 등급의 예산만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음. 반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등급별 지방자치단체 수가 정해져 있어 적절한 예산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
| G |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함. 최하위 등급이라 하더라도 정액의 예산이 배분되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배분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있음 |
| H |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을 활용해 투자계획을 수립해 여건 분석과 사업 간 괴리가 발생하고, 투자계획의 내용에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점차 평준화되고 있는 투자계획을 토대로 하여, 등급별 정액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I |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이 적절함 |
| J | 현재의 투자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은 서면, 현장, 대면(등급 산정 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통지표와 기초의 특성과 사업의 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구분이 필요해 보임. 현재의 평가지표와 평가 방식으로는 등급을 나누어 정액 예산을 배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편 방향의 적절성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4등급 배분체계를 2등급 배분체계로 구분하고 최고 등급의 배분금액을 상향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개편 방향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배분 방식의 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V-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 평가 최소 배분액 상향(64억→72억원) 및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160억원)

〈'24년 기준〉

| 등급 | 지역 수 | 배분액(관심) |
|---|---|---|
| S | 4 | 144억(36억원) |
| A | 14 | 112억(28억원) |
| B | 26 | 80억(20억원) |
| C | 45 | 64억(16억원) |

〈'25년 기준〉

| 등급 | 지역 수 | 배분액(관심) |
|---|---|---|
| 우수 | 8 | 160억(40억원) |
| 양호 | 81 | 72억(18억원) |

주: 관심지역(18개)도 감소지역과 유사한 비율로 우수 2개 40억원, 양호 16개 18억원 지원

기초자치단체 배분 등급을 4등급 체계에서 2등급 체계로 단순화하고, 최소 배분액을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의 개편 방향에 대해 FGI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를 차지하였다. 등급의 단순화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우수 등급의 비중을 줄여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양호 등급을 받게 돼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속해서 우수 등급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동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2등급 체계로 오히려 경쟁이 심화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의 질을 높이거나 중점사업의 발굴을 포기하고 최소 등급으로 72억원을 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계획평가단에 지속해서 참여한 일부 전문가는 2등급 체계로 개편 이후, 우수 지역에 선정되기를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났고 사업계획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문가들은 최소 배분액을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책임성이 약화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반교부금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셋째, 2등급 평가 체계 개편 외에도 중점사업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편된 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중점사업을 급하게 발굴하다 보니 부지 확보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고 중점사업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10개가 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묶어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중점사업의 수,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중점사업은 2~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된 점도 문제이다. 이에 중점사업에 대한 진척도,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V-51〉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편 방향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 공통 의견 | 2등급 체계로 개편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가 적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사업의 발굴 또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감소함(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수동적인 집행 태도 유발의 가능성) |
| A | 양호 등급을 받아도 최소 72억원이 배분되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함 |
| B | 2등급 체계로 개편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줄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양호 등급에 초점을 맞춰 72억원만을 편성하고, 사업의 면밀한 기획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 C | 예산을 많이 받은 성과 우수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탄탄하고 다수의 사업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는 부실한 계획을 제출해 예산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과 격차가 지속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역량이 부족한 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역량 있는 지자체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
| D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개편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 E |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 및 행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우수 지역을 선정하고 벤치마킹을 유도하는 개편 방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 F | 10% 내외 차이로 72억원을 받는 지자체 중 일부는 충분히 160억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두 등급 체계로 인해 형평성 문제 발생함. 반면 하위 80~90% 지자체 중 일부는 72억원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으나,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예산 배정에서 10% 우수 등급 비율을 유지하다 보니, 객관적으로 우수한 지자체가 아닌, 중간 순위의 지자체가 우수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함 |
| G | 2등급 체제로 인해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지자체들은 중점사업 발굴을 포기하고 기본 등급에 머무르려는 경향을 보임. 최상위가 아닌 상위 지자체들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보상 없이 보통 등급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불공평함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 H | 2등급 체계는 평가의 수행 측면에서 용이하나 지나치게 단순화됨. n분의 1 방식과 시도별 균등 배분으로 인해 경쟁이 약화되고, 기금이 교부금처럼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의 배분 차이가 작아 경쟁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함 |

〈표 Ⅴ-51〉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I | 2등급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중점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기대 성과가 큰 지자체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동기부여가 커질 수 있음 |
| J | 우수/양호 2등급 체계로 단순화한 것은 차별성이 높지 않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자 측면에서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우수 지역과 양호 지역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의 단순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가 증가할 수 있음. 또한 나머지 90%에 동일한 예산(72억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보고서 작성에 소극적인 지역도 동일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적극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개편 방향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및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기금이 추세적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분 방식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개편 방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2등급 체계에서 3등급 체계로 등급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상위 등급의 비중은 늘리고,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간 배분 금액의 편차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상위 등급의 비중을 늘려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등급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하위 등급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액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표 Ⅴ-52〉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개편 방향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2등급 체계를 3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배분액을 높여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가장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금 배분액을 낮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A | 최하위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급하는 최소 배분액의 규모를 72억원에서 줄일 필요가 있음. 권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우수 등급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한 권역이라도 많은 우수 등급이 배분되도록 개선해야 함 |
| B | 2등급 체계는 등급 간 큰 격차로 인해 기금 확보 불확실성이 커져,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며, 지자체는 확정되지 않은 기금을 예상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계획 수립에 제한을 받음. 따라서 3등급 혹은 4등급 체계로 조정하여 각 등급에 따른 명확한 재정 확보 가능성을 제시해야하며 기본 금액을 확정하고, 추가적으로 우수 등급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

〈표 Ⅴ-52〉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C | 2등급 체계에서 3등급 체계로 개편이 필요함. 현재 10% 배정은 너무 적다고 판단하며, A등급을 15~20%로 확대하여 동기 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B등급에 60% 정도 배정하고, C등급은 20~25% 정도로 배정하여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어야 함. 예산 배분 또한 100%, 70%, 50% 수준으로 나누어, B등급은 70%, C등급은 50%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이로 인해 C등급은 A등급의 절반 정도의 예산만을 배정받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배분을 강화할 수 있음 |
| E | 2등급 배분체계인 72억~160억원 지원 체계는 평준화 경향이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함(우수 지역을 3~4개 수준에서 선정하여 200억~300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유도). 소수의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역이 이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된 발전 계획을 마련하게 하여 전반적인 지역 발전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함 |
| F | 다양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세분화된 등급 체계를 도입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G | 최소한 3등급으로 구분하여 상위 우수 지자체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려내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함 |
| H | 지자체의 기금 운용에 대한 예측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등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감축하고, 우수와 양호 지자체 간의 기금 배분액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수성 촉진 및 지자체의 성과 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최저 배분액(64억원) 유지로 예측력을 제고하고, 양호 지자체 비중을 2/3(61%)로 확대하며, 우수 지자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드림(5%➜ 9%, 144억➜ 150억원). 우수-미흡 간 배분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해(1.875(56억원)➜ 2.25(80억원)➜ 2.34(86억원)) 우수성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성과를 도모해야 함 |
| J | 현재의 2단계 평가에서 3단계 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A 우수, B 양호, C 미흡으로 구분하고, 우수는 현재의 10%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하여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양호의 경우 60% 수준, 미흡을 20% 수준으로 두어 실제 사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등급별 배분 금액은 A 100%, B 70%, C 50% 수준으로 배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함 |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진 방식의 적절성

### 1)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의 타당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설정되었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FGI 응답자들은 대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지방소멸의 '해결'이 아닌 '대응'으로 설정돼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인구축소사회로 이행하는 현상에

맞춰 향후에는 지방소멸의 '대응'에서 '순응'하는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지역 주도라는 방향 설정은 타당하지만, 실제 지역 주도성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표 V-53〉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의 타당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
| A | 민간단체 또는 주민들이 기금 운영에 참여해 기금이 주민 중심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 B |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 설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 C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적절함 |
| D | 일률적으로 인구감소를 방어하는 목적보다 '인구감소에 순응'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E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 F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목적은 재정 지원만 하면 달성이 너무 쉽고 단순함. 재정 지원 여부를 넘어서 얼마나 재정 지원은 타당하게 했는지, 지방소멸에 적절히 대응하는지가 목적에 반영되었으면 함 |
| G |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역 주도성을 강조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역 주도의 주체에서 주민들이 제외돼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지방소멸에 대응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 H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당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 평가와 배분 방식 운영으로 지역 주도성은 위축됨 |
| I | 현재 제시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대부분의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목적 자체의 수정에 대한 의견 없음 |
| J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목적성에 맞게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함 |

###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규모와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규모와 기간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충분하고,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목적 자체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마중물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금의 한시적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시점까지 기금을 운용하거나 중간 점검(예를 들어, 5년차 기금 자체의 성과

점검)을 통해 기금의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10년 한시적으로 운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인프라 운영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인프라 운영의 자립화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해 투자계획 평가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표 Ⅴ-54〉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마중물 재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 기간(10년 한시적 운용)과 규모(매년 1조원)는 적절함. 다만 기금의 매몰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지원 기간의 연장과 규모의 확대는 중간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한 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 A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기금의 기간과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중간에 평가해 기금의 연장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B | 소멸지역의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10년의 장기지원 정책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업 효과성을 위해서 10년의 기간을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5년 단위로 전반적인 추진사업의 개편 및 방향성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도 장기사업들은 3~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년을 기간으로 하되 전후반기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해 보임 |
| C | 10년이라는 기간 후에 기금을 종료하는 대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모 조정이나 방식 변경을 통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0년간 성과가 부족할 경우, 기금이 매몰 비용으로 끝날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 적합함. 향후 10년 후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라고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대표 사업이 필요함. 현재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분산되어 특정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움. 기금의 규모나 운영 기간보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표와 성과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사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효과와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 D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 E | 목적이 유사한 타 회계나 기금 등을 통합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10년 후 지방소멸지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음 |
| F | 중점 사업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10년 내 단기 사업 중심으로 예산 편성 및 기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중장기적 성과를 목표로 한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 기금의 장기적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 기금이 10년 후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지자체가 장기적이고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G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이동과 과밀로 인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방소멸의 원인임을 직시할 때, 교육과 직장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한정된 재원과 기간이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할 때 내세웠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표 Ⅴ-54〉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H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기금의 한시적 운용(10년간) 성과 및 효과 평가를 토대로 연장 및 규모 증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I | 하위 등급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0년간 지속해서 예산을 지원한 성과를 검토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 J | 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10년의 지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금액의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되, 매칭 펀드 형태로 진행하여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자체 부담을 요구함. 일본 지자체가 받는 기금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짐. 따라서 기금의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 |

###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타 재원 연계 방식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민간 재원 투자 등 다양한 재원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과 타 재원의 연계 방식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질문하였다. FGI 응답자들은 대체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만으로는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처의 국고보조금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이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점인 타 국고보조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중 하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RISE 사업은 대학을 지원해 청년들을 유입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패키지 방식의 재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 재원을 연계하는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타 국고보조사업이 중심이 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부수적인 재원이 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시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추진하던 지식산업센터에

기금을 매칭 비용으로 충당하는 데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되었다.[44]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의 중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두고, 타 재원을 보조하는 형태로 연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투자계획 평가 시 기금 사업 중심으로의 연계인지, 타 사업이 중점이고 기금이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표 V-55〉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타 재원 연계 방식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타 사업 및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그러나 기금의 재원이 타 사업 및 정책의 부수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 |
| A |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던 사업의 보조금으로 기금 재원이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
| B | 현재 다수 사업들이 타 사업 등과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보조사업 또는 재원분담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존재함. 즉 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앙 및 지자체 사업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반대의 경우들이 존재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인구소멸 대응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기금 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서 타 사업 연계는 중요하지만, 연계성의 중심에 기금 사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평가나 기금 배분 시 고려해야 할 것임 |
| C | 타 재원과의 연계 추진은 적정하나, 부족 재원 충당 및 대체 재원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일정 비율 이상으로 동일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유도 필요) |
| D | 타 재원의 연계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E | 지역에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마중물 성격의 기금사업과 타 사업/재원과 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 |
| F | 타 재원과 연계해서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획,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 G | 기금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는 연계협력 구조가 매우 중요함. 예를 들어 2025년 평가에서 특징적인 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연계가 많아졌다는 점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인프라 중심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어 긍정적인 사례로 보여짐 |
| H |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지역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 I |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도 큰 재정 투입이긴 하나 도시재생, 지역개발, 산단유치 등의 유관 사업을 통해 기금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연계 노력이 중요함 |
| J | 타 재원과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 있고, 사업유형 자체가 연계 불가한 사업과제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재원 투자와 연계될 경우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중점사업이나 주요사업에서 어떠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4) 이는 FGI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예산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정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 4)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방식의 적절성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역활력지원단'을 통해 관리·운용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1단(지역활력지원단), 3부(소멸기금관리부, 소멸기금운영부, 상생발전기금부) 중 소멸기금관리부와 소멸기금운영부이며, 소멸기금 관련 정원은 총 12명(지자체에서 파견 8명, 공제회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방식이 사업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FGI 응답자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부여된 역할이 평가 지원 기능으로 제한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사전 컨설팅이 효과적이지 않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FGI 응답자들은 대체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역활력지원단은 파견 인력으로 구성돼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시·도 연구원 또는 거점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V-56〉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방식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주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평가 지원과 사업 관리 등 제한적인 기능을 담당하므로 주어진 역할은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평가 지원과 사업 관리 외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문가와 공무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전 컨설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A | 의견 없음 |
| B | 기금 관리 체계와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 C | 현재 공제회는 주로 사업 관리에만 집중하며,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움. 평가단 지원 인력인 간사는 일정 관리와 식사·숙박 예약 등 부수적 업무만 수행하여, 사업 평가와 지자체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공제회가 직접적인 평가와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해 지자체와 평가위원 간의 실질적 연계가 부족함.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인력 확충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평가, 안내, 컨설팅, 정보 전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공제회의 내부 인력 한계 시 외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이나 지역 거점 대학의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지역의 종합 연구기관과 거점 대학을 활용해 지자체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단순 인력 충원보다 구조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구축해야 함 |
| D | 한국지방공제회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당 기능에 한해서 볼 때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음. 그러나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사 역할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표 Ⅴ-56〉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E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F | 현재 공제회는 일정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업무 외에 지자체 지원 및 기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이 공제회에 전달되지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제회의 역할이 제한적임. 공제회 인력 중 상당수가 지자체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견 기간 종료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구조에 해당함. 공제회에 장기적인 전문성과 역량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
| G | 지역 활력단 자체의 역할은 잘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 서포트가 미흡하며, 파견 공무원이 주축이라 효율성이 떨어짐. 광역지자체가 연구원 등을 통해 계획서 점검 및 현황 관리 등을 수행하여 지역 활력단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이 주축이 되어 자체 평가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성 확립을 도모해야 함 |
| H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기금 배분 및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기금 운영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가 담당하는 평가계획의 설계와 전략에 있음. 공제회의 실무적 역할을 평가하기보다는 행안부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잘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 I | 공제회가 지역 컨설팅을 통해 방향성 제시와 세부사업의 보완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가 본인의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놓치거나 세부사업이 탄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관점에서의 피드백이 필수적임. 현재 평가가 배분 방식 결정을 위한 역할에 그치는 만큼, 공제회가 보완적으로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J | 공제회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명확한 행정적 지원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함. 공제회가 평가를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호한 상황이 존재함.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에서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데, 사업 및 예산 관리의 체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작년부터 평가 이전에 사전 컨설팅을 수행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기초지자체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한 단순한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수혜 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성

### 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의 적절성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이 기금 지원이 필요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까지는 사업 내용(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이었던 반면, 2025년 평가부터는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개편의 방향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추가 질문하였다.

**[2025년 기금 투자계획 평가 세부 항목]**

1) 계획 수립의 적절성(15%): 여건 분석 적절성, 비전·전략 수립의 적절성
2) 사업 추진 타당성(35%): 입지 적정성, 사업 적합성, 사업 효과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3) 계획의 연계성(20%): 기금사업 간 연계성, 지역 간 연계·협력성, 타 사업·정책과 연계성
4) 운영관리 지속성(10%): 운영·관리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추진 실적(10%): 전전년도 성과분석 결과, 전전전년도~전전년도 배분 기금 집행실적
6) 정책 연계(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7) 정량 지표(7%): 인구감소지수, 투자협약 실적
8) 가점(10점): 중점 사업 추진 가능성
9) 감점: 기금 목적 외 사용(-3점), 사업 변경(-1점)

FGI 응답자들은 대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 계획평가 중심에서 성과평가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대부분은 인프라 사업으로 기금 운용 초기에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었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인프라 건설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효과성을 평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FGI 응답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구감소지수 등의 지표보다는 사업의 내용, 특히 기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기금 투자계획 평가항목에는 기금 집행실적 등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투입 대비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 투자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차년도에 발굴한 사업을 지속해서 집행·개선해가고 있는 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매년 신규 사업만을 발굴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머물러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부터 중점사업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앞으로는 중점사업의 추진 가능성 외에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다만 성과를 강조할 경우 목표 달성도가 용이한 사업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계획 평가 시 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우수 지역을 선별하는 절차 위주로 진행되며,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60억원에 맞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인지, 세부 사업

별로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된 것인지, 계획한 대로 사업별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별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45]

〈표 V-57〉 FGI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기금투자계획서의 '계획' 중심의 평가에서 '사업 성과 및 효과성' 중심의 평가로 전환이 필요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행률 중심의 효율성 평가보다는 효과성 중심의 평가로 개선이 요구됨 |
| A |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됨.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지자체들이 제출하는 투자계획 사업안들이 비슷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자체만의 특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안들이 나올 수 없음 |
| B | 2025년 평가부터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비중이 줄어든 것은 기존 사업평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업 내용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비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2025년 평가 개편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 C | 1~2년의 투자로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인구증가나 지역 활성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단기 성과를 강조할 경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사업으로 편중될 우려가 존재함.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조원에 미치지 못하며, 각 지자체로 배분된 개별 사업 예산이 크지 않음.<br>제한된 예산으로 인구유출 방지, 유입인구 증가,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성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성과 압박은 사업의 편중성을 초래할 수 있음. 지자체별 사업 특성과 장기적 성과를 고려해, 단기 성과와 장기적 목표 간의 균형을 맞춘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2년간 성과 중심 평가를 시행하면서 균형점을 찾고,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
| D | 사업의 계획평가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충분한 심의와 계획 단계 없이 추진되어, 건물 완성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성과는 건물이 완공된 후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활용도가 반영되지 않음 |
| E | 4~5년 차 이후에는 각 지역의 투자사업이 실질적인 중장기 성과(삶의 질, 주민 만족도 등)를 내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기존 하드웨어 사업의 중장기 성과를 평가하여 기 투자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확인해야 함. 따라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각 지역이 전년도 사업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의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함. 미진한 성과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별 계획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기금의 한시적 운영을 고려하여 기금 종료 후에도 지자체가 시설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함. 시설 자립화와 자체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5년 기금 투자계획 평가부터는 '사업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기금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완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평가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Ⅴ-57〉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F |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지 3년 이상 흘러서 지자체의 경험과 기존 사업도 누적되었고, 기존 사업들의 성과도 나와야 하는 시점이므로 앞으로는 사업 내용 외 추진경과,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반영하거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검토되었으면 함 |
| G | 2022~2024년 평가가 계획 단계를 평가하였다면 2025~2027년은 어느 정도 성과에 기반한 사업 계획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성과분석과 집행실적을 정량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 H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함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금 운용 4년 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 집행실적, 사업의 성과·효과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려나가는 조치가 필요함 |
| I | 사업 내용 평가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외에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 등의 성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재도 반영되어 있으나, 예산집행률이나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 J |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관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중점사업 및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중복의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이 있으며, 실제 보고서상에서 투자계획 평가 관련 사항을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계획 수립, 사업 추진 타당성, 운영관리 지속성, 추진 실적 등은 중점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서상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

### 2) 평가 투입요소의 적절한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투입요소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평가의 투입요소란 평가기간, 평가인력 규모,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료·데이터, 평가조직의 공정성(중립성)을 의미한다. FGI 응답자들은 2025년 평가부터 현장 실사의 부담이 추가돼 평가기간과 인력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현장 실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평가 방법으로, 모든 FGI 응답자들이 현장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평가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평가위원 간 편차가 커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사용과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가 평가과정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통일된 양식으로 관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표 Ⅴ-58〉 FGI 결과: 평가 투입요소의 적절한 제공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평가기간, 평가인력 규모,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료·데이터, 평가조직의 공정성(중립성)은 적절하게 제공되었음. 그러나 현장 실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평가자의 평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평가기간·인력 확대 또는 평가·자료 데이터의 DB화 등의 보완이 필요함 |
| A | 평가인력이 늘어 평가의 객관성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임. 서면평가보다는 현장실사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제출된 서면 투자계획서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러나 지자체가 제출하는 여러 사업안 가운데 한 곳만 현장실사를 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 B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다부처 사업들과의 연계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중기부 시군구 연구사업,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여가부, 복지부, 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사업들과 연계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어, 평가인력 중에서도 다양한 부처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평가인력 규모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 C | 1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해야 할 사업 수가 과다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1단계 평가에서는 현장 평가가 포함돼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 |
| D | 서류만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서류와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하드웨어, 특히 건설구조물의 경우 주변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류만으로는 충분한 평가가 어려우며, 현장 실사로 그 영향과 실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E | 평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기간, 평가인력 등을 확대하고 정량적 자료·데이터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앙 차원·지역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관련된 설문조사, 활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모니터링 및 차기 계획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F | 평가기간, 평가인력 규모,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료·데이터, 평가조직의 공정성(중립성)은 대체로 적절하게 제공되었다고 생각됨. 다만 평가인력의 전문성은 편차가 커서 평가인력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심사가 면밀히 이뤄졌으면 함 |
| G | 평가기간, 평가인력 규모,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료·데이터, 평가조직의 공정성(중립성)은 대체로 적절하게 제공되었다고 생각됨 |
| H | 현장평가가 추가되면서, 평가기간, 평가인력, 평가자 대우 등에서 어려움이 제기됨. 서면평가-현장조사-종합평가-대면평가(발표)의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평가자의 노고가 많아졌으나, 짧은 평가기간과 동일한 평가비용 등으로 평가자 이탈이 나타나고 있음. 지역 연구기관이나 지역 교수들을 평가자 풀에 포함하여,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평가자를 배치하고, 평가 시 컨설팅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 I | 현장 평가는 서류 평가로는 파악할 수 없는 주민들의 실제 의견과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삶의 공간에 대한 건설 구조물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상 현장 확인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현장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함. 다양한 평가위원들의 관점이 현장 평가 시 유용하며, 올해는 평가위원이 늘어나고 보완이 이루어져 작년보다 평가의 질이 개선됨 |
| J | 평가기간이 예산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인력 규모는 늘릴 필요성이 있으나, 평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 사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 3) 평가단 평가 이후 절차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금액은 평가단에서 투자계획(안)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정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구조이다. 평가단의 투자계획(안) 평가 결과 제출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가 지방소멸대응이 필요한 시·군·구에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었지를 질문하였다. FGI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이 평가단 평가 이후, 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정·보완, 조합회의의 확정 절차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정·보완 절차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져 부실한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등급의 예산인 160억원에 맞춰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양호 등급으로 최종 평가를 받을 경우 72억원에 맞춘 계획서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수정·보완 과정은 평가단 평가 이후 진행되므로 세부 사업 중 어떤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계획평가와 실제 사업의 시행이 별도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낳고 계획평가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조정 절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표 Ⅴ-59〉 FGI 결과: 평가단 평가 이후 절차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평가단 평가 이후 심의위원회 협의 및 자문, 지자체 투자계획 수정, 조합회의 최종 확정의 절차는 전반적으로 적절함 |
| A | 평가단의 투자계획(안) 평가 이후, 최종 평가 결과와 평가단에서 제시된 의견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공유 및 공개할 필요가 있음 |
| B | 현재 평가 및 배분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 C | 다층적 구조는 적절함 |
| D | 현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 E |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대면평가 이전까지 계획서의 수정·보완·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F | 평가단 평가, 심의위원회 협의 및 자문, 지자체 투자계획 수정, 조합회의 최종 확정의 절차는 전반적으로 적절함 |
| G | 부실계획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표 Ⅴ-59〉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H | 대체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음. 평가위원의 역할을 평가에 집중시키고, 기재부와 행안부는 필요 시 조정 역할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계획서를 160억원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70억원대로 줄어드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구체적인 조정 절차가 없음. 조합 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대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조정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I | 평가단의 투자계획 심의 시 제출한 의견, 특히 투자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추진상의 우려사항 등에 대해 배분 전 지자체의 보완사항 등을 점검 및 확인하는 것이 필요 |
| J | 평가단 평가 이후 절차가 적절하다고 생각됨 |

### 4) (기타)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은 인구 중심으로 산정된 인구감소지수에 의해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인구지표에 의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FGI 응답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목적이 인구감소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공통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목적과 더불어 투입된 기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심지역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도 지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증가 등 기금 투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향후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 광역시와 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지표를 구성하는 방안과 인구 도시화율 등 산업 혹은 지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는 방안도 추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표 Ⅴ-60〉 FGI 결과: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적절성

| FGI 응답자 | 답변 |
|---|---|
| 다수<br>공통 의견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표(예: 인구 도시화율, 산업 혹은 지역 발전 수준)를 보완 지표로 고려하는 방안이 있음 |
| A | 인구감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지역의 생존 노력과 역량 등을 평가해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표 Ⅴ-60〉의 계속

| FGI 응답자 | 답변 |
|---|---|
| B |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간 인구 변동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재개발 상황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지표가 적절하게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광역도는 현재 지표가 적정할 수 있으나, 광역시와 수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표 도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 C |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함 |
| D |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 E | 인구라는 큰 틀 안에서 양적 지표(총량)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인구 구성, 생활 인구)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야 함 |
| F | 모든 지역을 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큰 지자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경제, 재정 관련 지표가 늘어났으면 함. 인구지표 중에서는 생활인구에 관한 지표 추가도 검토되었으면 함 |
| G |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 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재선정 과정에는 도시화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H | 인구감소를 반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구지수 외에 지역 활력도 측정이 가능한 지표(예시: 관광소비지출액 등)를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I | 초고령 지역의 정주인구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함. 고령인구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보다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J |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두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경우 도리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역차별 이슈도 존재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판단하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감소 및 관심 단계 이전의 중간 단계 지표를 도입해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직전 단계인 관심지역의 범위를 더 넓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심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이 미리 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됨 |

### 라.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단)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인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 ② 추진 방식의 적절성 ③ 수혜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성으로 구성하였다.

계획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해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은 적절하지만 광역계정의 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고, 특히 광역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이 활용되는 용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광역자치단체마다 광역계정의 예산 활용에 편차가 크고, 일부 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거나 기초계정에 예산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단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 중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FGI 응답자들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등급별로 정액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등급별로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배분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최하 등급의 예산만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등급별 지방자치단체 수가 정해져 있어 적절한 예산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2025년 투자계획 평가부터 기초자치단체 배분 등급을 4등급 체계에서 2등급 체계로 단순화하고, 최소 배분액을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이뤄진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우수 등급의 비중을 줄이면 본래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양호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의 질을 높이거나 중점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최소 등급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지방소멸의 '해결'이 아닌 '대응'으로 설정돼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규모와 기간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며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마중물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금의 한시적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간 재원 투자 등 다양한 재원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이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점인 타 국고보조사업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타 재원을 연계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타 국고보조사업이 중심이 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부수적인 재원이 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의 중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두고, 타 재원을 보조하는 형태로 연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방식이 사업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FGI 응답자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부여된 역할이 평가지원 기능으로 제한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사전 컨설팅이 효과적이지 않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시·도 연구원 또는 거점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수혜대상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FGI 응답자들은 대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 계획평가 중심에서 성과평가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대부분은 인프라 사업으로 기금 운용 초기에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었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인프라 건설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효과성을 평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2025년부터 중점사업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앞으로는 중점사업의 추진 가능성 외에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계획 평가 시 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우수 지역을 선별하는 절차 위주로 진행되며,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FGI 응답자들은 2025년 평가부터 현장 실사의 부담이 추가돼 평가기간과 인력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평가단 평가 이후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FGI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이 평가단 평가 이후, 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정·보완, 조합회의의 확정 절차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우수 등급의 예산인 160억원에 맞춰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양호 등급으로 최종 평가를 받을 경우 72억원에 맞춘 계획서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은 인구 중심으로 산정된 인구감소지수에 의해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인구지표에 의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FGI 응답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목적이 인구감소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광역시와 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지표를 구성하는 방안과 인구 도시화율 등 산업 혹은 지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는 방안도 추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3. 실증분석 분석 내용

### 가. 결과평가 및 순영향평가

기금이 성과지표에 미친 영향을 식 (1)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61〉~〈표 V-63〉과 같다. 연도-반기의 시간고정효과와 세부사업고정효과를 통제하여 특정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추세와 특정 사업에 대해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추정하는 고정효과모형으로 세부사업의 반기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세부사업별 누적예산배분금액, 누적예산집행금액, 누적예산실집행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 즉 성과변수는 주민등록인구수, 주민등록세대수, 총전출인구수, 총전입인구수, 취업자수, 실업자수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추정된 계수값에 100을 곱하면 누적배분금액 또는 누적집행금액이 1억원 증가할 때, 성과지표가 몇 %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2024년 상반기까지의 통계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2022년 기금이 2022년 하반기에 처음 배분되어 아직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집행 등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61〉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 ln(주민등록세대수) | | |
| 누적배분금액(억원) | -2.31e-06<br>(2.76e-05) | | | -5.85e-06<br>(2.96e-05)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 5.08e-05<br>(3.34e-05) | | | 3.08e-05<br>(3.17e-05) | |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 | 7.07e-05<br>(6.29e-05) | | | 7.11e-05<br>(5.88e-05)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세부사업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3)열의 종속변수는 log(주민등록인구수+1)이며, (4)~(6)열의 종속변수는 log(주민등록세대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62〉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2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총전입자수) | | | ln(총전출자수) | | |
| 누적배분금액(억원) | 0.000152<br>(0.000382) | | | 0.000127<br>(0.000288)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 3.18e-05<br>(0.000400) | | | -0.000234<br>(0.000264) | |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 | 0.000433<br>(0.000626) | | | 0.000168<br>(0.000420)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81 | 0.981 | 0.981 | 0.992 | 0.992 | 0.992 |

주: 1. 세부사업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3)열의 종속변수는 log(총전입자수+1)이며, (4)~(6)열의 종속변수는 log(총전출자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63〉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3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취업자수) | | | ln(실업자수) | | |
| 누적배분금액(억원) | -3.45e-06<br>(0.000102) | | | -0.000400<br>(0.000513)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 -6.64e-05<br>(7.91e-05) | | | -0.000169<br>(0.000916) | |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 | -8.20e-06<br>(0.000148) | | | -0.00230<br>(0.00159)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99 | 0.999 | 0.999 | 0.862 | 0.862 | 0.863 |

주: 1. 세부사업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3)열의 종속변수는 log(취업자수+1)이며, (4)~(6)열의 종속변수는 log(실업자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64〉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4: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1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 | | | |
| 누적배분금액×산업일자리 | 2.71e-05<br>(4.88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교통 | 5.30e-05<br>(7.95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주거 | -5.01e-05<br>(5.35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노인의료 | **-0.000228*****<br>**(7.72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문화관광 | 5.11e-06<br>(3.36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보육 | **8.86e-05***<br>**(4.74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교육 | 4.40e-06<br>(5.18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복합 | 5.85e-05<br>(5.94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기타 | **-0.000144*****<br>**(3.44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인프라O | | -2.09e-05<br>(2.73e-05) | | | | | |
| 누적배분금액×인프라X | | 0.000113<br>(7.46e-05) | | | | | |
| 누적배분금액×외부네트워크O | | | -6.23e-06<br>(4.54e-05) | | | | |
| 누적배분금액×외부네트워크X | | | -2.34e-07<br>(3.10e-05) | | | | |
| 누적배분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5.43e-05<br>(4.21e-05) | | | |
| 누적배분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1.66e-05<br>(2.79e-05) | | | |
| 누적배분금액×신규 사업O | | | | | -4.29e-06<br>(2.84e-05) | | |
| 누적배분금액×신규 사업X | | | | | 1.26e-05<br>(6.18e-05) | | |
| 누적배분금액×여타 재원O | | | | | | -8.61e-08<br>(3.69e-05) | |
| 누적배분금액×여타 재원X | | | | | | -4.71e-06<br>(3.09e-05) | |
| 누적배분금액×연계사업O | | | | | | | -7.80e-06<br>(2.89e-05) |
| 누적배분금액×연계사업X | | | | | | | 5.26e-06<br>(4.65e-05)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V-65〉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5: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2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총전입자수) | | | | | | |
| 누적배분금액×산업일자리 | -4.36e-06<br>(0.000739) | | | | | | |
| 누적배분금액×교통 | -0.000735<br>(0.00114) | | | | | | |
| 누적배분금액×주거 | -0.000373<br>(0.000975) | | | | | | |
| 누적배분금액×노인의료 | 0.000259<br>(0.00105) | | | | | | |
| 누적배분금액×문화관광 | -0.000172<br>(0.000510) | | | | | | |
| 누적배분금액×보육 | 0.00115<br>(0.000811) | | | | | | |
| 누적배분금액×교육 | 0.00121<br>(0.00106) | | | | | | |
| 누적배분금액×복합 | -5.63e-05<br>(0.000683) | | | | | | |
| 누적배분금액×기타 | -0.000161<br>(0.000322) | | | | | | |
| 누적배분금액×인프라O | | 0.000117<br>(0.000420) | | | | | |
| 누적배분금액×인프라X | | 0.000365<br>(0.000513) | | | | | |
| 누적배분금액×외부네트워크O | | | 0.000275<br>(0.000543) | | | | |
| 누적배분금액×외부네트워크X | | | 8.63e-05<br>(0.000428) | | | | |
| 누적배분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0.000338<br>(0.000592) | | | |
| 누적배분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8.37e-05<br>(0.000396) | | | |
| 누적배분금액×신규 사업O | | | | | 0.000202<br>(0.000400) | | |
| 누적배분금액×신규 사업X | | | | | -0.000229<br>(0.000426) | | |
| 누적배분금액×여타 재원O | | | | | | 5.92e-05<br>(0.000481) | |
| 누적배분금액×여타 재원X | | | | | | 0.000251<br>(0.000443) | |
| 누적배분금액×연계사업O | | | | | | | 0.000114<br>(0.000490) |
| 누적배분금액×연계사업X | | | | | | | 0.000203<br>(0.000521)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66〉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5: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3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취업자수) | | | | | | |
| 누적배분금액×산업일자리 | 0.000160<br>(0.000198) | | | | | | |
| 누적배분금액×교통 | 0.000471<br>(0.000294) | | | | | | |
| 누적배분금액×주거 | -0.000215<br>(0.000185) | | | | | | |
| 누적배분금액×노인의료 | **-0.000641****<br>**(0.000306)** | | | | | | |
| 누적배분금액×문화관광 | -0.000130<br>(0.000156) | | | | | | |
| 누적배분금액×보육 | 0.000157<br>(0.000303) | | | | | | |
| 누적배분금액×교육 | 0.000357<br>(0.000397) | | | | | | |
| 누적배분금액×복합 | 2.24e-05<br>(0.000157) | | | | | | |
| 누적배분금액×기타 | 3.93e-05<br>(9.83e-05) | | | | | | |
| 누적배분금액×인프라O | | -3.88e-05<br>(0.000112) | | | | | |
| 누적배분금액×인프라X | | 0.000217<br>(0.000191) | | | | | |
| 누적배분금액×외부네트워크O | | | -7.05e-05<br>(0.000200) | | | | |
| 누적배분금액×외부네트워크X | | | 3.20e-05<br>(0.000121) | | | | |
| 누적배분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0.000228<br>(0.000141) | | | |
| 누적배분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7.81e-05<br>(0.000120) | | | |
| 누적배분금액×신규 사업O | | | | | 2.08e-05<br>(0.000104) | | |
| 누적배분금액×신규 사업X | | | | | -0.000185<br>(0.000187) | | |
| 누적배분금액×여타 재원O | | | | | | 3.59e-05<br>(0.000158) | |
| 누적배분금액×여타 재원X | | | | | | -4.60e-05<br>(0.000116) | |
| 누적배분금액×연계사업O | | | | | | | 5.67e-05<br>(0.000149) |
| 누적배분금액×연계사업X | | | | | | | -8.63e-05<br>(0.000125)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67〉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7: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4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 | | | |
| 누적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109*** | | | | | | |
| | **(6.39e-05)** | | | | | | |
| 누적집행금액×교통 | 0.000279 | | | | | | |
| | (0.000214) | | | | | | |
| 누적집행금액×주거 | 3.00e-05 | | | | | | |
| | (5.47e-05) | | | | | | |
| 누적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128 | | | | | | |
| | (0.000117) | | | | | | |
| 누적집행금액×문화관광 | 1.64e-05 | | | | | | |
| | (4.95e-05) | | | | | | |
| 누적집행금액×보육 | **0.000471**** | | | | | | |
| | **(0.000191)** | | | | | | |
| 누적집행금액×교육 | 0.000196 | | | | | | |
| | (0.000130) | | | | | | |
| 누적집행금액×복합 | -1.84e-06 | | | | | | |
| | (3.13e-05) | | | | | | |
| 누적집행금액×기타 | -8.84e-05 | | | | | | |
| | (9.50e-05) | | | | | | |
| 누적집행금액×인프라O | | 2.54e-05 | | | | | |
| | | (3.24e-05) | | | | | |
| 누적집행금액×인프라X | | **0.000211***** | | | | | |
| | | **(6.75e-05)** | | | | | |
| 누적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O | | | 2.50e-05 | | | | |
| | | | (4.29e-05) | | | | |
| 누적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X | | | **7.44e-05*** | | | | |
| | | | **(4.05e-05)** | | | | |
| 누적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3.32e-05 | | | |
| | | | | (4.34e-05) | | | |
| 누적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8.57e-05**** | | | |
| | | | | **(3.85e-05)** | | | |
| 누적집행금액×신규 사업O | | | | | 4.15e-05 | | |
| | | | | | (3.13e-05) | | |
| 누적집행금액×신규 사업X | | | | | 0.000123 | | |
| | | | | | (0.000110) | | |
| 누적집행금액×여타 재원O | | | | | | 6.12e-05 | |
| | | | | | | (3.72e-05) | |
| 누적집행금액×여타 재원X | | | | | | 3.94e-05 | |
| | | | | | | (4.89e-05) | |
| 누적집행금액×연계사업O | | | | | | | 5.61e-05 |
| | | | | | | | (4.63e-05) |
| 누적집행금액×연계사업X | | | | | | | 4.13e-05 |
| | | | | | | | (4.59e-05)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68〉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8: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5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총전입자수) | | | | | | |
| 누적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595<br>(0.000678) | | | | | | |
| 누적집행금액×교통 | 0.00339<br>(0.00223) | | | | | | |
| 누적집행금액×주거 | -0.000481<br>(0.000643) | | | | | | |
| 누적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468<br>(0.000709) | | | | | | |
| 누적집행금액×문화관광 | -0.000498<br>(0.000577) | | | | | | |
| 누적집행금액×보육 | -0.00122<br>(0.00183) | | | | | | |
| 누적집행금액×교육 | 0.000971<br>(0.00137) | | | | | | |
| 누적집행금액×복합 | -0.000469<br>(0.000477) | | | | | | |
| 누적집행금액×기타 | 0.000901<br>(0.00139) | | | | | | |
| 누적집행금액×인프라O | | 5.10e-05<br>(0.000435) | | | | | |
| 누적집행금액×인프라X | | -8.87e-05<br>(0.000830) | | | | | |
| 누적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O | | | 0.000222<br>(0.000504) | | | | |
| 누적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X | | | -0.000143<br>(0.000467) | | | | |
| 누적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2.23e-05<br>(0.000518) | | | |
| 누적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5.43e-05<br>(0.000442) | | | |
| 누적집행금액×신규 사업O | | | | | 7.73e-05<br>(0.000420) | | |
| 누적집행금액×신규 사업X | | | | | -0.000320<br>(0.00108) | | |
| 누적집행금액×여타 재원O | | | | | | -0.000326<br>(0.000530) | |
| 누적집행금액×여타 재원X | | | | | | 0.000422<br>(0.000459) | |
| 누적집행금액×연계사업O | | | | | | | 3.41e-05<br>(0.000498) |
| 누적집행금액×연계사업X | | | | | | | 2.77e-05<br>(0.000531)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69〉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9: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6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취업자수) | | | | | | |
| 누적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140<br>(0.000131) | | | | | | |
| 누적집행금액×교통 | -0.000236<br>(0.000568) | | | | | | |
| 누적집행금액×주거 | -4.11e-06<br>(0.000123) | | | | | | |
| 누적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578****<br>**(0.000280)** | | | | | | |
| 누적집행금액×문화관광 | -0.000148<br>(0.000143) | | | | | | |
| 누적집행금액×보육 | 8.81e-05<br>(0.000339) | | | | | | |
| 누적집행금액×교육 | -5.68e-05<br>(0.000253) | | | | | | |
| 누적집행금액×복합 | -0.000120<br>(9.66e-05) | | | | | | |
| 누적집행금액×기타 | -6.94e-05<br>(0.000291) | | | | | | |
| 누적집행금액×인프라O | | -6.55e-05<br>(9.09e-05) | | | | | |
| 누적집행금액×인프라X | | -7.23e-05<br>(0.000121) | | | | | |
| 누적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O | | | -0.000103<br>(0.000100) | | | | |
| 누적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X | | | -3.33e-05<br>(0.000115) | | | | |
| 누적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0.000200<br>(0.000121) | | | |
| 누적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1.10e-05<br>(9.56e-05) | | | |
| 누적집행금액×신규 사업O | | | | | -3.73e-05<br>(7.89e-05) | | |
| 누적집행금액×신규 사업X | | | | | -0.000292<br>(0.000256) | | |
| 누적집행금액×여타 재원O | | | | | | -4.52e-06<br>(0.000125) | |
| 누적집행금액×여타 재원X | | | | | | -0.000134<br>(8.87e-05) | |
| 누적집행금액×연계사업O | | | | | | | -1.00e-05<br>(0.000103) |
| 누적집행금액×연계사업X | | | | | | | -0.000168<br>(0.000130)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V-70〉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0: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7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153**<br>**(6.92e-05)**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교통 | 4.03e-05<br>(0.000170)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거 | -3.32e-05<br>(8.95e-05)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118<br>(0.000116)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문화관광 | -8.77e-07<br>(5.06e-05)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보육 | **0.000639*****<br>**(0.000218)**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교육 | **0.000302***<br>**(0.000174)**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복합 | 9.96e-05<br>(0.000168)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기타 | -0.000111<br>(0.000119)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인프라O | | 5.87e-05<br>(6.39e-05)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인프라X | | 0.000240<br>(0.000164)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O | | | 8.80e-06<br>(0.000104) | | | | |
| 누적실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X | | | 9.57e-05<br>(6.15e-05) |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8.47e-05<br>(0.000112)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0.000104<br>(6.85e-05) | | | |
| 누적실집행금액×신규 사업O | | | | | 8.44e-05<br>(6.41e-05) | | |
| 누적실집행금액×신규 사업X | | | | | -5.16e-05<br>(9.36e-05) | | |
| 누적실집행금액×여타 재원O | | | | | | 8.53e-05<br>(6.29e-05) | |
| 누적실집행금액×여타 재원X | | | | | | 3.60e-05<br>(8.91e-05) | |
| 누적실집행금액×연계사업O | | | | | | | 8.67e-05<br>(9.69e-05) |
| 누적실집행금액×연계사업X | | | | | | | 4.54e-05<br>(4.94e-05)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V-71〉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1: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8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총전입자수)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864<br>(0.00117)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교통 | **0.00608***<br>**(0.00307)**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거 | -0.000603<br>(0.00123)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140<br>(0.000612)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문화관광 | -0.000896<br>(0.000816)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보육 | -0.00162<br>(0.00213)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교육 | **0.00261****<br>**(0.00129)**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복합 | 0.00112<br>(0.00188)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기타 | 0.00180<br>(0.00172)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인프라O | | 0.000582<br>(0.000673)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인프라X | | -0.00166<br>(0.00168)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O | | | 0.00153<br>(0.00100) | | | | |
| 누적실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X | | | -1.01e-05<br>(0.000596) |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0.000631<br>(0.000811)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0.000391<br>(0.000720) | | | |
| 누적실집행금액×신규 사업O | | | | | 0.000645<br>(0.000638) | | |
| 누적실집행금액×신규 사업X | | | | | -0.00146<br>(0.00192) | | |
| 누적실집행금액×여타 재원O | | | | | | -0.000211<br>(0.000669) | |
| 누적실집행금액×여타 재원X | | | | | | **0.00196****<br>**(0.000937)** | |
| 누적실집행금액×연계사업O | | | | | | | 0.000958<br>(0.000930) |
| 누적실집행금액×연계사업X | | | | | | | -0.000399<br>(0.000549)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0.981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72〉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2: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9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취업자수)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203<br>(0.000183)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교통 | -0.000246<br>(0.000835)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거 | 0.000371<br>(0.000333)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633****<br>**(0.000291)**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문화관광 | -0.000145<br>(0.000226)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보육 | 0.000433<br>(0.000462)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교육 | 0.000105<br>(0.000315)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복합 | 2.55e-05<br>(0.000486)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기타 | 7.33e-06<br>(0.000431) |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인프라O | | -1.69e-05<br>(0.000154)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인프라X | | 0.000114<br>(0.000458) | | | | | |
| 누적실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O | | | -9.89e-05<br>(0.000287) | | | | |
| 누적실집행금액×외부네트워크X | | | 2.83e-05<br>(0.000164) |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O | | | | **-0.000415***<br>**(0.000220)** | | | |
| 누적실집행금액×주민참여체계X | | | | 7.78e-05<br>(0.000150) | | | |
| 누적실집행금액×신규 사업O | | | | | 5.52e-05<br>(0.000128) | | |
| 누적실집행금액×신규 사업X | | | | | -0.000574<br>(0.000387) | | |
| 누적실집행금액×여타 재원O | | | | | | 3.02e-05<br>(0.000182) | |
| 누적실집행금액×여타 재원X | | | | | | -9.96e-05<br>(0.000236) | |
| 누적실집행금액×연계사업O | | | | | | | -8.14e-06<br>(0.000196) |
| 누적실집행금액×연계사업X | | | | | | | -8.29e-06<br>(0.000194)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사업의 효과성이 평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업의 접근 방식 혹은 구성요소에 따라 효과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사업의 주요 특성에 따른 사업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V-64〉~〈표 V-72〉와 같다. 성과지표는 주민등록인구수, 총전입자수, 취업자수가 사용되었으며, 사업효과의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의 특성으로는 사업분야, 인프라조성 여부, 외부네트워크 유무, 주민참여체계 유무, 신규 사업 여부, 여타 재원 유무, 연계사업 유무 총 7개가 사용되었다. 추정된 계수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하더라도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 누락변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업 분야가 노인의료인 경우에 배분금액 또는 집행금액의 증가가 인구수와 취업자 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결과는 성과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업분야가 보육인 경우에 주민등록인구수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며, 사업분야가 교육인 경우에는 총전입자수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된다. 또한 사업이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설 완공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순효과의 분석이 아니므로 결과의 해석과 함의 도출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V-73〉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3: 집행률에 따른 효과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ln(주민등록세대수) | ln(총전입자수) | ln(총전출자수) | ln(취업자수) | ln(실업자수) |
| 누적실집행률(%) | 1.26e-05 | 1.39e-05 | 0.000256 | **0.000285**** | -5.24e-06 | **-0.000951**** |
| | (1.50e-05) | (1.49e-05) | (0.000180) | **(0.000129)** | (3.86e-05) | **(0.000415)**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0.981 | 0.992 | 0.999 | 0.864 |

주: 1. 세부사업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74〉 세부사업단위 결과평가 14: 집행률에 따른 효과의 이질성분석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7) |
|---|---|---|---|---|---|---|---|
| | ln(실업자수) | | | | | | |
| 누적실집행률×산업일자리 | **-0.00235*** (0.000754)** | | | | | | |
| 누적실집행률×교통 | -0.00140 (0.00152) | | | | | | |
| 누적실집행률×주거 | -0.00162* (0.000909) | | | | | | |
| 누적실집행률×노인의료 | 0.000623 (0.000536) | | | | | | |
| 누적실집행률×문화관광 | -0.000756 (0.000461) | | | | | | |
| 누적실집행률×보육 | **-0.00265** (0.00131)** | | | | | | |
| 누적실집행률×교육 | -0.000377 (0.000530) | | | | | | |
| 누적실집행률×복합 | 0.000147 (0.000282) | | | | | | |
| 누적실집행률×기타 | 0.000247 (0.000516) | | | | | | |
| 누적실집행률×인프라O | | **-0.000877** (0.000414)** | | | | | |
| 누적실집행률×인프라X | | **-0.00103* (0.000592)** | | | | | |
| 누적실집행률×외부네트워크O | | | **-0.00146** (0.000691)** | | | | |
| 누적실집행률×외부네트워크X | | | -0.000667 (0.000431) | | | | |
| 누적실집행률×주민참여체계O | | | | **-0.00126* (0.000681)** | | | |
| 누적실집행률×주민참여체계X | | | | **-0.000885** (0.000439)** | | | |
| 누적실집행률×신규사업O | | | | | **-0.000849** (0.000412)** | | |
| 누적실집행률×신규사업X | | | | | -0.00166 (0.00134) | | |
| 누적실집행률×여타 재원O | | | | | | -0.000701 (0.000563) | |
| 누적실집행률×여타 재원X | | | | | | **-0.00106** (0.000528)** | |
| 누적실집행률×연계사업O | | | | | | | **-0.000922* (0.000505)** |
| 누적실집행률×연계사업X | | | | | | | -0.000983 (0.000607)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0.866 | 0.864 | 0.864 | 0.864 | 0.864 | 0.864 | 0.864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기금의 짧은 운용 기간으로 인한 저조한 집행률이 사업성과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는 주요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누적실집행률이 주요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V-73〉과 같다. 집행률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총전출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순효과 분석이 아니므로 총전출자 수의 증가는 누락변수편의의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 수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단기 효과성을 판단하는 성과지표로는 부적절하나, 〈표 V-74〉의 이질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주요 특성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산집행률이 높을 때, 사업분야가 산업일자리 또는 보육인 경우,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는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 등에서 실업자 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된다.

〈표 V-75〉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1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 ln(주민등록세대수) | | |
| 누적배분금액(억원) | -0.000324***<br>(3.73e-05) | | | -0.000295***<br>(3.47e-05)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 -0.000488***<br>(7.71e-05) | | | -0.000438***<br>(6.91e-05) | |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 | -0.000714***<br>(0.000119) | | | -0.000681***<br>(0.000107)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지자체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3,435 | 3,435 | 3,435 | 3,435 | 3,435 | 3,435 |
| Adjusted R-squared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0.999 |

주: 1. 기초지자체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3)열의 종속변수는 log(주민등록인구수+1)이며, (4)~(6)열의 종속변수는 log(주민등록세대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76〉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2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총전입자수) | | | ln(총전출자수) | | |
| 누적배분금액(억원) | **-0.000258**<br>**(0.000104)** | | | **-0.000489*****<br>**(7.61e-05)**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 **-0.000551****<br>**(0.000247)** | | | **-0.000845*****<br>**(0.000165)** | |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 | -0.000543<br>(0.000362) | | | **-0.000988*****<br>**(0.000235)**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지자체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3,435 | 3,435 | 3,435 | 3,435 | 3,435 | 3,435 |
| Adjusted R-squared | 0.988 | 0.988 | 0.988 | 0.994 | 0.994 | 0.994 |

주: 1. 기초지자체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3)열의 종속변수는 log(총전입자수+1)이며, (4)~(6)열의 종속변수는 log(총전출자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77〉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3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취업자수) | | | ln(실업자수) | | |
| 누적배분금액(억원) | **-0.000397*****<br>**(4.65e-05)** | | | **-0.000397*****<br>**(4.65e-05)**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 **-0.000585*****<br>**(8.07e-05)** | | | **-0.000585*****<br>**(8.07e-05)** | |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 | **-0.000740*****<br>**(0.000147)** | | | **-0.000740*****<br>**(0.000147)**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지자체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2,843 | 2,843 | 2,843 | 2,843 | 2,843 | 2,843 |
| Adjusted R-squared | 0.998 | 0.998 | 0.998 | 0.998 | 0.998 | 0.998 |

주: 1. 기초지자체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3)열의 종속변수는 log(취업자수+1)이며, (4)~(6)열의 종속변수는 log(실업자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V-78〉 기초지자체 단위 결과평가 4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ln(주민등록세대수) | ln(총전입자수) | ln(총전출자수) | ln(취업자수) | ln(실업자수) |
| 누적실집행률(%) | 3.33e-05<br>(4.12e-05) | 4.61e-05<br>(3.68e-05) | 0.000453<br>(0.000748) | 0.000390<br>(0.000450) | 4.03e-05<br>(0.000110) | -0.00182<br>(0.00120)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428 | 428 | 428 | 428 | 428 | 42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0.983 | 0.993 | 0.999 | 0.876 |

주: 1. 기초지자체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3)열의 종속변수는 log(취업자수+1)이며, (4)~(6)열의 종속변수는 log(실업자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식 (1)의 고정효과모형을 기초지자체단위로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V-75〉~〈표 V-78〉과 같다. 연도-반기 단위 시간고정효과가 사용된 점은 동일하나, 세부사업고정효과 대신 기초지자체고정효과가 통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수의 부호가 음(-)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추정치는 역인과관계 또는 시간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표 V-75〉에서 배분금액 또는 집행금액이 증가하면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배분 또는 집행금액이 큰 지역일수록 인구감소 추세가 더 뚜렷하기 때문일 수 있다. 〈표 V-76〉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분 또는 집행금액이 클수록 총전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표 V-77〉에서는 기금이 취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누락변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78〉은 지자체 단위에서의 누적실집행률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로, 앞서 사업단위 분석에서의 결과와 달리 집행률은 성과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기금이 총전출자 수의 감소(〈표 V-76〉)와 실업자수의 감소(〈표 V-77〉)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역시 누락변수 등의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순효과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022년 기금사업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 시행 전 2년(2020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대비 사업 시행 후 2년(2022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의 기간에 대해서 식 (3)의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79〉~〈표 V-81〉과 같다. 〈표 V-79〉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비수혜지역 간 배분금액의 차이가, 〈표 V-80〉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등급 간 배분금액의 차이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하였다. 2022년과 2023년 평가결과는 거의 유사한데, 대구 남구가 2022년 평가에는 감소지역 D등급이었으나 2023년에는 감소지역 C등급으로 변경되었고, 반대로 경남 함안군이 2022년에는 C등급이었으나, 2023년에는 D등급으로 변경되었다. 〈표 V-79〉와 〈표 V-80〉의 (1)열, (3)열, (5)열에서는 비수혜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성과지표의 증감을 비교하고 있으며, (2)열, (4)열, (6)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E등급 지역 대비 A, B, C, D등급 지역의 상대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V-79〉와 〈표 V-80〉의 대부분의 계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금이 인구 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인데,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공통추세가정, 즉 기금배정이 없었더라면 또는 예산배분금액의 차이가 없었더라면 처치군과 대조군 간에 나타났을 성과지표의 추세가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표 V-81〉에서는 집행률이 높은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업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비수혜지역 대비 예산집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의 성과지표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하였다.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누적실집행률이 50% 이상인 9개 시군구는 고집행률 지역으로, 50% 미만인 94개 시군구는 저집행률 지역으로 분류를 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계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금사업 시행 이전의 추세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표 V-79〉 기초지자체 단위 순영향평가 1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ln(주민등록세대수) | | ln(총전입자수) | |
| Post × 감소지역 | **-0.0245*** (0.00343)** | | **-0.0227*** (0.00314)** | | -0.00426 (0.0171) | |
| Post × 관심지역 | **-0.0196*** (0.00569)** | | **-0.0159*** (0.00511)** | | **-0.0493** (0.0243)** | |
| Post × 감소지역A | | -0.00480 (0.00625) | | -0.00399 (0.00606) | | 0.0370 (0.0621) |
| Post × 감소지역B | | -0.00704 (0.00507) | | -0.00603 (0.00563) | | -0.0471 (0.0470) |

〈표 Ⅴ-79〉의 계속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ln(주민등록세대수) | | ln(총전입자수) | |
| Post × 감소지역C | | **-0.00910*** | | **-0.00914**** | | 0.00643 |
| | | **(0.00461)** | | **(0.00444)** | | (0.0395) |
| Post × 감소지역D | | **-0.0132***** | | **-0.00976**** | | -0.0501 |
| | | **(0.00479)** | | **(0.00445)** | | (0.0376)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1,832 | 712 | 1,832 | 712 | 1,832 | 712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1.000 | 1.000 | 0.990 | 0.970 |

주: 1. 기초지자체단위 이중차분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2)열의 종속변수는 log(주민등록인구수+1), (3)~(4)열의 종속변수는 log(주민등록세대수+1), (5)~(6)열의 종속변수는 log(총전입자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Ⅴ-80〉 기초지자체 단위 순영향평가 2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총전출자수) | | ln(취업자수) | | ln(실업자수) | |
| Post × 감소지역 | **-0.0218**** | | **-0.0369***** | | **0.0524**** | |
| | **(0.0102)** | | **(0.00534)** | | **(0.0204)** | |
| Post × 관심지역 | -0.00836 | | **-0.0269***** | | 0.0213 | |
| | (0.0162) | | **(0.00641)** | | (0.0360) | |
| Post × 감소지역A | | **-0.0460*** | | -0.0101 | | -0.0878 |
| | | **(0.0263)** | | (0.0125) | | (0.118) |
| Post × 감소지역B | | **-0.0630*** | | -0.0184 | | 0.00541 |
| | | **(0.0320)** | | (0.0153) | | (0.0569) |
| Post × 감소지역C | | -0.0211 | | -0.00320 | | -0.00780 |
| | | (0.0199) | | (0.0133) | | (0.0388) |
| Post × 감소지역D | | **-0.0554**** | | -0.00103 | | 0.0398 |
| | | **(0.0217)** | | (0.0144) | | (0.0422)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1,832 | 712 | 1,758 | 705 | 1,757 | 704 |
| Adjusted R-squared | 0.996 | 0.988 | 0.999 | 0.997 | 0.965 | 0.781 |

주: 1. 기초지자체단위 이중차분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1)~(2)열의 종속변수는 log(총전출자수+1), (3)~(4)열의 종속변수는 log(취업자수+1), (5)~(6)열의 종속변수는 log(실업자수+1)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V-81〉 기초지자체 단위 순영향평가 3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ln(주민등록세대수) | ln(총전입자수) | ln(총전출자수) | ln(취업자수) | ln(실업자수) |
| Post × 고집행률지역 | **-0.0231*** ** | **-0.0255*** ** | 0.0403 | 0.00398 | **-0.0319*** ** | -0.00844 |
| | **(0.00567)** | **(0.00602)** | (0.0499) | (0.0182) | **(0.00628)** | (0.0297) |
| Post × 저집행률지역 | **-0.0238*** ** | **-0.0212*** ** | -0.0166 | **-0.0217** ** | **-0.0356*** ** | **0.0524** ** |
| | **(0.00346)** | **(0.00314)** | (0.0162) | **(0.00997)** | **(0.00519)** | **(0.0202)**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세부사업고정효과 | O | O | O | O | O | O |
| Observations | 1,832 | 1,832 | 1,832 | 1,832 | 1,758 | 1,757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0.990 | 0.996 | 0.999 | 0.965 |

주: 1. 기초지자체단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2024년 상반기 기준 누적실집행률이 50% 이상인 지역은 고집행률지역(9개 시군구), 50% 미만인 지역은 저집행률지역(94개 시군구)으로 분류

2.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그림 V-2] 기초지자체단위 순영향평가 4: 주민등록인구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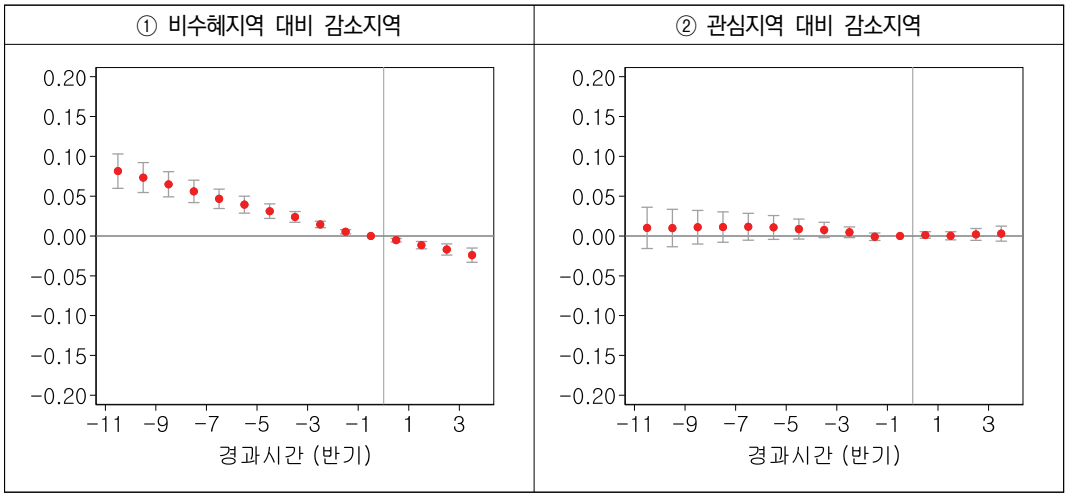

[그림 Ⅴ-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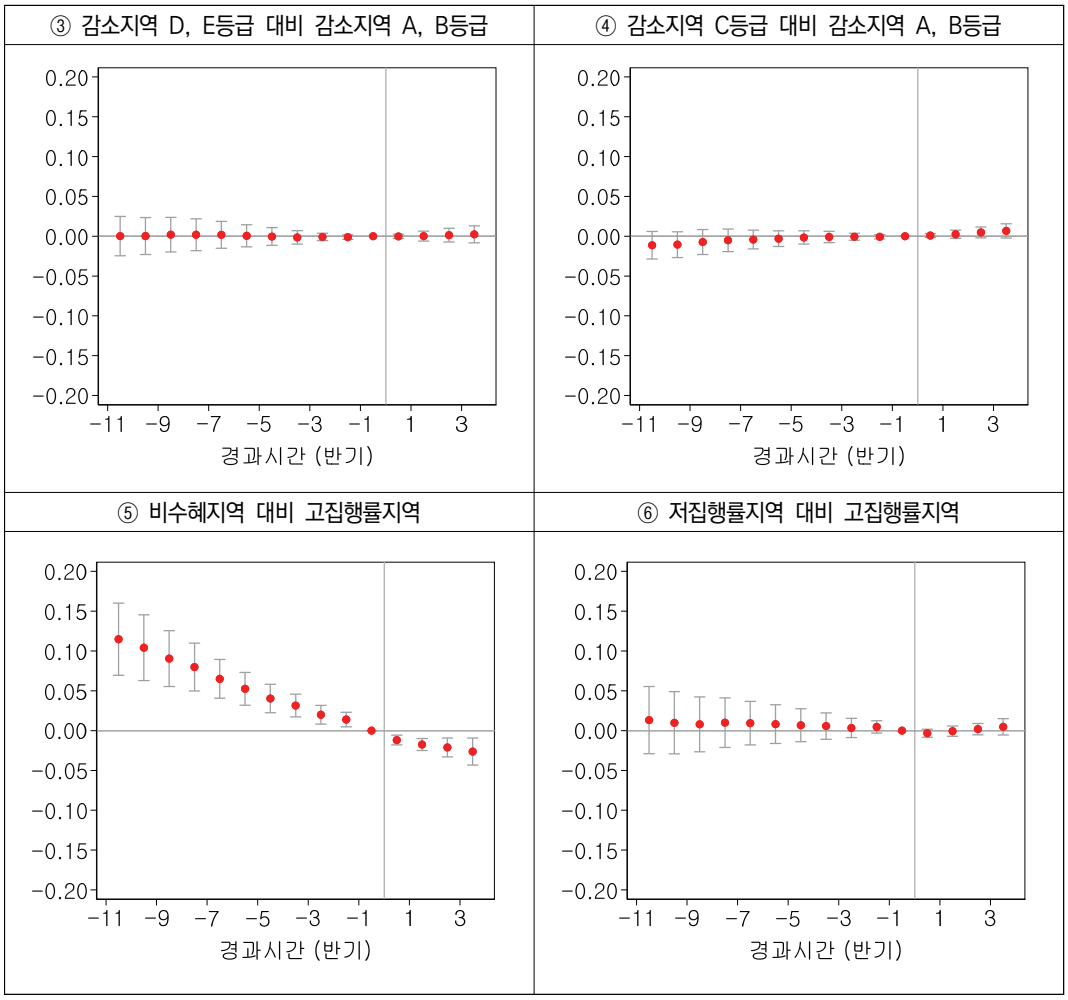


주: 1. 기초지자체 단위 동적이중차분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종속변수는 log(주민등록인구수+1)
2. 음영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그림 Ⅴ-3] 기초지자체단위 순영향평가 5: 총전출자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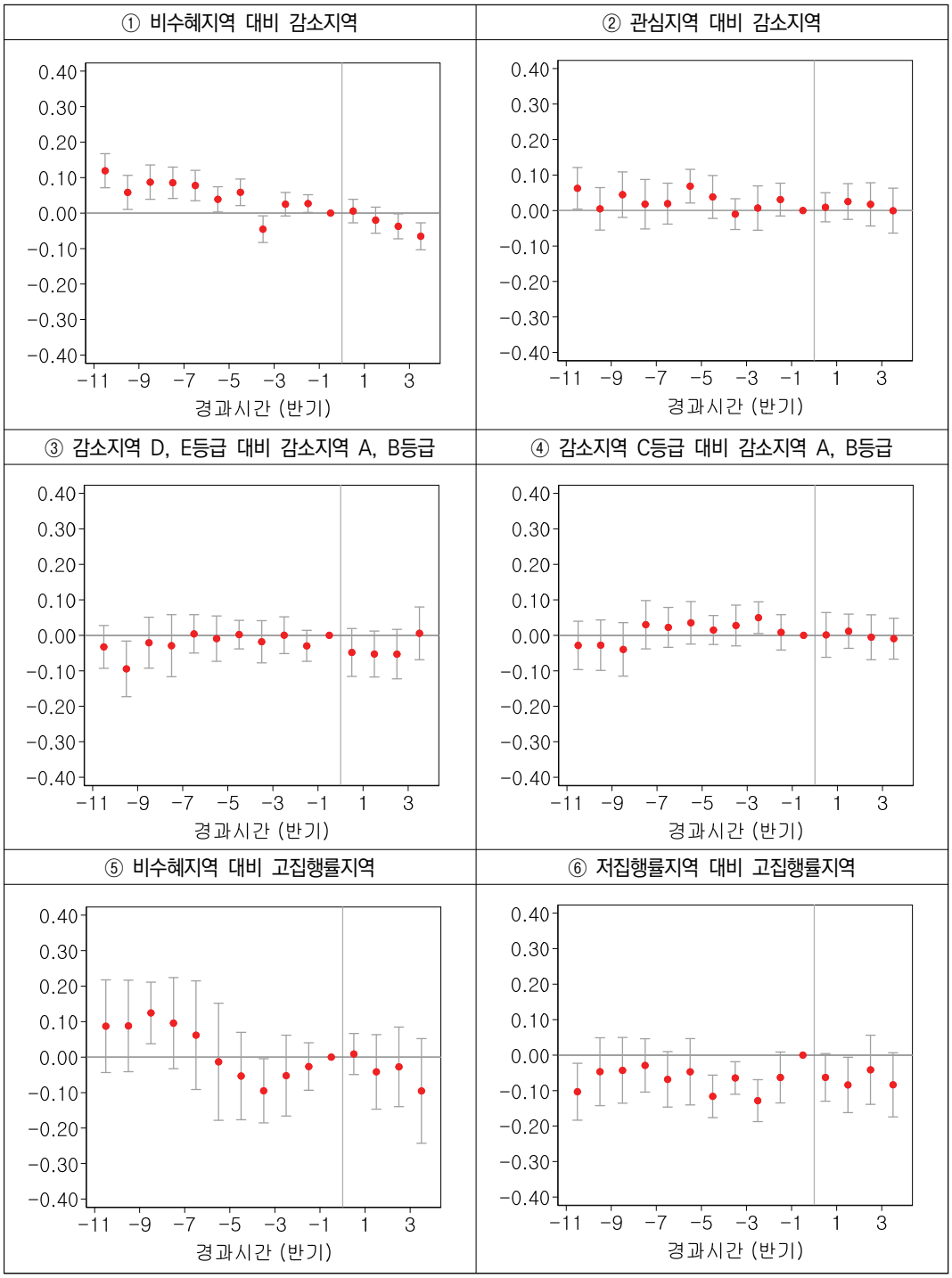


주: 1. 기초지자체 단위 동적이중차분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종속변수는 log(총전출자수+1)
2. 음영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그림 V-4] 기초지자체단위 순영향평가 6: 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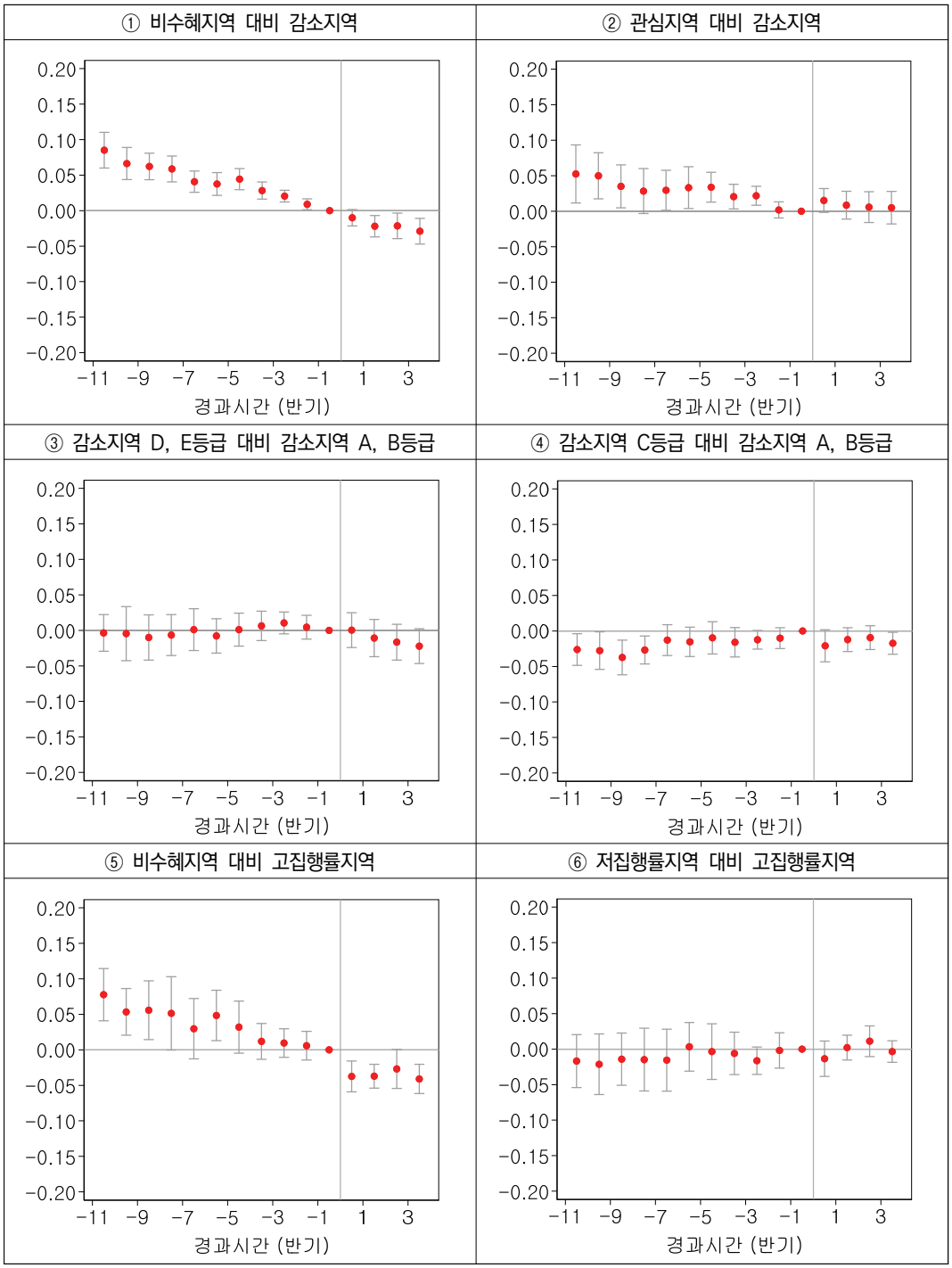


주: 1. 기초지자체 단위 동적이중차분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종속변수는 log(취업자수+1)
2. 음영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공통추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 (4)의 동적이중차분법 모형을 활용한 결과는 [그림 Ⅴ-2]~[그림 Ⅴ-4]와 같다. 2017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15반기(7.5년)에 대해서 대조군 대비 처지군의 상대적인 성과를 비교하는 모형으로, 분석의 기준 기간은 기금 배정 직전 반기인 2022년 상반기이다. 즉 추정된 결괏값은 2022년 상반기의 성과지표 대비 기준 시점 성과지표의 평균적인 변화분에 대하여 처지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값이다. 각 그림의 ①에서 처치군은 인구감소지역, 대조군은 비수혜지역인데 사업 시행 전 이미 두 그룹의 추세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그 추세가 사업 시행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구감소지역은 비수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업 시행이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Ⅴ-76〉과 〈표 Ⅴ-77〉에서 추정된 결과는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상이한 추세로 인해, 인과효과라고 간주할 수 없음을 각 그림의 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치군과 대조군이 더 유사할수록 공통추세 가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각 그림의 ②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비수혜지역이 아닌 관심지역과 비교를 하였다. 사업 시행 전 기간의 계수값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추세 가정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인과효과(사업 시행 이후의 계수)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성과지표의 추세 측면에서 더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A, B등급과 인구감소지역의 D, E등급과의 비교(각 그림의 ③) 및 인구감소지역의 A, B등급과 인구감소지역의 C등급과의 비교(각 그림의 ④)에서도 처치 전의 추세는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후에 뚜렷한 인과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 각 그림의 ⑤에서 처치군은 고집행률 지역, 비수혜지역인데, 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이 사업 시행 전의 추세에 변화를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집행률 지역을 저집행률 지역과 비교한 각 그림의 ⑥에서는 처치 전에 공통된 추세는 나타나고 있으나 처치 후의 인과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예산배정액의 차이가 성과지표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나. 과정평가

순영향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금사업의 인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기적 성과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인지, 또는 효과가 아직 나타

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과정평가 및 계획평가를 통해서도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업의 특성이 사업의 집행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과정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표 Ⅴ-82〉 과정평가: 사업 특성에 따른 예산집행 수준

| 종속변수 | (1) | (2) | (3) | (4)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누적집행률(%) | 누적실집행률(%) |
| 산업일자리 | 1.281 | 0.574 | 1.562 | 2.807 |
| | (1.463) | (0.534) | (4.500) | (3.390) |
| 교통 | 1.615 | 0.998 | 11.95 | 7.557 |
| | (2.270) | (0.968) | (9.188) | (4.912) |
| 주거 | -1.360 | 0.0583 | -4.277 | 3.902 |
| | (1.520) | (0.668) | (4.438) | (3.372) |
| 노인의료 | 0.304 | 1.765 | -2.261 | 3.475 |
| | (1.279) | (1.085) | (4.979) | (4.611) |
| 문화관광 | -0.662 | -0.197 | **-7.141*** | -1.363 |
| | (1.215) | (0.486) | **(4.150)** | (2.965) |
| 보육 | -1.851 | -1.032 | -2.376 | 1.237 |
| | (1.406) | (0.743) | (6.216) | (4.462) |
| 교육 | 0.0549 | 0.183 | 1.375 | 1.330 |
| | (1.282) | (0.653) | (4.544) | (3.410) |
| 복합 | 0.487 | -0.425 | -2.533 | -2.862 |
| | (1.806) | (0.634) | (5.275) | (3.537) |
| 인프라 O | -0.217 | 0.133 | **-11.04***** | **-6.173***** |
| | (0.649) | (0.284) | **(2.418)** | **(1.730)** |
| 외부네트워크 O | 0.728 | -0.595 | **5.672*** | 0.137 |
| | (0.838) | (0.467) | **(3.288)** | (2.001) |
| 주민참여 O | 0.143 | **0.641*** | -1.055 | 1.438 |
| | (0.669) | **(0.369)** | (3.037) | (2.604) |
| 신규 사업 O | 0.480 | 0.531 | -1.622 | -4.130 |
| | (1.286) | (0.636) | (3.651) | (2.838) |
| 여타 재원 O | **1.299*** | 0.640 | 1.093 | 0.301 |
| | **(0.692)** | (0.429) | (1.754) | (1.685) |
| 연계사업 O | -0.554 | -0.479 | **-6.797**** | -3.090 |
| | (0.799) | (0.425) | **(3.116)** | (2.409) |
| 추진체계 O | 0.172 | 0.416 | **9.070**** | **5.003**** |
| | (0.849) | (0.453) | **(3.684)** | **(2.439)** |

〈표 V-82〉의 계속

| 종속변수 | (1) | (2) | (3) | (4) |
|---|---|---|---|---|
| | 누적집행금액(억원) | 누적실집행금액(억원) | 누적집행률(%) | 누적실집행률(%) |
| 사전절차완료 O | **2.043**** | **1.236***** | **12.35***** | **7.688***** |
| | **(0.836)** | **(0.421)** | **(3.157)** | **(2.170)** |
| 추진실적완료단계 O | **1.126*** | **0.878**** | **24.44***** | **21.06***** |
| | **(0.632)** | **(0.389)** | **(3.132)** | **(2.979)** |
| 우선순위 | -0.00398 | **0.0941**** | **0.674*** | **0.856***** |
| | (0.106) | **(0.0463)** | **(0.366)** | **(0.196)** |
| 차별화 O | 0.368 | 0.268 | -1.187 | 0.883 |
| | (1.126) | (0.536) | (2.862) | (2.490) |
| 수혜대상 연령 O | 0.322 | -0.232 | **3.346*** | 2.635 |
| | (0.519) | (0.333) | **(1.810)** | (1.868) |
| 수혜대상 등록 O | -0.320 | -0.181 | -3.497 | -2.290 |
| | (0.722) | (0.339) | (2.685) | (1.958) |
| 누적배분금액(억원) | **0.242***** | **0.110***** | -0.105 | **-0.0717*** |
| | **(0.0541)** | **(0.0222)** | (0.0682) | **(0.0408)** |
| 시간고정효과 | O | O | O | O |
| 기초지자체고정효과 | O | O | O | O |
| Observations | 2,910 | 2,910 | 2,910 | 2,910 |
| Adjusted R-squared | 0.334 | 0.241 | 0.416 | 0.338 |

주: 1.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사업의 특성들이 예산집행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V-82〉와 같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에서 예산 배분금액이 동일할 때, 집행금액 및 집행률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업의 특성은 사업별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경우, 사업별 추진실적이 완료 단계인 경우로 나타났다. 사업별 추진체계는 개별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나 내·외부 참여기관 등 참여 주체를 명시하고 주체별 역할 분담 및 담당 업무와 회의 등 운영 현황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 사업 추진체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업별 사전절차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의견수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 절차가 모두 추진 완료된 경우에 이행이 완료된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준공,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사후평가,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컨설팅, 자문, 수료, 운영 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진행한 경우 완료단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가 사업의 실제 진행수준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분야가 산업일자리, 교통, 주거, 노인의료, 문화관광, 보육, 교육, 복합인 경우, 사업분야가 기타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집행금액 또는 집행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금 사업이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공사 기간을 반영할 때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는 기금 사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늦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선순위의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사업의 집행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다. 계획평가

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사업설계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상대적 개발지수를 높이는 데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표 V-83〉에서 볼 수 있는데, $Matching$의 값이 (+)이면서 클수록 기금의 8개 지출분야(산업일자리, 교통, 주거, 노인의료, 문화관광, 보육, 교육, 복합) 중 해당 지자체의 취약분야에 맞는 기금사업이 계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지자체 취약 분야와 기금사업 분야의 정합성이 높을수록 Maching의 값은 (+)이면서 크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 $Matching$의 값이 (-)이면서 클수록 기금의 8개 지출 분야(산업일자리, 교통, 주거, 노인의료, 문화관광, 보육, 교육, 복합) 중 해당 지자체의 강점 분야에 부합하는 기금 사업이 계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지자체 강점 분야와 기금사업 분야의 정합성이 높을수록 $Matching$의 값은 (-)이면서 크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취약 분야 또는 강점 분야에 맞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때, 평가과정에서 기금이 더 배분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1)열과 (3)열의 모형은 기금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각 기금연도 내에서 $Matching$과 배분금액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게 되고, (2)열과 (4)열의 모형은 기금연도 고정효과에 관심/감소지역 고정효과를 추가하여 관심지역 또는 감소지역 각각의 그룹 내에서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자체의 취약 분야와 기금사업 분야의 정합성은 예산 배분, 또는 평가등급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열에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관심/감소지역 고정효과를 추가한 (4)열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진다. 이는 관심지역과 감소지역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예산 배분금액이 높은 감소지역 지자체가 관심지역 지자체에 비해서 해당 지자체의 취약 분야에 더 부합하게 기금 사업을 계획했음을 의미하지만, 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에서의 평가과정에서는 그러한 취약 분야-사업 분야의 정합성이 등급 결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복합분야 사업을 포함할 경우 (3)열이 보여주는 결과는 유의한 (+)로서 지자체가 취약분야를 보완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V-84〉와 같이 복합분야 사업을 삭제할 경우 유의성이 사라진다. 이는 복합분야 통계를 삭제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취약 분야를 보완하거나 강점 분야를 강화하는 데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표 V-83〉 계획평가: 지자체 취약분야와 기금사업 분야의 정합성에 따른 예산 배분(복합분야 포함 시)

| 종속변수 | (1) | (2) | (3) | (4) |
|---|---|---|---|---|
| | 배분금액(억원) | | ln(배분금액) | |
| Matching | 1.891<br>(1.119)<br>(0.0541) | -1.408<br>(0.644)<br>(0.0222) | **0.0618***<br>**(0.0173)**<br>**(0.0682)** | -0.0201<br>(0.00923)<br>(0.0408) |
| 기금연도 고정효과 | O | O | O | O |
| 관심/감소지역 고정효과 | | O | | O |
| Observations | 296 | 296 | 296 | 296 |
| Adjusted R-squared | 0.092 | 0.681 | 0.050 | 0.882 |

주: 1. ( ) 안의 값은 기금연도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V-84〉 계획평가: 지자체 취약분야와 기금사업 분야의 정합성에 따른 예산 배분(복합분야 제외 시)

| 종속변수 | (1) | (2) | (3) | (4) |
|---|---|---|---|---|
| | 배분금액(억원) | | ln(배분금액) | |
| Matching | 1.669<br>(1.692) | -0.222<br>(1.216) | 0.0408<br>(0.0242) | -0.00596<br>(0.0142) |
| 기금연도 고정효과 | O | O | O | O |
| 관심/감소지역 고정효과 | | O | | O |
| Observations | 283 | 283 | 283 | 283 |
| Adjusted R-squared | 0.092 | 0.663 | 0.049 | 0.872 |

주: 1. ( ) 안의 값은 기금연도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라. 실증분석 결과 요약

### 1) 결과평가 및 순영향평가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사업은 현재까지 인구, 고용 등 지방소멸 문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부사업단위의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결과평가에서 예산의 배분 또는 집행은 인구, 고용 등의 성과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사업의 주요 특성에 따른 사업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사업 특성은 사업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교육사업, 보육사업, 그리고 인프라조성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사업단위에서는 순효과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과 함의 도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표 V-85〉 참조). 기초지자체단위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을 때는 대부분의 계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다. 즉 기금이 인구, 고용 등의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인데, 이는 인구 또는 고용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일수록 기금 배정 확률이 더 높아지는 역인과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금이 총전출자 수의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비수혜지역 간의 차이,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내 등급 간 배분금액의 차이에 따른 성과 차이를 활용한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동적이중차분법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결과는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이질적인 추세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구감소지역과 비수혜지역은 사업 시행 전 이미 두 그룹의 추세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그 추세가 사업시행 후에도 지속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인과효과는 식별할 수 없었다.

다만 결과평가 및 순영향평가에서 유의하거나 주무기관이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이유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이 짧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즉 향후 추가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 재평가를 시행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결과평가 및 순영향평가 등에서 유의하거나 의도한 결과가 발견될 수도 있다.

〈표 Ⅴ-85〉 세부사업단위 사업효과의 이질성분석 주요 결과 요약

| 종속변수 | (1) | (2) | (3) | (4) | (5) | (6) |
|---|---|---|---|---|---|---|
| | ln(주민등록인구수) | | ln(총전입자수) | | ln(취업자수) | |
| 누적집행금액×산업일자리 | **0.000109*** | | 0.000595 | | 0.000140 | |
| | **(6.39e-05)** | | (0.000678) | | (0.000131) | |
| 누적집행금액×교통 | 0.000279 | | 0.00339 | | -0.000236 | |
| | (0.000214) | | (0.00223) | | (0.000568) | |
| 누적집행금액×주거 | 3.00e-05 | | -0.000481 | | -4.11e-06 | |
| | (5.47e-05) | | (0.000643) | | (0.000123) | |
| 누적집행금액×노인의료 | -0.000128 | | 0.000468 | | **-0.000578**** | |
| | (0.000117) | | (0.000709) | | **(0.000280)** | |
| 누적집행금액×문화관광 | 1.64e-05 | | -0.000498 | | -0.000148 | |
| | (4.95e-05) | | (0.000577) | | (0.000143) | |
| 누적집행금액×보육 | **0.000471**** | | -0.00122 | | 8.81e-05 | |
| | **(0.000191)** | | (0.00183) | | (0.000339) | |
| 누적집행금액×교육 | 0.000196 | | 0.000971 | | -5.68e-05 | |
| | (0.000130) | | (0.00137) | | (0.000253) | |
| 누적집행금액×복합 | -1.84e-06 | | -0.000469 | | -0.000120 | |
| | (3.13e-05) | | (0.000477) | | (9.66e-05) | |
| 누적집행금액×기타 | -8.84e-05 | | 0.000901 | | -6.94e-05 | |
| | (9.50e-05) | | (0.00139) | | (0.000291) | |
| 누적실집행금액×산업일자리 | | **0.000153**** | | 0.000864 | | 0.000203 |
| | | **(6.92e-05)** | | (0.00117) | | (0.000183) |
| 누적실집행금액×교통 | | 4.03e-05 | | **0.00608*** | | -0.000246 |
| | | (0.000170) | | **(0.00307)** | | (0.000835) |
| 누적실집행금액×주거 | | -3.32e-05 | | -0.000603 | | 0.000371 |
| | | (8.95e-05) | | (0.00123) | | (0.000333) |
| 누적실집행금액×노인의료 | | -0.000118 | | 0.000140 | | **-0.000633**** |
| | | (0.000116) | | (0.000612) | | **(0.000291)** |
| 누적실집행금액×문화관광 | | -8.77e-07 | | -0.000896 | | -0.000145 |
| | | (5.06e-05) | | (0.000816) | | (0.000226) |
| 누적실집행금액×보육 | | **0.000639***** | | -0.00162 | | 0.000433 |
| | | **(0.000218)** | | (0.00213) | | (0.000462) |
| 누적실집행금액×교육 | | **0.000302*** | | **0.00261**** | | 0.000105 |
| | | **(0.000174)** | | **(0.00129)** | | (0.000315) |
| 누적실집행금액×복합 | | 9.96e-05 | | 0.00112 | | 2.55e-05 |
| | | (0.000168) | | (0.00188) | | (0.000486) |
| 누적실집행금액×기타 | | -0.000111 | | 0.00180 | | 7.33e-06 |
| | | (0.000119) | | (0.00172) | | (0.000431) |
| Observations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2,498 |
| Adjusted R-squared | 1.000 | 1.000 | 0.981 | 0.981 | 0.999 | 0.999 |

주: 1. 세부사업과 반기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로 (  ) 안의 값은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2) 과정평가 및 계획평가 결과

먼저 사업의 특성이 사업의 집행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과정평가에서는 사업의 유형 또는 수혜대상의 특성보다는 사업의 준비 정도가 사업의 집행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 추진을 완료한 경우에 예산의 집행 수준 또는 집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 분야, 사업의 차별성, 수혜대상 등에 따른 사업진행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증적 계획평가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취약 분야에 맞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도 평가과정에서 더 높은 등급, 즉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으로 예산 배분금액이 더 높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관심지역 지자체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취약 분야에 더 부합하게 기금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취약 분야-사업 분야의 정합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에서의 등급 결정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Ⅵ. 정책제언

## 1.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제언

첫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정교화하여 각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신규성·우선순위·여타 재원 의존 여부 등의 요소를 평가체계에 포함함으로써 단순 정액 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설문, FGI, 실증).[46] 기존에 지적된 '등급별 동일 금액 배분'으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가 최소 등급 확보에 안주하거나, 우수한 자치단체임에도 정해진 등급 수 제한으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등급에서 다수 등급(예: 3등급) 체계로 배분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47] 이때 다수 등급(예: 3등급 체계: 우수-양호-미흡)으로 개편하되, 우수 등급의 비중을 확대(예: 10 → 15%로)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호 등급만 받아도 최소 72억원의 예산이 배분되어 사업 기획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비율 이상(예: 20%)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의 적극성과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유인 체계를 제공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등급 간 배분액의 편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호 등급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액을 72억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우수 등급과 미흡 등급의 편차가 확대되도록 미흡 등급의 배분액이 우수 등급의 배분액의 50%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등급별 배분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배분 방식인 '등급별 동일 금액 배분'으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가 최소 등급 확보에 안주하거나, 우수한 자치단체임에도 정해진 등급 수 제한으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다(FGI, 실증).

4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금관리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임을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병행하여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관련 근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기금의 최종 책임자만을 기재하였다.

47)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자체가 최소 등급 확보에 안주하거나, 우수한 자치단체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6년 기금 투자계획 평가부터 우수 후보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기준 미달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반영하여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표 Ⅵ-1〉 2등급 체계에서 3등급 체계로의 개편(안) 예시

〈 개편 전 〉

| 등급 | 지역 수 | 배분액 (인구감소 지역) |
|---|---|---|
| **우수** | 8 (10%) | **160억원** |
| **양호** | 81 (90%) | **72억원** |

〈 개편 후(안) 〉

| 등급 | 지역 수 | 배분액 (인구감소 지역) |
|---|---|---|
| **우수** | 13 (15%) | **160억원** |
| **양호** | 58 (65%) | **72억원 (우수 등급 배분액의 45% 수준)** |
| **미흡** | 18 (20%) | **48억원 (우수 등급 배분액의 30% 수준)** |

또한 기금사업 투자계획 평가 시 기금으로만 추진되는 신규 사업, 주민참여체계가 구축된 사업,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사업 등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체계가 구축된 사업,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사업 등에 대한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사업 준비 정도'와 '취약분야 적합성'이 실제 예산 배분 결과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설문, 실증). 등급 및 배분액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현재는 개별 지자체의 특성과 사전 준비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자체의 취약 분야에 맞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도 평가과정에서 더 높은 등급, 즉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분적 효율성이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 각 지자체 정주여건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 등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기금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 투자계획 평가 시 유리하도록 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이 더 높은 사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미미한[48]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49] 또한 기금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예산집행 수준이 현재 기금의 인과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주요 원

48) 이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사항이다. 만약 향후 집행 기간이 길어지고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실증분석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가 현재 실증분석 결과보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49) 관련하여 본 보고서 p. 34의 식 (7)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재원배분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참여 주체와 주체별 역할분담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전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써 계획수립의 형식적 충실성이 아니라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제기한 사업 발굴의 어려움 문제 역시 외부 전문가 자문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설문, FGI). 추가적으로 자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정성적 배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섬 지역의 특성[50]이나 현안을 고려하던가, 인구증가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인구와 지역사회 여건이 가장 악화되는 곳에 대한 성과 측정과 지원방식의 차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평가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입 등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환류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설문, FGI, 실증). 기금 도입 시 다수 자치단체가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신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 또는 조건 미성숙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문제를 인식하면서, 최근 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필요한 주요 사항(예: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서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기금의 전략적 재원배분 기준 및 연계 기준)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기금의 근본 취지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며 기금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계획평가 중심이 불가피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프라 중심의 단기적 사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정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FGI), 실제로 성과가 검증된 사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실증). 기금투자계획 평가가 계획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 추진의 타당성 항목의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추진 실적의 배점은 상향 조정하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 섬 지역과 육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은 최근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남회 외, 2022; 유승원 외, 2023a, 2023b; 육수현 외, 2022).

2025년 평가에서 중점사업 평가가 추가돼 중점사업 추진 가능성이 가점 항목으로 신설되었으나, 중점사업 평가가 이미 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달성 성과의 우수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령 생활인구 유입, 인구유출 감소, 지역 성장 및 활성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달성 성과의 우수성을 지방자치단체가 기술하고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 달성 성과의 우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입증 가능한 통계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점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연계재원 활용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여, 기금사업이 타 국고보조사업의 부수적인 재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설문, FGI, 실증).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투자계획 평가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계획 평가 항목 중 타 사업·정책과의 연계성은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극대화 방안, 타 지역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타 사업·정책에 단순 매칭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 여부를 점검해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세부 내용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51]

51)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칭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전문가 FGI 결과 실제 기금투자계획 평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 세부 내용에 추가하여 평가위원들이 면밀히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Ⅵ-2〉 평가항목 개편(안) 예시

| 평가항목 개편(안) | | | | 비고 |
|---|---|---|---|---|
| 평가항목 | | 세부 항목 | 배점 | |
| | | | 100 | |
| 투자계획 (70%) | 계획 수립 적절성 (10%) | 여건 분석 적절성 | 5 | |
| | | 비전·전략 수립의 적절성 | 5 | **하향 10→5점** |
| | 사 업 추 진 타당성 (30%) | 입지 적정성 | 5 | |
| | | 사업 적합성 | 10 | **하향 15→10점** |
| | | 사업 효과성 | 10 | |
| | | 사전행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5 | |
| | 계획의 연계성 (20%) | 기금사업 간 연계성 | 5 | |
| | | 지역 간 연계·협력성 | 5 | |
| | | 타 사업·정책과 연계성<br>-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극대화 방안<br>-타 지역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br>-(추가) 타 사업·정책에 단순 매칭 재원으로 활용 여부 | 10 | |
| | 운영 관리 지속성 (10%) | 운영·관리 추진체계의 적절성 | 10 | |
| 추진실적 (20%) | 성과 분석 결과 | 2023년 성과분석 결과(5등급) | 15 | **상향 5→15점** |
| | 집행 | 2022~2023년 배분 기금 집행실적 | 5 | |
| 정책연계 (3%) |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 3 | |
| 정량지표 (7%) | 인구감소지수 | | 3 | |
| | 투자협약 실적 | | 4 | |
| 가점 (10) | 중점사업 추진 가능성 | | 5 | **하향 10→5점** |
| | (신설) 생활인구 유입, 인구유출 감소, 지역 성장 및 활성화 등 달성 성과의 우수성(통계지표로 입증이 가능해야 함) | | 5 | **신설** |
| 감점 (-4) | 기금 목적 외 사용 | | -3 | |
| | 사업 변경 | | -1 | |

셋째,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분하거나 기초계정에 매칭하는 수준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설문, FGI).[52] 이를 통해 지역 간 시너지 창출을 촉진하고, 실증분석에서 제기된 예산 배분금액과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 부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실증). 특히 인구감소지역 인근의 비인구감소지역과 연계한 공동사업, 시·군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이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FGI).

넷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인프라의 조성 실적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조성된 시설과 인프라가 다양하게 지방소멸대응에 연계 및 활용되도록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의 유사중복성 문제를 인식하고, 각 기금과 회계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분권주의적 접근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 여건과 요구에 맞는 사업을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생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 주는 시작 재원, 즉 마중물 재원이므로 한시적 운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목적한 바대로 2031년 종료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인프라의 조성실적과 운영 현황 정보제공은 지역주민뿐아니라 인구소멸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과 중장년에게 이주와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고, 지역 간 기금의 투자효과 및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대응기금의 성과와 정책을 확산·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므로, 향후 기금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가능한 지방소멸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금을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

52) 이에 대한 긍정적 사례 및 반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사례: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 남부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 ICT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사업(단일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효과성을 미치는 광역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
- 반대의 사례: ○○도 농어촌 ○○○ 확대사업 - 지방소멸대응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고 기존에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사례(출처: 인근 지역언론)

는 구조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종료 이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제반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 수집,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차후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금이 지역현장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적정한 시설 투자에 사용되도록 하고 준공 이후 해당 시설의 지속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즉 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설 운영비를 조달 가능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설 인프라 투자 당시 수요가 과대 예측되거나 편익이 과대 계상될 경우 건립 이후 시설 인프라 운영의 지속성과 기금의 성과는 담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 저조가 예상되거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당초 시설 건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심층평가를 통해서는 지역 현장이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에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금이 시행된 지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기금의 목적 및 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 관련 대내외 환경이 미처 성숙되지 못하였거나, 심층평가를 통해 효과성·효율성 여부 및 그 정도를 엄밀히 판단하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운영 데이터와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기금의 운용 현황과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재평가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심층평가를 통해서는 지역 현장이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에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금이 시행된지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기금의 목적 및 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 관련 대내외 환경이 미처 성숙되지 못하였거나, 심층평가를 통해 효과성·효율성 여부 및 그 정도를 엄밀히 판단하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운영 데이터와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기금의 운용 현황과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재평가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재평가가 실시될 경우, 기금이 당초 취지대로 지역 현장이 주도하여 기금을 기존 재원 및 여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운용하며 지역의 인구증가 및 경제사회 발전 등의 마중물 역할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금의 순영향

평가, 결과평가, 과정평가 및 계획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3]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기금 관련 지역별, 지역 내 개별 사업별 제반 데이터 (통상적인 기금운용 관련 제반 데이터, 투자계획 평가 시 최저 단위별 평가 결과 데이터-평가위원의 개인정보는 제외, 투자계획 평가 전과 후의 기금 사업별 배분·집행·연계 및 성과목표·지표의 변화 관리 데이터, 집행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및 환류 데이터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층평가 수행 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54] 특히 재평가를 시행할 경우 소멸대응기금의 한시성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적극적 확대 재정조정을 일으키는 제도인데,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 확충 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 간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정합성을 개선시키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세는 그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구조와 기능을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수요에 맞게 명료한 체계에 기반하는 일관성 있는 재정조정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수요(인구감소지수), 생활인구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재정조정 기능과 함께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기초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의 대부분은 '인구수'이며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기초수요액이 산정되는 구조이다. 지난 15년간(2008~2022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비교한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5] 보통교부세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적극적으

---

53) (본 보고서가 심층평가 이후의 사항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경우 본 각주를 유지함) 일부 FGI 대상자 및 평가위원은 본 심층평가 대상연도 이후에 수행된 행정안전부의 기금 개선 노력이 심층평가 대상연도의 그것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평가 대상연도 이후에 수행된 행정안전부의 개선 노력에 따른 성과 여부 및 정도는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54)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 공개에 대해 명확성, 공정성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데이터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예: 투자계획 평가 시 최저 단위별 평가 결과, 개인정보 제외, 투자계획 평가 전과 후의 구체적인 항목).

55) 이현정(2024: 65)의 연구에서 지난 15년간(2008~2022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인구감소지역은 118.5% 증가한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50.6%, 특히 수도권 지역은 1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통교부세 배분액에서 인구감소지역 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3%p 감소한 한편, 비인구감소지역은 3.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 지원하고,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수요의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안,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투입된 재정수요를 보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 중 일정 재원을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재원으로 배분하거나,[56] 부동산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수 등 지방소멸대응 수요를 고려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2. 광역자치단체 관련 정책제언

첫째,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지원계정 운영 시 단순한 균등 분배 대신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 간 상생사업을 기획·지원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설문, FGI, 실증). 이는 단독 자치단체 단위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예산투입 대비 성과지표 개선의 미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다(실증).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전문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연구원, 거점 대학 등 외부 전문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FGI). 이러한 지원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지자체장의 주관성에 기초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이전에 계속되던 관행적인 사업과 안정적 재원배분 선호 경향, 기초자치단체 내부 사업발굴 역량 부족 등 문제를 완화하고, 실증분석에서 강조된 사업 추진체계와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설문, 실증).

셋째,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설문, 실증). 이는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질적 성과가 입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단순 재원 배분을 지양하고, 차년도 예산 할당 시 성과를 반영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들이 단기적 목표나 최소 등급 확보에만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FGI).

---

56) 일본은 '특별교부세에 관한 자치 성령'에 40년간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 등 「과소법」에서 규정하는 과소지역 등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원구·이주현, 2023; 이현정, 2024).

## 3. 기초자치단체 관련 정책제언

첫째,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 노력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내부 전문성 강화와 외부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설문, FGI, 실증). 이는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사업 발굴 역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사업 준비도와 추진체계 확립이 집행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설문, 실증). 다만 이때 외부 컨설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 재원으로 설정한 뒤, 타 국고보조사업 및 민간 재원을 보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재원 결합을 통해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유입,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장기적 성과창출에 집중해야 한다(FGI, 실증). 이는 FGI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 전략을 구현하며,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기금의 정책목표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설문, FGI).[57]

셋째,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히 사업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사전절차 완비, 추진조직 구성, 주민참여체계 구축 등 실증분석에서 성과 제고 요인으로 지적된 준비요소를 철저히 이행하여 집행률과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설문, 실증).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단기적 목표 달성에 안주하는 대신, 성과평가 중심의 새로운 기금 운영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FGI).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조성된 필수시설(예: 의료)의 경우, 단기적으로 해당 시설로부터의 효과성이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 지역에서는 시설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의 공적 책임성과 해당 시설 자체가 아닌 시설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역주민이 바라는 큰 기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효과성이 조속히 시현 및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사업을 단기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마련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57) 현재 행정안전부는 기금 평가 시 중점사업, 타 사업·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주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금이 여타 재원과의 단순 연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기금이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상태에서 중심 재원으로서 여타 사업·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차별성이 부족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경제·산업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관광 중심의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집중된 현 운영 방식은 체류 인구증가와 같은 일시적 효과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58] 장기적으로 지역 내 거주 안정성과 인구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59] 특히 교통 인프라 개선, 주거 환경 조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장기적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적 체류 인구 증가가 아닌, 실질적인 정주인구 유입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 본 평가는 기존 여타 평가와 달리, 자치단체별 각 사업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점,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제도의 시행주체가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제언은 본 보고서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표 Ⅵ-3〉과 같이 제시함

---

5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정 용어인 '생활인구' 개념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사업명에서 밝힌 '체류인구'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활인구 개념에 체류인구 개념이 포함되지만 생활인구와 체류인구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거주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9)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문화·관광 중심의 단기적 정책 추진 시 지역 내 성과는 일시적이며 인구유입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Cyprus)의 농촌 지역이 농어업 쇠퇴에 대응하고자 '관광 다각화(tourism diversification)'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을 사례로 분석한 Sharpley(2002)의 경우, 문화·전통을 내세운 관광상품이 농촌 지역에 단기적인 경제효과와 관광객 증가를 가져오긴 했으나, 인프라와 생활 여건(교육·보건·교통)이 열악한 곳은 실제 장기 거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보고한다. 또한 문화관광 수익 자체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잠시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된 현상을 보고한다. 농촌관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Lane & Kastenholz(2015)의 경우, 관광 중심의 단기 정책이 농촌 지역의 인구유지 및 지역 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화·관광을 통한 상대적으로 가시적이며 빠른 성과 창출에 치중하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상시적 인구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문화·관광 기반의 단기적 접근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지방소멸 혹은 인구감소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Ⅵ-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군의 평가 내용 및 정책제언

| 구분 | | 평가 내용 | 정책제언 |
|---|---|---|---|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군 | 순영향평가 | (기금의 성과 달성 여부)<br>•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및 고용 등 핵심 성과지표에 미치는 인과효과는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음(기금효과는 없음)<br>• 다만 예산 편성 후 경과 기간이 짧고, 현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행정안전부)<br>•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정교화하여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신규성·우선순위·여타 재원 의존 여부 등을 평가체계에 포함함으로써 단순 정액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br>•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유인 체계를 제공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등급 간 배분액의 편차를 확대<br>• 사업 준비 정도와 취약 분야 적합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강화<br>• 기금사업 평가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입 등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환류하는 구조를 구축<br>• 광역지원계정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유도<br>•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인프라의 조성 실적과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br>• 기금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지역별·사업별 데이터(평가 결과, 재정관리 변화, 모니터링 데이터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심층평가 기관과 공유<br><br>(광역자치단체)<br>• 광역지원계정 운영 시 단순한 균등 분배 대신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상생사업을 기획·지원하여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br>• 사업 발굴을 위해 시·도 연구원, 거점 대학 등 외부 전문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체계를 구축<br>•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br><br>(기초자치단체)<br>•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 |
| | 결과평가 | (기금 사업의 정책효과, 비의도 효과 등)<br>• 중앙정부의 성과 관리 및 통제가 다소 미흡하며, 단기적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의 가시적 성과는 뚜렷하지 않음(기금효과는 없음)<br>• 지역현장과 외부기관 및 실증분석 결과와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함 | |
| | 과정평가 | (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적절성)<br>• 사업의 집행 수준은 사업 유형이나 수혜대상의 특성보다 사업의 준비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br>(집행 수준, 운용자원, 환류의 적절성)<br>• 저조한 사업 집행률을 고려할 때, 지역 현장에서 집행 수준과 과정상의 이슈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br>• 인구감소지역과 집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관심지역이나 집행률이 높은 지역보다 기금 사업 집행을 위한 인력, 예산, 장비 등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br>(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의 효과성)<br>• 인구감소지역과 저집행률 지역에서는 경로분석에 대한 관심과 참여 강도가 낮음<br>•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시 이슈 분석의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 |
| | 계획평가 | (주무기관의 기금투자계획 평가의 적절성)<br>•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의 경과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 평가 항목의 적절성은 낮음<br>• 기금 투자계획의 평가 투입 요소와 평가 이후 절차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br>• 투자계획 평가체계 운영 측면에서 투자계획 평가단과 평가 대상 자치단체 간 보다 객관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함<br>(기금 계정의 배분 방식의 적절성)<br>• 광역계정은 광역 내 인구감소 지역 비율에 따라 광역별로 정액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

〈표 Ⅵ-3〉의 계속

| 구분 | | 평가 내용 | 정책제언 |
|---|---|---|---|
| | | • 등급별로 동일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예산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br>(기금투자계획상 추진 방식과 수혜대상의 적절성)<br>• 기금의 목적, 지원 기간, 타 재원과의 연계 방식, 관리 방식 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br>• 기금 사업의 투자수요 예측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 • 타 국고보조사업 및 민간 재원을 보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재원 결합을 통해 장기적 성과 창출에 집중<br>• 단순한 사업 계획 수립을 넘어 사전 절차 완비, 추진 조직 구성, 주민 참여 체계 구축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준비 요소를 이행<br>• 단기적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 마련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 |

# 별첨

**[별표 1] 설문조사 설문지**

##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층평가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지방소멸대응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생님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완결하신 분은 추첨을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상품권(5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익명 처리되며, 의문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락처 swonyu@naver.com (연구책임자 경찰대 행정학과 유승원 교수)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 관련

1-1. (적절성평가: 성과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준비가 미흡한 자치단체로 평가받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① 투자계획 준비가 미흡한 자치단체는 기금 배분에서 배제하고, 투자계획 준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투자계획 준비가 미흡한 자치단체에게 기금을 배분하되 그 규모는 지금보다 최소화하고, 투자계획 준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현재처럼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자금을 배분받는 것이 바람직함

1-2. (적절성평가: 성과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게 평가받은 자치단체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① 투자계획의 우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적절함

② 투자계획의 우수 여부에 따라 자치단체 간 배분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배분액 격차는 지금보다 커져야 함)

1-3. (적절성평가: 성과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결과, 등급(S/A/B/C 또는 우수/양호)이 동일하면 자치단체의 인구, 산업, 지리적 특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① 자치단체의 제반 특징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적절함

② 자치단체의 제반 특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하여 적절하지 않음 (자치단체의 제반 특징의 차이를 고려하여 배분해야 함)

1-4. (적절성평가: 주무기관 운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음)의 투자계획평가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행했나요?

① 매우 전문적/공정하였음

② 대체로 전문적/공정하였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

⑤ 매우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

1-4-1. 위에서 ④ 대체로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 또는 ⑤ 매우 전문적/공정하지 않았음을 선택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투자계획평가단의 전문성 또는 공정성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기재)

1-5. (적절성평가: 주무기관 운영) 선생님 또는 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음)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서 평가 및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자치단체에게 유용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았나요?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1-5-1. 위에서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대체로 미흡) 또는 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미흡)을 선택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서비스 중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기재)

1-6. (적절성평가: 계획의 충실성) 자치단체가 준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의 내용(효과성, 중장기계획, 사업관리 등을 말하며, 투자계획서의 가독성 또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요?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1-6-1. (적절성평가: 계획의 충실성) 위에서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대체로 미흡) 또는 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미흡)를 선택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자치단체가 준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내용(효과성, 중장기계획, 사업관리 등을 말하며, 투자계획서의 가독성 또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적절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부처·주무기관이 제시한 관련 지침의 부실
②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의 어려움
③ 자치단체장의 이해 부족
④ 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또는 전문성 부족
⑤ 기타 (직접 기재)

1-7. (적절성평가: 수요 예측) 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수혜대상, 사업규모, 지원조건 등의 관련사항을 설계할 때 수혜대상의 범위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지요? 실시했다면 누가 어느정도로 실시했는지요?

① 실시하지 않음
② 실시함 & 담당자가 간편 예측함
③ 실시함 & 담당자가 엄정히 예측함
④ 실시함 & 외부전문가가 간편 예측함
⑤ 실시함 & 외부전문가가 엄정히 예측함

1-8. (적절성평가: 우선순위) 자치단체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각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래 중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요?

① 자치단체장의 주관적인 관심도
② 자치단체의 객관적인 지방소멸대응 관점

1-9. (효율성평가: 유사중복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사업목표 또는 사업대상 또는 정책수단 측면에서 유사한 여타 사업이 선생님 소속 자치단체 내 존재하는지요?

① 존재함
② 존재하지 않음

##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과정(집행) 관련

2-1. (적절성평가: 집행자원의 충분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해 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은 충분히 집행되었는지요?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2-1-1. (적절성평가: 집행자원의 충분성, 이유) 위에서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대체로 미흡) 또는 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미흡)를 선택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계획된 활동을 위한 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치단체가 마련한 투자 계획 이행절차 지연
② 자치단체장의 이행 의지 부족
③ 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또는 전문성 부족
④ 중앙부처·주무기관의 지원 지연
⑤ 기타 (직접 기재)

2-2. (적절성평가: 전달체계 환류) 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전달경로에 있는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반 의견(만족도 측정 포함)을 수집하는지요? 수집한다면 해당 사항을 사업관리에 얼마나 환류하여 반영하고 있는지요?

① 수집하지 않음
② 수집함 & 사업관리에 대체로 환류하지 않음
③ 수집함 & 사업관리에 대체로 환류함
④ 수집함 &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환류함

2-3. (효과성평가: 효과 경로) 선생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담당자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당초 계획한 정책목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로, 방식 및 조건 등을 어느정도 검토(분석)하였는지요?

① 검토하지 않음
② 자체 학습 등의 방법으로 대체로 검토함
③ 대외적으로 발표·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토함

2-4. (효과성평가: 문제점) 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또는 이슈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파악하고 있다면 해당 문제점 또는 이슈가 발생하는 원천은 대체로 선생님이 소속한 자치단체, 소속 자치단체 주민, 여타 기관(중앙정부 등) 중 어디인지요?

① 파악하지 않음
② 파악함 & 소속 자치단체
③ 파악함 & 소속 자치단체의 주민
④ 파악함 & 여타 기관(중앙정부 등)

##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결과 관련

3-1. (효과성평가: 지방소멸대응 효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표(예: ○○시설 건립)을 달성하였나요? 그렇다면 해당 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표를 넘어 지방소멸대응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사업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②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의 기여 여부를 알수 없음
③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하지 않음
④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대체로 기여함
⑤ 목표를 달성함 & 지방소멸대응에 매우 기여함

3-2. (효과성평가: 비의도효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의도하지 않은 (좋은/나쁜) 효과를 발생한 적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해당 비의도 효과가 무엇인지 예시를 괄호 안에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비의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② 좋은 비의도 효과가 발생한 적이 있음 (예시를 간략히 기재_____)
③ 나쁜 비의도 효과가 발생한 적이 있음 (예시를 간략히 기재_____)

3-3. (효율성평가: 배분적 효율성)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간 기금 배분(포트폴리오)은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지방소멸대응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기금 사업에 많은 자금이 배분되고 지방소멸대응에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기금 사업에 적은 자금이 배분되었는지요?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3-4. (효율성평가: 기술적 효율성)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의 여타 사업에 비해 지방소멸대응 측면에서 얼마나 양호/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① 매우 양호함
② 대체로 양호함
③ 차이가 거의 없음
④ 대체로 미흡함
⑤ 매우 미흡함

**4. 마지막으로 통계처리 등을 위해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 선생님께서 예산/기금/재정관리 분야에 근무한 총 재직 년 수는 얼마입니까?

① 재직한 적 없음 ② 3년 이하 ③ 4-9년 ④ 10-19년 ⑤ 20년 이상

4-2. 선생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서 또는 인구소멸대응 부서에 근무한 총 재직 년 수는 얼마입니까?

① 재직한 적 없음 ② 1년 미만 ③ 1-2년 ④ 3-4년 ⑤ 5년 이상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완결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상품권(5만원 상당)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이 숫자만 기재)

핸드폰 번호 (  )

상품권 제공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경우 상품권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 (  ) 부동의 (  )

**소중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별표 2]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층평가를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사전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 추진 방식, 수혜 대상의 선정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서 평가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사전 질문지를 보내드리오니 답변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 유승원(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wonyu@naver.com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리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논리모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모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변 기입란〉

〈표〉 지방소멸대응기금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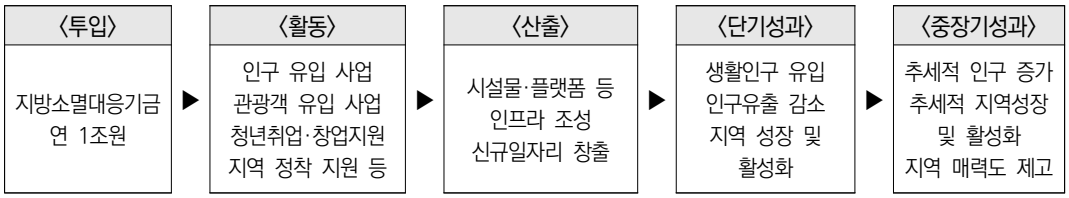

## 2. 제도 설계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적절성

2-1.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광역계정은 1)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 관할 인구감소지역의 비율에 따라 정액 배분되며, 2) 그 외 시·도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만든 배분계수를 적용한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됩니다. **광역계정의 배분 방식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추세적 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입란〉

2-2.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초계정은 시·군·구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정액의 예산을 배분합니다.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계정의 배분 방식이란, 아래 두 가지의 방식 각각을 의미합니다.**

①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② 등급별로 정액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답변 기입란〉

2-3. 2024년 기금 투자계획 평가까지는 사업 내용(타당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이었던 반면, **2025년 평가부터는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의 방향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입란〉

2-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편 방향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4등급 배분체계를 2등급 배분체계로 구분하고 최고 등급의 배분금액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 평가 최소배분액 상향(64→72억원) 및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160억원)**

〈 '24년 기준 〉

| 등급 | 지역 수 | 배분액(관심) |
|---|---|---|
| S | 4 | 144억(36억) |
| A | 14 | 112억(28억) |
| B | 26 | 80억(20억) |
| C | 45 | 64억(16억) |

〈 '25년 기준 〉

| 등급 | 지역 수 | 배분액(관심) |
|---|---|---|
| 우수 | 8 | 160억(40억) |
| 양호 | 81 | 72억(18억) |

※ 관심지역(18개)도 감소지역과 유사한 비율로 우수 2개 40억, 양호 16개 18억 지원

**정부의 개편 방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분 방식의 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변 기입란〉

2-5.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세적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분 방식을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입란〉

### 3. 제도 설계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방식의 적절성

3-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입란〉

3-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2022년~2031년) 지원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규모와 기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지원 규모와 기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입란〉

3-3.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간 재원 투자 등 다양한 재원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과 타 재원의 연계 방식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입란〉

3-4.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사업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관리 방식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입란〉

### 4. 수혜 대상의 적절성: 수혜 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성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은 시·군·구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예산을 배분합니다. 수혜 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와 평가 결과 환류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이 필요한 시·군·구에 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 항목이 적절하게 설계되었습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입란〉

**[2025년 기금 투자계획 평가 세부 항목]**

1) 계획 수립의 적절성(15%): 여건 분석 적절성, 비전·전략 수립의 적절성
2) 사업 추진 타당성(35%): 입지 적정성, 사업 적합성, 사업 효과성, 사전행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3) 계획의 연계성(20%): 기금사업 간 연계성, 지역 간 연계·협력성, 타 사업·정책과 연계성
4) 운영관리 지속성(10%): 운영·관리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추진 실적(10%): 전전년도 성과분석 결과, 전전전년도~전전년도 배분 기금 집행실적
6) 정책 연계(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7) 정량 지표(7%): 인구감소 지수, 투자협약 실적
8) 가점(10점): 중점 사업 추진 가능성
9) 감점: 기금 목적 외 사용(-3점), 사업 변경(-1점)

4-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투입 요소가 적절하게 제공되었습니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요소는 무엇입니까?**

평가의 투입 요소란 평가 기간, 평가 인력 규모, 평가 인력의 전문성, 평가 자료·데이터, 평가 조직의 공정성(중립성)을 의미함

〈답변 기입란〉

4-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금액은 평가단에서 투자계획(안)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정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평가단의 투자계획(안) 평가 결과 제출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가 지방소멸대응이 필요한 시·군·구에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입란〉

4-4.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평가 단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의 환류 단계에서 수혜 대상의 선정 방식을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입란〉

4-5.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중심으로 산정된 지수에 의해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구 외에 어떤 지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입란〉

# 참고문헌


**[보고서 및 논문]**

국회예산정책처,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 경제 주요 이슈」, 2023.

_____,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결산분석시리즈Ⅲ, 2024.

김남회·최광웅·서우석, 김화영, 『여객선 공영제 등 섬 교통 체계 혁신 방안 연구』, 한국섬진흥원, 2022.

김태완·전혜란·김성운·고진수,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한국섬진흥원, 2022.

나라살림연구소,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 내역 및 자치단체별 투자계획 평가등급 현황)」, 『나라살림이슈』, 2023. 9. 13. ※ 국회의원 제공 자료를 가공함

_____,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 『나라살림 브리핑』 제386호, 2024. 4. 24. ※ 국회의원 제공 자료를 가공함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한국지방세학회』, 9(2), 2022.

마상열, 「경남의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경남발전』, 160, 2022, pp. 60~67.

박관규·주윤창,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생가능한 문제와 해결방안」, 『월간지방시대』, 91, 2022.

박상수·이재원·오병기·이현정,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재설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오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과 개선 방향」, 『공공정책』, 202, 2022, pp. 28~30.

유승원·심연우·김수희, 「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섬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3), 2023a, pp. 159~184.

유승원·심연우·이남국,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7(3), 2023b, pp. 176~202.

육수현·이태겸·박성호·우현민·최경·장승권·신우진, 『섬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섬진흥원, 2022.

이재호,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과 발전방안」, 『공공정책』, 218, 2023, pp. 52~54.

이현정,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편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9(1), 2024, pp. 35~6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세부계획』, 지방재정공제회, 2024.

최원구·이주현,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강화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OT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2024.

한재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황과 개편 방향」, 『예산춘추』, 72, 2023, pp. 98~103.

Argent, N., Tonts, M., Jones, R., and Holmes, J., "A creativity-led rural renaissance? Amenity-led migration, the creative turn and the uneven development of rural Australia," *Applied Geography*, 44, 2013, pp. 88~98.

Bijker, R. A., Haartsen, T., and Strijker, D., "Different areas, different people? Migration to popular and less-popular rural areas in the Netherland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5), 2013, pp 580~593.

Bloom, N., Bond, S., and Van Reenen, J., "Uncertainty and investment dynamic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4(2), 2007, pp. 391~415.

Clark, W. A., Huang, Y., and Withers, S., "Does commuting distance matter?: Commuting tolerance and residential chang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3(2), 2003, pp. 199~221.

DeFond, M. L., and Park, C. W., "Smoothing income in anticipation of future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3(2), 1997, pp. 115~139.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2002.

Gugerty, Mary Kay., "Theory of Change and Logic Models: Foundation for the Evaluation of Social Programs," In *The Oxford Handbook of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edited by Anu Rangarajan, 2023, pp. 109~133.

Hou, Y., "Budgeting for fiscal stability over the business cycle: A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and the multiyear perspective on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5), 2006, pp. 730~741.

Jordan, Gretchen B., "A theory-based logic model for innovation policy and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19)4, 2010, pp. 263~273.

Lane, B., and Kastenholz, E., "Rural tourism: the evolution of practice and research approaches–towards a new generation concep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3(8-9), 2015, pp. 1133~1156.

Olejniczak, K., Borkowska-Waszak, S., Domaradzka-Widła, A., and Park, Y., "Policy labs: the next frontier of policy design and evaluation?," *Policy & Politics*, 48(1), 2020, pp. 89~110.

Sharpley, R., "Rural tourism and the challenge of tourism diversification: the case of

Cyprus," *Tourism management*, 23(3), 2002, pp. 233~24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 결정 예정)」, 보도자료, 2022a. 7. 7.

_____,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보도자료, 2022b. 8. 16.

_____,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 보도자료, 2024a, 4. 29.

**[웹사이트]**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홈페이지 업무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6/localextinctionFund/screen.do, 검색일자: 2024b. 8.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